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박사학위논문

예술노동시장에서의 겸업 행태에 관한 연구

-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 슬 기

예술노동시장에서의 겸업 행태에 관한 연구

-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금 현 섭

이 논문을 정책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이 슬 기

이슬기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권 일 웅 (인)

부위원장 김 병 조 (인)

위 원 임 학 순 (인)

위 원 양 혜 원 (인)

위 원 금 현 섭 (인)

초 록

‘예술인은 왜 겸업을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새로운 관점에서 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관한 기존 논의는 겸업의 원인으로 시장적 위험에 주목하거나 예술인 개인의 소득 수준에만 한정해 구조적 요인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인 개인 수준의 논의를 넘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예술 생산체계에 관한 논의에서 예술단체는 예술인과 함께 창작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예술인 또는 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을 ‘선별’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여기서 선별은 결국 예술인의 고용 그리고 소득과 관련이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단체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선별’, 즉 고용·임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예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술단체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예술 생산체계에 제도적 자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주요 행위자인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어떤 행태 변화를 보일 것인가에 주목해, 겸업 행태에 미치는 요인을 크게 예술인 개인적 요인과 예술단체의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예술인 개인 수준, 예술단체 조직 수준, 개인과 조직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으로 구분해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각각의 연구목적과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는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에 관한 기존 논의를 불안정 노동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예술노동시장 안에서 예술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겸업 여부와 겸업 유형으로 구체화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예술인실태조사」를 분석 자

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정 노동이 겸업 여부와 그 유형에 미치는 구체적 방식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들을 예술계 밖에서 일자리를 찾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기타 지위 예술인들이 전업보다 겸업을, 겸업 중에서도 이종 겸업을 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 계약 특성을 계약 건수, 기간, 금액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예술계 내부에서의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겸업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특히나 동종 겸업할 가능성을 커졌다. 한편, 계약금이 클수록 겸업의 가능성은 감소하였고, 겸업 예술인 중 예술계 내에서 맺어진 계약 기간이 긴 예술인일수록 동종 겸업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소득 역시 예술인을 예술계 밖으로 밀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소득이 낮은 경우 겸업의 가능성과 이종 겸업의 가능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은 예술단체의 행태 자체를 구체화하고자 재정압박 상황에서 예술단체가 보일 수 있는 조정행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고용과 임금 조정으로 구분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압박 중에서도 내부 운영으로 인한 수입, 지출의 압박보다 정부 정책이 지출압박으로 작용해 예술단체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인의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도출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의 원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이 있을 때, 예술단체가 양적 측면에서 고용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의 수준이 커질수록 고용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이 비정규직 규모 조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방식에 따라 그 추정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달라졌다.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 가능성 유무에 따른 비정

규직 규모 조정은 고정효과 추정 모형에서만 유지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예상 지출압박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예술단체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추정 모형에서 모두 커졌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이 예술단체의 임금 조정행태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확률효과 모형에서만 임금 인상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수입 구조하에서 기존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축소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을 축소한 결과, 소수의 정규직 인력만이 남게 되고 이로써 평균 임금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는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행태가 예술인 개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예술단체와 예술인 특성이 함께 수집된 실제 자료의 부재(不在)로 본 연구는 「예술인실태조사」와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의 원자료를 결합하여 재현자료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한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행태, 구체적으로는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이 클수록 예술인 겸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예술인이 처한 개별적 불안정 노동 상태와 인적 자본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그 영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재정압박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조정행태가 예술인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결국 예술단체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술인에게도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가능성 역시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추정하는 단계에서 고정효과를 가정해 추정한 고용 감축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이론적, 방법론적 차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겸업 행태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겸업에 관한 기존 논의가 ‘어떤 사람이 겸업하는가?’

또는 ‘왜 겸업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머무르지만, 본 연구를 통해 ‘어떤 사람이 왜 동종업계보다 이종업계에서 겸업할 가능성이 큰가?’와 같은 질문으로 확장하고 겸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둘째, 예술단체의 예산제약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재정압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수입압박과 지출압박으로 구분해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술단체의 재정과 관련해서 기존 논의는 수입 측면의 재정압박에 주로 관심을 두고, 이를 심화하는 요인을 탐색하거나 또는 완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재정압박은 수입 측면 이외에도 지출 측면의 재정압박이 존재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정 자원을 분배하는지에 따라 예술단체가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 또는 반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연구는 그동안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에 관해 빈번하게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직업적 특성으로만 이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술노동시장에서 예술인이 보이는 겸업 행태가 직업적 또는 시장적 특수성에 의한 개인 행태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에 기반한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다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우선, 앞서도 언급했듯이 예술인 겸업 행태에 대해 시장적 특수성 또는 개인의 위험관리 방식 중 하나로 이해하려는데 그친 기존 논의를 예술노동시장의 행위자 행태 차원에서 중범위 논의로 재구조화하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사회학에서 논의된 예술 생산체계 관점을 이론적 분석틀로 차용해 예술단체-예술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모형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고용을 이해하는 기존 방식이 비정규직을 넘어 비정형 고용 형태가 만연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준

다. 이러한 한계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기존 논의의 범위 확장 또는 관점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제기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단일 계약의 영속성보다는 다중 계약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비정형 노동 특성이 만연한 예술노동시장에 주목하여 계약 특성과 경력단절 요인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함으로써 관련 논의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분석 단위(예술단체와 예술인)의 개별적 자료를 통합해 새로운 재현자료(synthetic data)를 구축하고, 자료의 위계적 특성을 고려해 다층분석을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재현자료 구축 차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정확매칭(exact matching) 또는 확률매칭(statistical matching)이 주로 공통변수를 기준으로 동일 분석 수준의 동일 개체 또는 유사 개체를 결합하는데 적용되었다면, 본 연구는 분석 단위가 다른 개인과 단체를 결합해 위계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층화임의할당방식을 매칭과정에서 차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재현자료 구축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의 범위와 이론적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위계적 자료를 활용해 다수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가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예술지원정책 차원과 노동정책 차원으로 구분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예술지원정책 차원에서는 정책 대상을 예술인, 예술단체로 구분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술 생산체계(또는 예술 생태계) 차원에 대한 포괄적·연계적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 차원에서 예술노동시장의 개별 행위자가 아닌 예술 생태계 관점에서 행위자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고 할 때, 예술노동시장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예술단체의 행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장하자면 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예술단체의 의미와 역할을 정책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최근 예술지원정책은 단순히 예술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로서의 지위 인정 및 예술인 삶의 질 향상 등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도 날실과 씨실처럼 겹쳐져 정책의 복잡성이 가중된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정책간의 정합성 또는 상보적 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차별적 효과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역시 두 개의 집단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예술인의 잦은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역할을 하더라도 예술단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세거나 예술계에서 이미 평판과 경력이 구축된 숙련 예술인을 위주로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예술단체가 고용을 축소하는 대상이 미숙련 예술인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크고, 결국 예술노동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정책 비용의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고용보험제도와 달리 현행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서는 빠져있는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신진 예술인이 실업 기간에도 발생하는 교육 또는 생활비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확률이 높은 이종 겸업으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경력 단절 등과 같은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예술노동과 예술인의 겸업 행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예술노동시장의 메커니즘에 주목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예술지원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술노동의 특성은 노동시장의 노동 형태 스펙트럼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고숙련(high-end) 노동자의 경우 노동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wage) 중심의 정규직 고용 형태를 띠지만, 저숙련(middle, low-end) 노동자는 주어지는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piece-rate)으로 구분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공식이 더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는데, 최근 숙련도와 관계없이 비정규직·비정형 고용과

일감(task)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애초에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노동 특성을 보인 예술노동시장의 메커니즘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 행위자인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행태는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신흥 노동 형태의 등장과 함께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을 설계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연구 각각이 갖는 한계와 이를 통해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4장에서 수행한 연구 1의 한계로 첫째, 횡단면 자료 활용으로 인과적 추론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내생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이는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구 조사 자료로 「예술인실태조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 적절한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데 선택지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예술인의 노동환경과 경력 형성 과정에 대한 종단 또는 패널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겸업 속성을 예술시장과 비예술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으로 구분할 뿐, 부업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히나 장르별로 예술직업의 근로 시간대와 근로시간 양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또 예술직업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부업의 노동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겸업 유형을 넘어 부업에서의 노동 형태 및 직업적 특성이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부업이 불안정 노동속성을 유지한다면, 이것이 주업인 예술노동의 지속성과 역량계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 수행한 연구 2의 한계로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의 측정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예술인고용보험료 부담 가능성과 수준은 관찰값이 아닌 가설적 상황을 가정한 값이다. 따라서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술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미시 자료 구축을 통해 본 연구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 수행한 연구 3의 한계로 예술단체-예술인의 다수준 자료가 실제

수집 자료가 아닌 재현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예술인고용보험제도로 인한 예술단체의 행태, 그리고 고용 또는 도급계약에 기반한 예술단체-예술인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석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실제 관측값이 아닌 추정값으로 측정했다는 점 역시 해석의 범위를 제약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향후 예술단체와 예술인 관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자료 구축과 축적으로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겸업, 예술노동시장, 예술단체, 예술인, 불안정 노동, 다층분석
학 번 : 2016-30677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목적 ····· 4

제 3 절 연구대상과 구성 ····· 6

제 2 장 이론적 논의 ····· 7

제 1 절 불안정 노동에 관한 논의 ····· 7

1. 불안정 노동의 정의 및 논의의 중요성 ····· 7

2. 불안정 노동 확산의 원인 ····· 13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 17

제 2 절 예술노동시장의 특성과 불안정 노동 ····· 18

1. 예술노동시장의 특성 ····· 18

2. 예술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 ····· 25

제 3 절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접근 ····· 29

1. 불안정 노동과 제도적 접근 ····· 29

2.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제도적 접근 ····· 33

제 3 장 선행연구 비판적 검토와 연구 분석틀 ····· 39

제 1 절 선행연구 비판적 검토 ····· 39

제 2 절 연구 분석틀 ····· 41

1. 이론적 자원 : 예술 생산체계 ····· 41

2. 연구 분석틀 ····· 46

제 4 장 [연구 1] 불안정 노동과 예술인의 대응 행태 ····· 49

제 1 절 연구목적 ····· 49

제 2 절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 50

1. 겸업에 관한 논의 ····· 50

2.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에 관한 논의들 ····· 56

3. 불안정 노동과 겸업의 유형 ····· 61

제 3 절 연구설계 ····· 66

1.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 66

2. 분석대상 및 분석 자료 ····· 67

3. 변수 측정 ····· 69

제 4 절 분석결과 ····· 75

1. 예술인의 겸업 행태 ····· 75

2.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 양태 ····· 77

3.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 행태 ····· 80

제 5 절 소결 ····· 97

제 5 장 [연구 2]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조정행태 ····· 100

제 1 절 연구목적 ····· 100

제 2 절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 102

1. 재정압박에 관한 논의 ····· 102

2. 예술 분야의 재정압박과 예술조직의 대응 행태에 관한 논의 ····· 104

3. 사용주의 인건비 절감과 조정행태 ····· 106

4. 가설 도출 ····· 109

제 3 절 연구설계 ····· 113

1.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 113

2. 분석대상 및 분석 자료 ····· 115

3. 변수 측정 ····· 118

제 4 절 분석 결과 ····· 122

1. 예술단체의 재정압박 ····· 122

2. 예술단체의 조정 양태 ····· 131

3.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조정행태 ····· 134

제 5 절 소결 ····· 143

제 6 장 [연구 3]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와 예술인의 겸업 행태 ····· 144

제 1 절 연구목적 ····· 144

제 2 절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 146

1. 예술노동시장에서의 사용주와 예술인의 관계 ····· 146

2.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와 예술인의 겸업 ····· 149

3. 가설 도출 ····· 150
제 3 절 연구설계 ····· 152
1. 분석모형 및 분석 방법 ····· 152
2. 분석대상 및 분석 자료 ····· 155
3. 변수 측정 ····· 158
제 4 절 분석결과 ····· 159
1.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겸업 여부 ····· 159
2.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겸업 유형 ····· 163
제 5 절 소결 ····· 167

제 7 장 결론 ····· 169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169
제 2 절 연구의 의의 ····· 172
1. 이론적·방법론적 의의 ····· 172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 175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179

참고문헌 ····· 183

부록 ····· 207

〈표 차례〉

[표 1] 노동비용 절감 경로별 불안정 노동 ····· 12
[표 2] 노동시장 유연성 종류 ····· 22
[표 3]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중(단위: %) ····· 28
[표 4] 예술인에 대한 옹호 전략 네 가지 ····· 34
[표 5] 종사상 지위 측정방식 ····· 70
[표 6] 변수의 측정 ····· 74
[표 7] 겸업 비중(단위: %) ····· 75
[표 8] 겸업 예술인의 소득원천 유형(단위: %) ····· 76
[표 9] 예술인의 종사상 지위(예술직업) ····· 77
[표 10] 종사상 지위별 상대적 빈곤율(예술소득 기준) ····· 79
[표 11] 불안정 노동이 겸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 86
[표 12] 예술 분야별 불안정 노동이 겸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 88
[표 13] 불안정 노동이 겸업 유형에 미치는 영향 ····· 93
[표 14] 예술 분야별 불안정 노동이 겸업 유형에 미치는 영향 ····· 96
[표 15]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 115
[표 16] 변수의 측정 ····· 121
[표 17] 예술단체의 예산제약과 고용 조정행태(인력 규모) ····· 136
[표 18] 예술단체의 예산제약과 고용 조정행태(비정규직 비중) ····· 139
[표 19] 예술단체의 예산제약과 임금 조정행태 ····· 142
[표 20] 모형별 모수 추정치의 종류 ····· 153

[표 21]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 변수 추정방식 ····· 158
[표 22] 가설 1 의 기초모형 분석 결과 ····· 159
[표 23]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 ····· 162
[표 24] 가설 2 의 기초모형 분석 결과 ····· 163
[표 25]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 ····· 166

[부록 표 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연구 1) ····· 207
[부록 표 2] 연령대별 예술직업의 종사상 지위 분포(단위: %) ····· 209
[부록 표 3] 입문연도별 예술직업의 종사상 지위 분포(단위: %) ····· 209
[부록 표 4]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연구 2) ····· 210
[부록 표 5]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고용 조정행태(인력 규모) ····· 211
[부록 표 6]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고용 조정행태(비정규직 비중) ····· 212
[부록 표 7]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임금 조정행태 ····· 212
[부록 표 8] 층(strata)별 예술인과 예술단체 할당 ····· 217
[부록 표 9]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연구 3) ····· 217
[부록 표 10]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 ····· 220
[부록 표 11]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 ····· 223
[부록 표 12]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 진단 ····· 226
[부록 표 13] 측정방식 조정 후 : 지출압박과 인력규모 조정행태 ····· 227
[부록 표 14] 측정방식 조정 후 : 지출압박과 비정규직 비중 조정행태 ··· 227
[부록 표 15] 측정방식 조정 후 : 지출압박과 임금 조정행태 ····· 228

〈그림 차례〉

[그림 1] 재충전권 사례 예시 ····· 32
[그림 2] 문화의 다이아몬드(Griswold, 1994) ····· 42
[그림 3] 수정된 문화의 다이아몬드(Alexander, 2003) ····· 42
[그림 4] 연구 분석틀 ····· 47
[그림 5] 수입 규모별 수입액과 재원별 비중 ····· 122
[그림 6] 전년도 순수익 구간별 경곗값(단위: 천원) ····· 123
[그림 7] 연도별 수입의 기존 지출 수요 미충족 단체 비중(단위: %) ····· 124
[그림 8] 수입액 구간별 지출 수요 미충족 단체 비중(단위: %) ····· 125
[그림 9] 지출 규모별 지출액과 항목별 비중 ····· 126
[그림 10] 연도별 정책으로 인한 지출 부담 예상 대상단체 비중(단위: %) ···· 128
[그림 11] 정책으로 인한 지출 예상 부담액 구간별 경곗값(단위: 천원) ·· 129
[그림 12] 순수익 구간별 평균 순수익과 평균 지출 부담액(단위: 천원) ·· 130
[그림 13] 연도별 인력 규모 조정(단위: %) ····· 131
[그림 14] 연도별 비정규직 비중 조정(단위: %) ····· 132
[그림 15] 연도별 임금 조정(단위: %) ····· 133
[그림 16] 임금 조정 수준별 전체 조정 인원과 비정규직 조정 인원 ····· 141
[그림 17] 예술단체-예술인 자료 구조 예시 ····· 15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문화예술이 창출해 내는 사회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창작의 주체인 많은 예술인이 여전히 낮은 소득과 잦은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경제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술인이 경제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은 소득원천을 다양화하는 형태를 띠는데, 크게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과 개인적 차원에서 겸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최근 예술인의 경제적 위험을 완화할 취지로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위험을 정부와 사용주, 피용인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예술인의 기존 위험관리 방식과는 구분된다. 정책의 대상이 예술인 개인이지만 이들에게 정책 수혜가 가기 위해서는 예술노동시장 행위자들의 정책 순응이 필수적이다. 즉 예술노동시장의 기존 메커니즘(mechanism)에도 정책이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구체적 내용, 예를 들어 보험료 납부 방식과 급여체계에서는 예술노동시장의 수익 또는 소득의 변동성 즉, 완전 실업이 아닌 부분 실업 상태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작업 방식의 정규성이 강한 전일제 상용직의 업무 특성을 토대로 설계된 기존 고용보험제도가 비정형 근로 형태와 정합성이 떨어져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예술인고용보험이 예술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는 고용보험제도가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전제들이 기존 예술 생산체계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충족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진입장벽 또는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 혹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하는 적응행태를 유발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제도 도입으로 기존 예술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한 문제이다.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전에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은 개인화된 위험이었다. 특히,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는 그러할 개연성이 더욱 컸다. 반면, 제도 도입 이후 실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은 사용주, 예술인 자신, 그리고 정부가 분담하게 되는 것인데, 과연 추가로 위험 분담의 부담을 지게 된 사용주가 그대로 순응할 것인가? 사실 보험료 분담에 대한 순응 자체보다는 이에 대해 '사용주는 어떤 전략적 행태를 보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나 사용주 대부분이 영세하고,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상황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 가중은 사용주에게 채용과 임금 수준 조정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고용보험도입으로 유발되는 인건비 증가 또는 인건비의 고정 비용화로 인해 채용과 임금 수준 조정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조정은 사용주와 계약을 맺는 개별 예술인의 일할 기회와 소득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로 인한 예술인의 일할 기회와 소득 수준의 변화는 피보험자격 득실요건 및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예술계에서 예술인의 일할 기회가 축소된다는 말은 예술소득이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술인이 처할 경제적 위험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단순히 고용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보험자격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 등과 같은 지표만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은 모두 기존 예술노동시장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제도 설계 단계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행위자들의 행태 변화를 가리킨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이 진공상태가 아닌 예술노동시장의 특성과 구조적 요인이라는 복잡한 맥락 속에서 집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인고용보험에 관한 기존 논의는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예술노동 형태를 부각해 기술하는 데 그치거나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시론적 논의에 치우쳐 있다. 예술노동이 불안정하다는 특성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하지만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예술 생산체계 내에서, 특히 예술노동 관점에서 어떤 예술인의 예술적 역량을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예술조직(단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제도가 기존의 예술 생산체계(특히 불안정 노동을 확산하고 이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행태)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의도치 않게 초래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기존 논의의 또 다른 한계로 제도가 사용주(예술단체)와 예술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채,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개별 행위자가 놓인 시장 특성 또는 그 속에서의 행태에 집중하거나, 두 행위자의 관계 주목하더라도 추측에 기대서 설명하는 경향이 높다(Menger, 2017). 그 결과 고용과 임금 결정에 있어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사용주의 제도에 대한 반응이 예술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용주(예술단체)와 노동자(예술인)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또는 분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도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자들의 행태 수준에서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대응을 관찰하고자 한다. 특히 사용주(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할 때 정책으로 인한 사용주의 비용 부담은 예술인의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예술인의 개인적 위험을 심화할 도화선(trigger)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려는 것은 아니며, 외생적 충격에 따른 예술인의 겸업 행태와 관련된 예술노동시장의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예술노동시장의 기존 메커니즘 상황에서 예술인고용보험제도와 같이 사용주에게 정책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가해질 경우, 이에 대한 사용주의 조정행태가 최종적으로는 예술인 개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목적

‘예술인은 왜 겸업을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새로운 관점에서 답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관한 기존 논의는 예술인 겸업의 원인으로 시장적 위험에 주목하거나, 예술인 개인의 소득 수준에만 한정함으로써 예술인을 둘러싼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 경향이 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인 개인 수준의 논의를 넘어 예술인을 둘러싼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 생산체계에 제도적 자극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주요 행위자인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어떤 행태 변화를 보일 것인가에 주목해, 겸업 행태에 미치는 요인을 크게 예술인 개인적 요인과 예술단체의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하위 연구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는 예술인 개인적 요인 차원에서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에 관한 기존 논의를 불안정 노동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예술노동시장 안에서 예술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겸업 여부와 겸업 유형으로 구체화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은 예술노동시장의 또 다른 참여자인 예술단체의 행태에 대한 것으로 재정압박 상황에서 예술단체가 보일 수 있는 조정행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고용과 임금 조정으로 구분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예술 생산체계에서 예술단체는 예술인과 함께 창작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예술인 또는 예술인이 창작한 작품을 ‘선별’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여기서 선별은 결국 예술인의 고용 그리고 소득과 관련이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단체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선별’,

즉 고용·임금에 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예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술단체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재정압박 중에서도 내부 운영으로 인한 수입, 지출의 압박보다 외부적 요인의 하나인 정부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으로 인해 예술단체의 조정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토함으로써, 예술인의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연구의 목적은 겸업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예술인 개인 수준의 요인과 예술단체 수준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이해관계자별로 따로 나눠 분석한 모형을 토대로 마지막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실증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 개인의 불안정 예술노동 특성과 함께 재정압박으로 인해 예술단체가 보일 조정행태의 특성이 겸업 행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대상과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3절 연구대상과 구성

본 연구는 불안정한 예술노동과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관한 세 가지 하위 연구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2장**에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불안정 노동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예술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노동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고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예술 생산체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뒤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로 불안정 예술노동과 예술인 겸업 행태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개인 수준의 자료인 「예술인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불안정 예술노동을 고용과 소득 차원으로 구분해 측정하였다. 또,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겸업 여부와 겸업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로 재정압박과 예술단체의 고용·임금 조정행태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예술단체 수준의 자료인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재정압박은 수입과 지출 측면으로 구분해 측정하였다. 특히, 지출 측면의 압박 지표 중 하나로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출압박을 고려하고, 이것이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제6장에서는 제4장과 제5장의 연구를 토대로 예술인 겸업 행태에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과 예술단체 수준의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예술인 개인 자료와 예술단체 조직 자료를 결합하여 새로운 다층 자료를 구축하였고, 이를 토대로 예술인-예술단체의 위계적 구조를 전제한 다층모형을 추정하였다.

제7장에서는 앞의 하위 세 가지 연구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연구의 함의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한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불안정 노동에 관한 논의

1. 불안정 노동의 정의 및 논의의 중요성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이라는 개념이 부상한 것은 2011년 Standing이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를 발표한 이후부터다(Munck, 2013: 748; 김수영 외, 2020). '불안정 노동자(precariat)'는 불안정을 뜻하는 형용사 'precarious'와 노동계급을 뜻하는 명사 'proletariat'가 조합된 합성어로, 주로 고용과 관련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력(insecure workforce), 임시직 노동(contingent work), 시간제 노동, 프리랜서, 독립노동과 같은 비정형 노동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Heery & Salmon, 2002; Kroon & Paauwe, 2014; 백승호, 2014; 이승윤 외, 2016; 2017; 김수영 외, 2020).

불안정 노동 개념에 관한 논의는 고용 형태 및 종사상 지위라는 고용계약 형태에 주목해 사회경제적 집단으로서 불안정 노동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단일 차원적 접근과 불안정 노동속성에 주목해 불안정 노동 그 자체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다차원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승윤 외, 2017: 62).

단일 차원적 접근방식은 비정규직을 불안정 노동자로 규정하는 고용 중심적 접근과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을 불안정 노동자로 규정하려는 접근, 그리고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청년·여성·노인에 주목하는 생애 주기적 접근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이승윤 외, 2017; 62). 이러한 접근방식들은 불안정성을 명료하고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비정규직을 불안정 노동자로 간주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안정적 내부자와 불안정한 외

부자로 집단을 분명하게 드러내 이들의 규모, 특성 등을 파악하기 쉽게 만든다. 따라서 집단을 정책 대상화하기 쉽고, 이들에 특성에 맞는 정책 수단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차원적 접근방식은 불안정한 노동 상태가 정치경제적·사회적 맥락과 국가의 노동시장 전략에 따라 다양한 고용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을 간과한다. 일례로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소득이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 국가별로 법적 및 사회적 보호 제도가 달라 국가별 차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은 빈번히 관찰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준의 논의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들 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비정규직을 불안정 노동자로 규정하는 순간 비정규직을 벗어나면 불안정성이 소멸된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노동 불안정성이 일상화되어 있는 서비스 경제 사회에서 비정규직 말고도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즉, 현대 사회의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이승윤 외, 2017; 69).

반면, 불안정성 속성 자체에 주목해 불안정 노동을 정의하려는 접근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일의 안정성(labour security)이 결핍된 상태로 정의한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단일 차원적 접근방식이 불안정 노동을 불안정 고용으로 등치해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불안정성' 속성에 천착해 불안정 노동을 정의하려는 접근은 불안정 고용에 대한 논의를 넘어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이다. 예를 들어, 불안정성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한 초기 연구는 Rodgers & Rodgers(1989)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불안정 고용을 단기간 고용계약 기간, 일·임금·노동과정에 대한 통제의 부재, 사회보장·법적 고용 보호의 부재, 저소득의 차원으로 측정했다. Laparra와 그의 동료들(2004; 14-15)의 경우에는 불안정 고용을 시간적 차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노동조건 차원으로 구분해 측정하였다. Standing(1999)은 노동 안정성의 다양한 형태를 고용 안정, 직무 안정, 일 보장, 숙련 재생산 보장, 소득 보장, 권한 보장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기도 했다. Vosko(2006)는 Rodgers &

Rodgers(1989) 연구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을 반영해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불안정성은 확실성의 정도, 법적 보호,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소득의 적절성으로 측정하고 있다. 불안정 노동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도 다차원적 접근방식을 취한 예들이 있는데, 주로 고용계약 형태, 소득, 사회적 보호 세 차원을 다루고 있다(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이승윤 외, 2017). 다만, 이들 대부분이 세 차원을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데 반해, 이승윤 외(2017: 81-83)는 세 가지 차원의 조합을 통해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이는 불안정성이 복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정의는 고용 불안정, 소득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으로 구분 할 수 있다(백승호, 2014: 61; 서정희, 2015). 불안정 노동의 하위 개념으로 (1) 고용 불안정은 고용 형태, 근로 제공방식, 근로시간 등 고용조건과 관련된 불안정성을 의미하고, (2) 소득 불안정은 저임금이나 임금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3) 사회보장 불안정은 사회보험, 퇴직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백승호, 2014: 58, 61~64; 서정희, 2015). 각각의 차원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용 불안정(precarious employment)

고용 불안정은 고용 형태, 근로 제공방식, 근로시간 등 고용조건과 관련된 불안정성을 의미한다(김유선, 2015; 이승윤 외, 2017). 정규 고용 지위를 제외하고 비정규 고용 지위에 해당하는 각 고용 형태는 고용 불안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1990년대부터 불안정 노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해왔다. ILO는 불안정 노동의 개념 정의를 고용계약과 근로조건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고용계약 차원에서 ILO는 계약 기간의 제한과 특수한 고용 관계 속성이 고용의 불안정

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약 기간의 제한을 전제로 한 고용행태로 기간제(fixed-term), 단기 계약(short-term), 파견직(temporary), 계절근로(seasonal), 일일 근로(day-labour), 임시직(casual labour)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특수한 고용 관계 속성으로 곧 삼각 근로관계, 위장된 고용 관계, 위장된 자영업, 도급계약, 파견계약을 제시하고 있다. ILO는 특수고용 관계가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존재하지만, 일종의 자영업자로 취급받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위험을 전적으로 본인이 떠안게 되므로 불안정한 고용계약에 속한다고 본다(ILO, 2003). 또, 이러한 고용계약의 특징들은 낮은 임금과 해고 또는 계약 종료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일제 표준고용 관계에서 보장되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며, 직장에서 피고용인 권리행사의 창구가 보장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공통적으로 포함한다(ILO, 2011; 7).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초기 논의는 표준화된 고용 관계와 달리 새롭게 등장한 고용 관계에 대한 불안정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표준화된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다양한 지위로 파편화되면서 고용 불안정성의 정도가 반드시 고용 지위로 구분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Frade et al, 2004; Stuth & Jahn, 2020; 박나리 & 김교성, 2021). 예를 들어, 표준고용 관계라 하더라도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라면 불안정 노동에 처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논의를 고용 차원에만 국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2) 소득 불안정성(precarious income)

소득 불안정은 고용 불안정과 서비스 경제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백승호, 2014). 요식업 등 전통적 서비스업은 영세한 업체 규모, 낮은 생산성이 일반화된 산업이고,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보다는 저숙련 단순노무직이 주로 고용됨에 따라 종사자 전반이 저임금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지식정보를 토대로 한 전문 서비스 산업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고소득 임금근로자로의 성장이 기대되지만, 같은 산업 내에서도 저숙련 또는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경우 저임금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소득 불안정성 측정의 경우, 이승윤 외(2017)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구분해서 측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저임금 기준인 '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3분의 2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을 경우' 소득이 불안정하다고 보고 임금근로자의 소득 불안정성을 측정하고, 비임금노동자의 경우는 소득을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해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 불안정성을 측정하였다.

3) 사회보장 불안정(precarious social security)

불안정 노동이 낮은 일자리 질을 의미한다면,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비임금 급여(non-wage benefit)라고 불리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서정희, 2015). 구체적으로 연금·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 퇴직금, 유급 휴가 등이 사회적 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불안정 노동과 관련한 논의에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불안정도 빠지지 않는 속성으로 언급된다(Rodgers & Rodgers, 1989; 이승윤 외, 2017; Stuth & Jahn, 2020; 박나리 & 김교성, 2021). 특히 사회보장의 불안정성은 고용 불안정과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데,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상 고용 지위에 따른 사회보험 설계가 차별화되어 있어 제도적 이중구조화 경향을 보인다(박나리•김교성, 2021).

관련된 기존 논의에 따르면, 사회적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보장 불안정은 서비스 경제에서 정규 고용 관계가 흔들리면서 가속화되었다. 서비스 경제 이전에는 정규 고용 관계 하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임금 대체 제도로 기능해온 것이다(Hinrichs, 2010: 47). 그러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더이상 정규 고용 관계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정

규 고용 관계가 흔들리면서 사회보장 제도 중 특히 사회보험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정규 고용 관계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복지가 작동해 온 유럽 대륙 국가들은 사회보장 불안정을 겪게 되었다[1].

한편, 사용자가 비정규 고용 형태 중 어떤 유형의 비정규 고용을 활용할 것인가는 퇴직금과 같은 해고 비용이나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임금 급여를 낮추는 방안이 존재하는지에 달려 있다(Benassi & Kornelakis, 2020). Eichhorst & Mark(2012: 78)는 정규 고용 관계의 요소들에서 벗어나게 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노동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고용 형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고용 형태별로 노출되는 불안정 노동 영역을 구체화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노동비용 절감 경로별 불안정 노동

노동비용 절감 경로	절감할 수 있는 노동비용 유형	고용 형태	불안정 노동 영역
전일제에서 벗어날 경우	비임금 급여	시간제(특히, 초단기 시간제)	사회보장 불안정
무기계약에서 벗어날 경우	해고비용	기간제, 파견근로	고용 불안정
종속 고용에서 벗어날 경우	임금비용, 비임금 급여, 해고비용	1인 자영업 (특수고용 포함)	고용 불안정, 사회보장 불안정

자료 : Eichhorst & Mark(2012: 78), 서정희(2015: 재인용)

물론 해당 국가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 선택의 폭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이 사회보장법에 포함된 국가에서 사용자는 '가짜 자영업(bogus self-employment)' 형태의 특수고용을 선택할 이유가 없게 된다(Eichhorst & Marx, 2012 : 77).

1) 우리나라 역시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이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정희, 2015).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안정 노동이 개념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지만, 실제 세 차원이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 연동된 것이 일반적이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Kalleberg et al., 2018),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결혼, 출산, 자녀 수와 같은 장기적 인생 계획 수립과 경력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ontz, 2006). 예를 들어, 근로계약의 불확실성과 저임금으로 인해 결혼 계획, 출산 계획, 주택 매매 계획 등의 '일관성 있는 인생 계획'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ILO, 2012).

다른 하나는 불안정 노동이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경제적 불평등 심화(Hacker, 2006; Pugh, 2015; Lim, 2018), 정치적 차원에서 관용 하락 및 신뢰 하락, 사회 결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Putnam, 2000). 즉, 단순히 직업과 소득 활동에서의 불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인생 전반에 심리적 불안정으로까지 퍼지고, 이는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논의가 학계 차원이나 정책 차원에서나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불안정 노동 확산의 원인

그렇다면, 불안정 노동 확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거시적 수준의 경제 변화와 이에 대한 기업의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거시적 수준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면, 첫째, 불안정 노동 확산의 요인으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꼽는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경제적 통합과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켰고,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더 많은 노동력을 외주화(outsourcing)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Kalleberg, 200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근로자들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근로자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했고, 제조업 부문의 자본 이동을 가속화 하였다(Bronfenbrenner & Luce, 2004; Collins, 2003).

둘째, 주주(Shareholder)의 등장과 영향력 증대 역시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관련이 깊다(Fligstein & Shin, 2007; Ho, 2009a; 2009b; Tomaskovic-Devey & Lin, 2011). 월가(Wall street)와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 확대는 기업의 금융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기업은 근로자 또는 관리자와 같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가치와 그들에 대한 요구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좋은 회사마저도 근로자들을 하청 또는 인원 감축의 시험장에 반복해서 노출시켰다. 결국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실제 경험의 비중도 확대되었다는 설명이다.

셋째,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 역시 불안정 노동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들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수요를 줄이는데 기여하거나 자본의 이동과 국제 지사 관리를 가속함으로써,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자의 감독 능력을 확장시켰다. 특히, 모바일 장치의 편재성(ubiquity)은 주문형(on-demand), 긱(gig), 또는 공유 경제(sharing economy)의 성장에 기름을 붓고,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자신들의 조직 구조로 활용하기 쉽게 만들었으며, 이전에는 기업이 다루던 위험들을 개별 노동자 스스로가 떠안게 되는 독립된 계약자로 노동자를 재정의하게 만들었다(Schor, 2017). 실제로 오늘날 가장 자본화된 기업인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애플 같은 기업들이 과거의 고용 형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필요는 거의 사라졌다는 설명도 있다(Davis, 2016).

넷째, 탈노조화(de-unionization) 현상 역시 불안정 노동의 비중을 확대하였다. 탈노조화로 인해 사용주의 임금 결정권뿐 아니라 임시직, 시간제 등 비정형 노동 형태의 활용에 대한 재량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조직 차원의 보호는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초래했

다는 설명이다(Locke & Thelen, 1995; Western & Rosenfeld, 2011).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의 영향을 들 수 있다(Kalleberg, 2009; 백승호, 2014; 이승윤 외, 2017).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업의 고용 체제를 기초로 제도화된 임금체계와 사회보장제도의 해체 이유 이외에도 서비스업 자체의 특성 역시 불안정 노동 확산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비스업은 기존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달리 최종 상품을 저장할 수 없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생산의 즉각적인 변동이 요구된다. 이러한 성격은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달리 비표준화된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수요의 확대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제조업보다 기업 특수적 숙련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비전형적(atypical) 고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정이환, 2004: 166; 백승호, 2014 재인용). 한편, 규모의 영세성 역시 내부 노동시장의 취약성 및 잦은 폐업과 함께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설명된다(정이환, 2004: 166). 이러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고숙련 서비스업에서부터 저숙련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용역, 파견, 외주화 등의 다양한 고용 형태가 만들어졌다. 실제로 일자리 원천이 대량생산의 제조업 기반에서 유연한 생산의 정보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들이 관찰되었다(이성규, 2004; 윤정향, 2008).

정리하면, 거시적 수준의 변화와 관련해 (1) 세계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확산, (2) 주주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기업의 자본화 심화, (3) 디지털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의 발전, (4) 탈노조화, (5)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불안정 노동의 확산 원인으로 논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요인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기업 경영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Kalleberg, 2009; 2011), 이 같은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역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고용 관계의 변화(Osterman, 1999)로까지 이어졌다.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서비스업의 특성과 기술 발전이 결합하면서 소비자 수요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에서 생산 사이의 시간적 격차는 매우 짧아졌다. 대표적 예로 긱 경제(gig economy)와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고용주)은 무기한 계약, 전일제, 종속 고용에서 벗어난 고용계약을 선택하거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엄격한 해고규제와 실업급여 제도를 우회하는 고용전략을 통해 노동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Eichhorst & Marx, 2012).

특히,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들이 지닌 기술이 기업 특수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숙련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 노동시장을 내부화할 유인이 없다. 결국 기업이 이 노동시장을 외부화함으로써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장지연 & 양수경, 2007). 게다가 저숙련 서비스 업종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높지 않아 이 부문의 외부노동 시장화를 저지할 정치적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Lee, 2011). 따라서 서비스 산업 내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은 지속적이고 가장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는 견해도 있다(이승윤 외, 2017). 이러한 논의는 기업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생산비용 중 인건비 절감을 꾀하고자 하는 고용전략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고용전략이 단순히 고용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ILO가 불안정 고용에 대해 설명한 바처럼, 계약기간이 제한되는 고용 형태는 대부분 사회보험에서의 배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소득, 사회보장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포괄할 가능성이 크다(Eichhorst and Marx, 2012: 78; 서정희, 2015).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그렇다면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노동자(근로자)의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존 연구의 흐름은 크게 불안정 노동에 대한 인식과 행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인식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이 대체로 피할 수 없는 경제 흐름이라고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Lane, 2011; Pugh, 2015; Chen, 2015; Pech, 2017). 예를 들어, Lane(2011)은 미국 댈러스에서 첨단 기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들은 불안정한 노동에 처한 상황을 곧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기회들은 오로지 그들 자신의 개인적 책임인 '경력 관리'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 Pugh(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불안정한 노동에 처한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는 어떠한 호혜적 기대도 없이 일에 대한 높은 몰입과 헌신을 보여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태 차원에서 살펴본 연구의 경우, 불안정 노동에 대한 개인적 자구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중 대표적인 예로 불안정 노동시장에서의 청년층 지위를 다룬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최근 청년층 내에서 정규직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비정규직 종사자는 증가하는 현상과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에 집중된 이들 집단의 현주소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는 선택을 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대학 졸업을 유예하거나 취업을 연기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다루고 있다(이승윤 외, 2017: 93).

한편, 자발적으로 비정형 형태의 고용 상태에서 불안정 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비를 줄이거나 겸업과 같은 추가적인 경제활동 또는 저축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영 외, 2020).

제2절 예술노동시장의 특성과 불안정 노동

1. 예술노동시장의 특성

1) 불확실성

예술노동[2]은 창조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동연, 2018: 17). 예술은 노동의 창조적 역량을 보여주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은 예술의 창조적 가치 생산의 행위 조건이 된다(이동연, 2015: 64). 따라서 예술인에게 '노동'과 '창작'은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창작이 노동의 일부이지만 소득 창출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미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노동이라 할 수 있다(이동연, 2018: 16). 개인의 창의성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또는 예술계에서 참신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 역시 예술노동의 특수성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술노동의 특수성은 종종 예술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2) 최근 '창의 노동(creative labor)'이 주목받고 있다. 창의 노동은 기존 경제 생산에서 주변부에 위치했던 문화적·예술 노동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새롭게 명명된 개념이다(이상규, 2018: 60). 이후 영국과 미국 등에서 영화, 음악, 방송, 신문과 잡지 등 제도화된 문화산업과 미디어 산업, 즉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으로 일컬어져 빈번하게 사용되어왔으며, 최근에는 그 개념적 범위가 게임과 같은 ICT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창의노동과 예술노동은 기존 물질노동과 달리 비물질노동, 즉 '창의성'을 기반한 노동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창의성이 구현되는 방식에서 창의노동은 산업에 의해 관리된 측면이 강하고, 예술노동은 외부보다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강조된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Shorthose & Strange, 2004: 45).

한편, 개념적으로는 양자가 강조하려는 바가 다르지만, 현실에서 창의노동자로 일컬어지든 예술노동자로 일컬어지든 겪게 되는 어려움에는 유사한 측면이 많다. 예를 들어 창작자로서의 정체성과 기업가적 정체성,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등 정체성의 다중성과 그 정체성 간의 긴장과 갈등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더불어 예술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구조적 문제들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아직 학계에서조차 예술노동이 창의노동, 창조 계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이동연, 2018: 98 재인용)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들 개념 간의 구분은 심층적으로 연구될 부분이자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술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창조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신적, 육체적 활동이라고 예술노동을 정의하고자 한다.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예술작품 생산과정의 불확실성과 소비자 선호의 불확실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제조업의 상품 생산 과정처럼 계획과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생산 일정을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술적 영감이나 예술적 완성도에 이르는 시점을 사전에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최보연 & 안채린, 2017; 양종민 외, 2019). 작품 생산과정의 비예측성과 불확실성은 특정 사업장 안에서 정해진 근로시간과 근로 시간대에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근로시간 이후에는 일과 분리되는 일반적인 산업의 근로자와 달리 일-삶의 명확한 구분을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특성은 예술인 개인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단체를 운영하는 사용주 입장에서도 일정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소비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 선호의 불확실성 역시 예술노동시장의 특성으로 언급된다(Lancaster, 1979). 소비자 선호의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수많은 예술작품 중 어떤 작품이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가늠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내용적 측면에서 차별성뿐만 아니라 수준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특히, 이 모든 것이 작품 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특징은 공연이든 전시이든 입장료 판매 수입만으로는 예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온전히 충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2) 독과점적 시장

Rosen(1981)은 특정 직업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불균형적 소득 분포에 주목해 이를 슈퍼스타 이론(superstar theory)을 통해 설명하였다. Rosen은 소수 몇몇 사람에게 엄청난 소득이 몰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아주 낮은 소득이 분배되는 소득 분포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 활동 기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슈퍼스타라고 정의하였다. 슈퍼스타 이론은 예술인 사이의 소득 격차가 심한 현상에 관해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이론이다. 특히, 슈퍼스타의 탄생과 관련해서 Rosen은 이것이 단순히 개인의 재능만으로 이

루어진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 개인의 차별화된 재능 요인도 있지만, 대중매체의 발달 역시 차별화된 정도에 비해 큰 보상 및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만든 구조적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의 '탁월함'에 대한 선호가 슈퍼스타의 독점적 지위를 만드는 동시에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불안정 지위에 처하게 만든다. 슈퍼스타에 대한 수요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만한 질문은 '소비자들은 왜 여러 예술인보다는 소수의 예술인을 선호하는가?'라는 것이다(Towse, 2010: 306-307).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예술은 경험재 중 하나로, 소비자가 어떤 특정 기호(taste)를 토대로 예술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예술적 가치 등에 대한 정보탐색 비용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이런 정보탐색에 대해 비용 지불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가장 손쉬운 방식은 슈퍼스타의 명성을 토대로 소비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 결과 성공이 성공을 낳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개인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더 강화된다는 점은 문화예술소비에서 중요한 특징인데, 이는 일종의 편승 효과(bandwagon effect)이다.

결국, 예술인 개개인이 갖는 재능만큼이나 기술의 발달(대중매체)과 수요 측면의 소비 특성이 결합해 예술인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기회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예술노동시장이 갖는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장 환경과도 연결되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3) 공급과잉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은 노동에 대한 가격으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신호(signal)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 노동 공급은 줄고 이는 다시 해당 직업의 지위 하락을 유발하면서 관련 분야의 지원자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 공급이 충분히 떨어져 노동수요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임금 상승하여 균형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초적 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분야가 예술노동시장이다.

특히 예술노동시장을 다루는 학자들에게 공급과잉은 오래된 화두이다. 공연예술 분야를 예로 든다면, 캐스팅될 수 있는 작품의 수보다 무대에 오르고 싶은 예술인의 수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다(Menger, 2017). 따라서 일부 소수의 예술인을 제외하고는 예술활동을 통해 낮은 임금을 받고 생계를 이어가는 예술인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노동시장으로 새로운 진입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크게 (1) 예술 활동 자체에 대한 선호(Throsby, 1994), (2) 위험 선호적 성향(Santos, 1976), (3) 제도의 유인적 효과(Benhamou, 2000; Abbing, 2002)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예술 활동 자체에 대한 선호에 관한 논의의 대표적 연구로 Throsby의 근로선호 모형(work-preference model)이 있다(Throsyby, 1994). 근로선호 모형은 예술가들이 생계유지가 가능하고 예술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비예술노동시장에서 활동하다가 소득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때 다시 예술노동시장에 노동을 공급하게 됨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일반 근로자와 예술인의 '일'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는 주장을 이론화하는데 기여했고,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득에 비탄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예술인의 위험 선호적 성향 역시 과잉공급 이유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처음 제기한 Santos(1976)에 따르면, 공연 예술가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큰 발생확률을 가진 낮은 소득'과 '낮은 확률의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교환하려고 하는 위험 감수 성향이 있다. 특히, 그는 예술인들의 훈련에 대한 투자가 온전히 재정적 수익으로 회수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공연예술 분야의 경력 추구를 고려할 때 위험 선호와 심리적 소득(psychic income)이 재정적인 고려를 우선한다'고 설명했다(Santos, 1976: 257). 예술인의 위험 선호적 성향은 종종 슈퍼스타 이론(superstar theory)과도 함께 언급되기도 하는데, 예술인 노동시장이 공급과잉과 엄청난 소득 격차라는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스타 노동시장은 흔히 승자독식 시장(winner-takes-all markets)이라고도 부르는데(Alper & Wassall,

2006), 말 그대로 일부 소수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집중되고 다수의 참가자에게는 형편없는 보상이 주어지는 노동시장을 말한다. 이들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계수익보다 기대수익에 근거해 결정하는 위험 선호적 성향과 그 기대수익 자체의 크기를 실감하게 하는 슈퍼스타로 인해 수많은 시장 진입자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과 정부 지원금 등과 같은 제도가 예술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유인한다는 설명이 있다. 먼저, 교육기관의 유인 효과에 관해서는 전문예술 교육기관이 과잉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 교육 시스템은 예술학교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예술인에게 또 다른 소득 창출의 장이 됨으로써 낮은 예술소득으로도 예술직업을 유지하게 하는 의도치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Menger, 2006; Bille & Jensen, 2018). 한편, 정부 지원금이 더 많은 예술인들을 예술노동시장으로 불러들임으로써 공급과잉 및 예술인 수입 감소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주장도 있다(Rengers & Plug, 2001; Abbing, 2002; 김정수, 2015).

4) 이중 유연화(dual flexibility)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사회, 경제, 생산 등에서 발생하는 변화, 충격에 대한 노동시장의 적응 속도를 의미한다(오호영, 2015). 산업구조의 변동, 제품 수요의 다양화와 불규칙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생산 투입요소의 탄력적 조절이 필수적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크게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으로 구분된다. 수량적 유연성은 다시 외부, 내부, 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외부 및 내부가 근로자 수, 근로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면 임금 유연성은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둘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표 2]참고).

[표 2] 노동시장 유연성 종류

종류	내용
1) 외부 수량적 유연성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고용의 유연성으로서 기업 사정에 따라 임시직 및 계약직 활용, 채용 및 해고 규정의 완화 등을 통해 용이하게 고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
2) 내부 수량적 유연성 (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이미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시간제근로, 유연근로시간, 교대제, 근로시간계좌제, 휴가제도, 연장근로 등을 포함
3) 임금 유연성 (Financial or wage flexibility)	임금 유연성은 임금이 집단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정도로서 근로자 간에 임금 차이가 클수록 유연성이 높음.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 직무급, 성과보상임금제도, 개인성과임금제도 등을 통해 달성
4) 기능적 유연성 (Functional flexibility)	기능적 유연성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다양한 과업, 생산 활동에 투입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조직, 경영, 훈련 등이 기능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으며 외주화, 직무순환은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임

자료 : Atkinson(1984), Atkinson & Meager(1986), 오호영(2015: 15 재인용)

보통 수량적 유연성은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기능적 유연성은 고숙련 노동시장에서 제각각 의미를 갖지만, 예술노동시장에서는 수량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이 혼재된 것이 특징이다(Menger, 2017). 창의 노동시장이라고 이름 지어진 예술노동시장은 고숙련 노동시장인 동시에 기능적 유연성의 이행과 발전의 선두주자로 여겨진다.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징 중 하나로 '무경계 경력(boundaryless career)' 또는 '포트폴리오 경력(portfolio career)'이 지칭될 만큼 기능적 유연성은 일반적이다(Leadbeater & Kate, 2005; Hartley, 2005). 이는 예술인 자체의 고유한 특성으로 주로 설명되지만, 동시에 간헐적이고 불안정하게 만들어진 업무를 다루기 위한 대처 전략의 하나로 해석되기도 한다(Cohen, 2015).

예술노동시장의 이와 같은 이중 유연화(dual flexibility) 특성에 대해 긍정

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혼재해 있다. 긍정적 시각은 이중 유연화를 통해 고정 생산 비용을 최소화하고 새로움(novelty)과 원형(authentic)에 대한 탐색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Caves, 2000; Hesmondhalgh & Baker, 2010). 반면,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시각의 경우, 이중 유연화는 프로젝트 기반의 조직으로부터 파생되는 작업 내용의 변동성과 고용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예술인 개개인은 지속적인 경력 형성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한다(Menger, 2017).

5) 프로젝트 중심의 작업 방식

예술노동시장에서 노무 제공방식은 업무 시간, 장소, 방식의 정규성을 가진 임금근로자의 노무 제공방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방식은 부정기적인 업무 일정과 한시적 채용을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는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특정 작품의 제작이 결정되면 작품의 제작 기간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채용한다(양혜원 & 차민경, 2018). 따라서 고용 형태의 대부분이 계약직 또는 임시직이다. 이러한 특징은 예술인이 '채용-실업'의 반복적 순환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예술인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겸업을 갖는 비중이 높은 것도 바로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 방식으로 인한 빈번한 실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프로젝트 기반 작업의 또 다른 특징은 계약방식에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기간과 규모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만, 일부 예술인들은 프로젝트 제작 중 일부 업무에 한정된 용역 제공을 약정하는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그 결과, 하나의 프로젝트 내에서도 횡적으로는 업무 내용에 따라 여러 계약이 이루어지고, 종적으로는 다단계 하청 방식의 용역계약이 존재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작업 방식이 분절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후자의 경우 다단계 계약의 관행으로 인해 사용주 특정 및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예술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

예술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에 대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고용, 소득, 사회보장 차원의 불안정성 차원 모두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불안정 노동을 구성하는 차원별 주요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술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불안정성

먼저, 예술인의 고용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 근로 제공방식, 근로시간 등 고용조건 전반에 걸쳐 있다.

예술인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방식은 그들이 맺는 계약 유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주로 맺는 계약은 인적 용역제공계약(personal service contract), 저작재산권양도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이며, 그 외에도 신작제작, 출판계약, 공모전, 매매, 출연, 대관, 운송, 배급, 대여 등의 다양한 계약이 존재한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용역계약은 사람의 직접적인 노동력을 이용하고, 제작 기간 중 특정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는 도급 형태가 많다. 한편, 근로제공 방식은 예술 분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창작 분야에서 행해지는 계약의 경우 도급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계약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공연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출연 계약의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출연이라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지만 자신의 기술을 노무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고용계약의 성격도 갖는다(양혜원 & 차민경, 2018: 40~41).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대한 근로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정형적이라는 점에 있다. 작품 제작 기간에 한정되어 고용되는 경향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이 365일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근로와 휴식을 구분 짓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계약서 작성과 불안정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작업 상

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근로 시기와 시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확하게 근로시간 및 계약 기간을 기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타 직종보다 임금수준은 높을 수 있지만 한시적이고 단속적인 노동 특성상 소득 수준 자체는 타 직종에 비해 낮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용 형태, 근로 제공방식, 근로시간에 있어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기본적으로 앞서 살펴본 문화예술산업 자체가 갖는 불확실성과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방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산업 수준에서 프로젝트 수가 많더라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예술인의 수가 더 많아 개별 예술인 수준에서 프로젝트를 연이어 이어갈 수 없다.

(2) 예술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불안정성

불안정한 고용은 불안정한 소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임시계약이 만연한 예술노동시장에서는 양자 간의 관련성은 더욱더 깊다. 전통적 경제이론에서 노동계약은 계약자 간에 불확실성 측면과 미실행에 대한 담보(보험)로 작용할 때 상호 간에 이득이 된다. 문제는 항상 이득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금 변동성에 대한 보장과 장기적 관점의 생산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장된 장기계약일 경우 상호 이득이 성립한다. 그러나 임시계약의 경우, 실업 위험이 만연하고 말 그대로 전일제 상용직과 같은 장기 계약 관계에서 보장하는 보험 장치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실업의 위험을 높은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여길 것이고, 실업 위험에 대한 임금 보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노동 공급을 줄여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과대 해석하는 위험 추구자의 경우, 실업 위험의 보상 차원에서 결정된 임금 프리미엄을 직업에 진입할 유인으로 보고 노동 공급을 줄이지 않는다(Marshall, 1947). 이는 앞서 예술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살펴본 예술인들의 위험 추구적 성향이 예술노동시장의 과잉공급 원인이 된다는 논의와도 연결된다(Menger, 2017).

물론, 임금 프리미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한 노동 전

망에 대한 보상은 공연예술계에서 관찰되는데, 단속적 계약을 맺는 예술가가 장기간 근속하는 이들에 비해 시간당 임금을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임금 프리미엄은 불완전 실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격일 뿐이라는 점이다(Menger, 2017).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고용 결정에 있어 유연성 상실(예: 임시계약에서 장기 계약으로의 선회)은 사용주 입장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수의 임시계약 근로자에게 시간당 임금을 높게 함으로써, 노동 공급차원의 예비군을 확보해두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임시계약을 맺는 예술인 모두가 실업에 대한 보상 임금을 받지 못하는, 즉 보상 장치가 부분적으로 작동한다는 차원에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예술인의 취약한 소득 지위와 관련된 주요 연구 결과는 크게 예술 직종과 타 직종 간의 소득 비교와 예술 직종 내에서의 소득 비교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타 직종과 예술 직종 사이의 소득 비교에 관한 연구는 (1) 제조업과 문화예술분야 비교(허식 & 사명철, 2011), (2) 예술인들의 인적 자본 특성이 유사한 기술직, 숙련직 등과 같은 전문 직종과의 비교(Alper & Wassall, 2006) 등으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직종과 비교하든 예술인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공통된 연구 결과로 제시되었다.

특정 직종과의 비교는 아니지만, 한 국가 내 전체 근로자와의 비교를 진행한 연구도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연구 결과 호주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1983년에는 전일제 근로자(full-time employees) 수입의 70%, 1993년에는 60%, 2002년에는 57% 수준에 그침이 확인되었다(Alper & Wassall, 2006).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구한 2014년 월평균 시장소득과 예술인실태조사를 통해 산출한 2014년 예술인 월평균 예술소득을 이용해 각각 10분위 경곗값을 비교한 연구 결과, 모든 분위의 경곗값에서 예술인의 예술소득은 일반 국민의 시장소득에 미치지 못했다(이슬기 & 금현섭, 2017: 18).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다른 분야에 비해 또는 전체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예술인의 소득이 더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⑶ 예술노동시장에서의 사회보장 불안정성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는 예술노동시장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정규 고용 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한시적이고 단발적인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 관계를 기초로 한 예술노동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인의 정치적 요구 또는 예술인과 유사한 고용 관계를 갖는 비정형 근로 형태 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 요구가 증가하면서 점차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특성에 따라 예술인이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또, 그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 일반 사회보장제도 체제 내 대상 범위 확대의 접근방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예술인 대상의 특정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제각각이다(이슬기 & 금현섭, 2017: 11).

우리나라의 경우,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이어지다가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으로 제도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편이다([표 3] 참고). 특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직업적 위험에 대해 제도적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예술인이 처한 불안정한 사회보장 현실을 확인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표 3] 사회보험 미가입자 비중(단위: %)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2015	56.85	95.20	25.96	25.09
2018	53.04	93.48	26.96	24.12

자료: 2015년,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

제3절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접근

1. 불안정 노동과 제도적 접근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관심은 비정형 노동자(non-standard worker)가 당면하는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김수영 외, 2020). 특히, 기존의 표준적 고용 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제도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크게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이를 넘어서는 접근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황덕순 외, 2016).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로 인한 불안정 노동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의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박제성 외, 2016). 첫째는 임금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임금근로자의 오분류를 방지함으로써 임금근로자로서 보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별도의 범주를 신설하여 비임금근로자를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내에 자영업자와 임시직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은 유사하다.

위와 같은 시도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OECD, 2018b: 22)[3].

첫째,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는 고용주와 직원이 기여 부담을 공유하지만, 자영업과 같이 고용주가 특정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누가 사용자 몫

3)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자에게 실업은 일반적으로 최소한으로 보호되는 위험이다. 28개 EU 회원국 중 8개 국가만이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완전히 보장해주고 9개 국가는 어떤 형태의 보험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제도적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를 보장해주는 곳에서도 수급요건을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폐업을 한 자영업자에게만 구직급여 요구의 자격을 주고 있지만, 창업 과정에서 엄청난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폐업' 자체가 갖는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 그 결과 2004년에서 2016년까지 걸친 기간 동안 피보험자격을 가진 종속 근로자들의 평균 실업률이 7%인 반해, 자영업자 중 평균 실업률은 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b: 23).

의 기여금을 부담할 것인가? 즉, 이중 기여 문제(double contribution issue)가 발생한다.

둘째로, 불안정 노동자들의 큰 소득 변동성은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와 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12).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과 보수 사이의 시간차(time-lag)가 존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불규칙으로 인해 소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기적 보험료 납부 자체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비정형 노동자에게 있어 실업이 계약 종료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일감이 없는 것인지 찾지 않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다. 해고 자체를 입증해줄 고용주는 없고, 직업탐색 노력은 종속적인 근로자들에 비해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소득 변동이 수입 감소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를 유지해 구직급여의 대상이 될 유인이 크다.

한편, 위의 논의들은 표준적인 노동방식 또는 고용 관계를 토대로 '누구를 보호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적합한 실업 급여체계를 설계하는 문제도 중요하다(황덕순 외, 2016). 국내 연구도 아직 시회보험 적용 범위의 확대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이 주제는 여전히 연구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상시적인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점점 더 파편화되어 불안정해지는 노동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재와 같은 급여체계가 적합한가'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과 실업이 공존하는 상황을 대상으로 급여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해서 실업급여에 다양한 요소를 새롭게 도입[4]하였는데, 무엇보다 불안정 노동의 특

4)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실업급여와 관련한 노사협약(2014년 5월 14일)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를 도입하였다(황덕순 외, 2016).

징 중 하나인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거나 부분적인 실업 상태를 급여체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재충전할 권리(droit rechargeable: 이하 재충전권)'을 통해 급여 수급과 단시간 취업을 병행할 수 있게 했는데, 이와 관련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촉진과 관련한 주요 개편 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양승엽, 2018: 22-23).

먼저, 재충전권은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일하면 실업급여를 중지하고, 일한 기간만큼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재충전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하다(양승엽, 2018: 23). 첫째, 취업한 기간이 총 1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한 직장에서 연속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 등 근로계약의 형식도 무관하다. 단,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되기 전 중간에 맺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지급기간 만료 30일 전 고용센터는 구직자에게 재충전할 권리에 관해 통보해야 한다.

둘째, 중간의 취업 활동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비자발적인 퇴직의 원인은 상관없다. 만일 중간에 취업했던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이라면 재충전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직장에서 65일 또는 455시간 이상을 일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위의 두 요건을 갖추면, 구직자는 3년 이내에 재충전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재충전으로 늘어나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일한 만큼 증가한다. 급여액 또한 조정되어 중간에 수행한 취업의 보수가 합산되어 지급액이 결정된다.

[그림 1] 재충전권 사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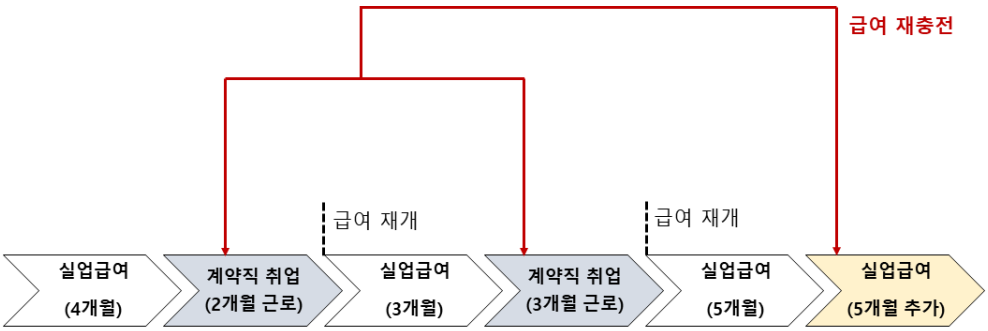

예를 들어, 지급 기간이 12개월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4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중간 2개월 동안 기간제 전일 근로계약으로 일한 후 퇴직하였다면 아직 실업급여는 8개월이 남아있다. 다시 3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3개월간 기간제 전일 근로한 후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였다면 남은 실업급여 기간은 5개월이다. 이때, 구직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 만료 전 재충전할 권리를 신청한다면, 신청자는 중간의 두 기간제 근로가 모두 150시간 이상의 근로와 비자발적 퇴사라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2개월과 3개월을 합산한 만큼 연장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 도중 일하게 되는 일자리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단기간이라 현재의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전 실업급여가 아직 남아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그림 1]).

반면, 한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부분적인 취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없고, 급여를 받는 중간에 취업, 즉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황덕순 외, 2016).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일제 상용직 일자리를 전제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전일제 상용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복수의 일자리에서 피보험자격을 이중 취득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를 더이상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표준 고용 관계를 토대로 한 파편화된 노동이 만연하고, 여러 시간제 일자리의 조합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즉 복수의 일

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형태가 확산되는 변화와 기존 고용보험제도는 갈수록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근본적으로 '표준적인 고용 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 적용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대안이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성찰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대안적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황덕순 외, 2016). 그 중 (1) 완전히 대안적인 접근으로 임금노동자를 넘어서 근로 능력자 전체, 혹은 시민들 모두를 대상으로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안과 (2) 기존 사회보장제도 자체로는 고용 관계를 벗어난 노동에 대해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혹은 (3) 노동자 스스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 복지제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조적 대응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Freelancers Union)의 사례를 들 수 있다(Friedman, 2014). 다만 이러한 노력은 민간 복지를 중심으로 복지제도가 발달한 미국의 맥락과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보편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2.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제도적 접근

1)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접근 방식

불안정 노동에 대한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관심만큼이나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학계와 현장 실무자의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의 특수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Murray & Gollmitzer, 2012).

[표 4] 예술인에 대한 옹호 전략 네 가지

전략	정책과 관점의 예시
예외적(exceptional) 접근	예술인의 지위를 고려한 특별 보호 정책 필요
하위 부문별(sub-sectoral) 접근	조합과 협회 차원의 사회보장프로그램 필요
부문별(sectoral) 접근	개별 직업 또는 기업 수준이 아닌 분야 차원에서 보호(한 분야 내 근로시간 기준으로 보장 혜택 산정)
일반적(general) 접근	여타 취약 근로자와 동등, 빈곤퇴치 활동과 연계

자료: Murray & Gollmitzer(2012: 428)

먼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적 다양성을 고취한다는 차원에서 예술인의 한계적 경제 지위를 다른 노동자보다 더 특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예외적(exceptional) 접근이다. 그 구체적 예시로 UNESCO 관점과 네덜란드의 WWIK 정책[5]을 들 수 있다. UNESCO의 경우 예술인의 예외적 지위를 인정하는 개별 국가 차원의 예술인 법을 제정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UNESCO, 1980; 2015; 2019). 한편, 네덜란드의 WWIK 정책은 예외적 접근방식을 취한 정책 중 하나로 직업예술인으로 경력을 막 시작한 예술인들에게 최대 48개월 동안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 상태에 처한 젊은 예술인들의 상황에 적절한 대처라는 평가를 받았다(Briskin, 2009). 그러나 다소 규범적 성격이 강한 예외적 접근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두 번째는 개별 분야 간 차이를 강조하는 하위 부문별(sub-sectoral) 접근방식이다. 이 관점은 조합 또는 협회 차원에서 자신들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하위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캐나다의 경우 대표적으로 방송·라디오 예술인 협회(the Association of Canadian Television and Radio Artists)와 퀘벡 예술인 노동조합(the

5) 예술가의 일과 소득 행위에 관한 제도(Wet Werk en Inkomen Kunstenars, WWIK)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다.

Union des Artistes in Québec)에 의해 설계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접근방식의 선구자적 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접근은 재원이 협회마다 다르고, 집단에의 소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특정 소속이 아닌 경우 보장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예외적 접근 방식과 하위 부문별 접근 방식의 협소한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제기된 부문별 접근 방식과 일반적 접근 방식이 있다. 부문별(sectoral) 접근의 경우, 개별 직업 또는 사업체 단위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 분담을 모색하기보다는 문화 분야의 전체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제기한다. 즉, 복지혜택의 가용성(availability)이 특정 일자리나 기업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일제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갖거나, 특정 사업장에 종속되지 않는 예술인 고용 형태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건강 및 기타 사회보장 혜택의 접근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혜 혜택뿐만 아니라 개별 예술인의 작업 이력이 기록되기 때문에, 예술노동시장에 만연한 불안정 노동에 대한 파악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6].

마지막으로 여타 근로자 또는 경제 전반과 예술노동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일반적(general) 접근방식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예술노동에 관한 논의를 예술 분야만의 특별한 노동정책이 아닌 여타 산업 분야를 망라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 노동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 즉, 모든 종류의 노동자는 단체교섭, 생활임금, 단체보험급여, 장애인 급여, 출산휴가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며, 다만, 그에 상응하는 정책의 자금과 조직, 전달체계는 개별 부문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

6) 독일의 경우, 자영업 지위의 예술인에게도 사회보험 혜택 자격을 보장하고 있으나, 자영자인 예술인은 일반 자영자가 사용주, 피고용인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과 달리 피고용인 보험료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비슷한 예로 호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가 있다. 많은 국가에서 실업 부조(unemployment assistance) 또는 연금 보조(pension supplements)와 같은 부분적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예술인에 대한 특별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OECD, 2018b).

이다. 특히,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지향하는 형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Murray & Gollmitzer, 2012). 유연안정성의 구체적 정책 수단은 (1)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 (2) 신뢰할만하고 유연한 계약방식(contractual arrangements), (3) 사회보장 수단(social security measures),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네 가지로 구성된다(European Commission, 2007). 유연안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이와 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고용주는 유연한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노동자는 실업급여제도와 적극적 고용 정책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연안정성은 사회안전망, 일자리, 그리고 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노동시장 체계가 전제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Murray & Gollmitzer, 2012).

2)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고용보험제도

예술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불안정 노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논의 또한 많지 않다.

국내 논의의 경우, 문화예술 분야의 산업적, 직업적 차원의 특성과 제도 사이의 부정합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도적 보완이 향후 필요하다는 시론적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서우석 & 이경원, 2019; 차민경, 2020; 허은영, 2020). 그러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예술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행위자 행태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해외 연구 중에서 예술노동시장과 고용보험제도의 관계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 Menger(2017)와 Benghalem(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대응 차원에서 어떤 이론적 예측이 가능할지 특히, 행위자 행태 차원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Menger(2017)는 고용주-프리랜서-정부의 삼자적 관계를 토대로 각

행위자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둘러싸고 어떠한 전략적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Menger는 예술노동시장의 특수성 중 이중 유연성과 과잉공급의 결과인 산업유보군(a reserve army of underemployed workers), 그리고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 방식이 만들어내는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고용 및 계약 형태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이러한 예술노동시장의 특수성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갖는 재충전권[7]이라는 제도적 특성이 맞물리는 환경에서 고용주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즉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제도를 전략적으로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Menger는 그 구체적 예시로 고용과 실업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용주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주로 일을 분절하여 할당하는 행태[8]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예술인 역시 수급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수급 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단기 계약의 노동 수요가 생기면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즉, 수급기간에 일정 정도 고용 시간이 포함된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기간 중 일부 고용 시간이 포함된 경우가 1980년에는 36%, 1985년에는 60%, 1992년에는 90%까지 증가한 수치를 통해 보여주었다. 한편, 재충전권이 유연안정성 차원에서 고안된 제도적 특징이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제도를 활용한 결과, 직업적 위험이 상당 부분 고용주에서 근로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Benghalem(2017) 역시 프랑스 예술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실업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한 예술인들의 전략적 행동이 복지비용을 유발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에 반응한 예술인의 전략적 행동에 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일정 근로시간(10개월 동안 507시간, 주당 약 13시간)을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근로시간 분포가 집중된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일하지만 수

7) 프랑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계약 근로를 허용하고 있고, 해당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보충해주는 재충전권을 인정하고 있다.
8) 그 예로 시간이 갈수록 예술인 1인당 평균 고용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예술인 1인당 근로시간과 수입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급 자격이 없는 프랑스 비거주 예술인들(벨기에 출신 예술인들)의 근로시간 분포와는 다른 것임을 보임으로써,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공해주었다. 또, 수급 요건에 영향을 받아 왜곡된 노동 공급은 실업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여주었다.

이상의 두 연구는 예술인이 처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대응인 고용보험이 원래 취지와 달리 노동 유연화와 함께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배가시킬 가능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도에 대한 행위자의 전략적 행태에 집중한다는 점에도 유사하다. 그러나 두 연구간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Menger의 경우 고용주-프리랜서 관계에 더욱 집중하였으며 특히 고용주의 비용 최소화 전략이 프리랜서인 예술인에게 어떠한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보여준 반면, Benghalem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예술인의 행태 변화를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들 연구 모두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제도가 맥락에 따라 그 취지와 달리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Menger의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착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불안정 노동 차원에서 예술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비록, 프랑스의 재충전권을 우리나라의 경우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수급기간 중 고용보험 미적용 일자리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발생액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예외적 규정은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가능성은 과잉공급 시장에서 추가적인 경력 형성과 평판 축적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불안정 노동에 처하는 것보다 중요한 예술인의 선호를 고려할 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있는 예술인이 사용주가 제시하는 초단기 혹은 저임금의 일자리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3장 선행연구 비판적 검토와 연구 분석틀

제1절 선행연구 비판적 검토

지금까지 불안정 노동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예술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 노동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안정 노동의 개념과 확산 원인, 그리고 대응에 관한 논의는 예술노동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불안정 노동 개념에 관한 논의는 파편적으로 논의되어온 취약한 예술소득과 예술 분야의 고용 특성을 '불안정 노동'으로 개념화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토대가 된다.

둘째, 불안정 노동의 원인에 관한 논의는 거시적 차원의 환경 변화와 함께 사용주의 적응행태에 주목하게 만든다. 이는 그동안 시장적 특성 또는 직업적 특성을 위주로 예술노동의 특성을 설명하려던 기존 논의를 넘어 예술인과 고용 또는 도급계약을 맺는 사용주의 행태가 예술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한계는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사용주 행태 변화의 도화선(trigger)으로 작용해 불안정성을 더욱 확산 또는 심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제기한다. 이는 예술노동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용주 행태 변화의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 역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불안정 노동에 관한 기존 연구의 관점을 예술노동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먼저, 기존의 불안정 노동 논의는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한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예술노동시장에서 예술인과 사용주 사

이의 계약은 고용계약보다 도급(용역)계약이 더 일반적이다. 따라서 한정된 고용계약 기간과 비임금 급여(퇴직금, 사회보험) 등을 기준으로 정규직 예술인과 비정규직 예술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논의의 범위를 매우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단순화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기존 논의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 요인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사용주의 적응행태에 주목하면서도 이러한 행태가 불안정 노동 속성에 미치는 영향에만 주목할 뿐, 정작 불안정 노동에 처한 개인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간과하고 있다. 특히, 일반 노동시장의 노사 관계는 특정 기업(조직) 안에서의 관계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예술노동시장에서 사용주와 예술인의 관계는 해당 관계에 한정되지 않을뿐더러 그 관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특정 예술단체와 특정 예술인 사이에서의 고용단절과 회복이 반복될 수 있다. 또, 예술노동시장에서는 공식적인 채용 절차보다는 평판 중심으로 스크리닝(screening)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의 사용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용주의 평가가 관계종료 이후에도 예술인의 예술노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예술인이 당면한 예술노동의 불안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예술인의 대응 행태를 제약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관계를 간과하는 것은 불안정 예술노동이 예술인에게 미치는 의미를 제한한다.

본 연구는 예술인 겸업 행태와 함께 논의되는 취약한 경제적 지위 또는 경제적 위험에 대한 파편적 논의를 불안정 노동으로 개념화하면서도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계약과 함께 (도급)계약의 불안정성까지 고려하고자 한다. 이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비중이 큰 예술인의 종사상 지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또, 앞서 언급한 두 번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인 겸업 행태에 미치는 사용주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노동시장에서의 사용주와 예술인의 관계가 일반 노동시장과 달리 '노동'에 대한 일회적 거래로 국한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한 이론적 자원으로 예술 생산체계 논의를 추가로 검토하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분석틀

1. 이론적 자원 : 예술 생산체계

1) 예술 생산체계

예술노동을 거래로 하는 예술노동시장은 결국 예술 생산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 생산체계를 형성하는 요인들과 구조적 특징에 관한 논의는 예술노동시장 안에서 행위자들의 의사결정 또는 행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예술 생산체계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은 어떻게 생산되며 분배되는가'와 관련된 생산 중심의 접근법은 창작자, 분배망, 예술작품, 그리고 사회화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설명의 요지는 문화적 대상이 그것을 창조하고 분배하는 사람들과 체계에 의해 걸러지고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예술 생산체계에 대한 논의는 Howard Becker(1982)의 예술계(art worlds) 개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역시 예술작품이 '예술가'라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전체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관점, 즉 '예술은 예술가가 창조한다'는 생각과 괴리가 있다. Becker는 특정 개인에게 예술작품에 대한 공로를 부여한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다양한 재능을 지닌 많은 사람이 예술활동과 최종 산물(예술작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예술을 집단적 행위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예술은 완성된 산물(하나의 대상이나 공연)이라기보다 하나의 과정(하나의 행위)이라고 보고, 예술을 생산하는 것이 집단적 노력임을 강조하였다(Alexander, 2003).

이 같은 시각은 Becker 이외에도 '문화의 다이아몬드(Cultural Diamond)' 관점을 통해 예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던 Griswold와

Alexander의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Griswold(1994)는 '문화의 다이아몬드(Cultural Diamond)' 관점을 제시해 예술 생산물, 예술 창작자, 예술 소비자, 사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예술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Alexander, 2003). 예술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 생산물, 예술 창작자, 예술 소비자, 사회 네 개의 요소와 [그림 2]처럼 연결된 여섯 개의 선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 문화의 다이아몬드(Griswold,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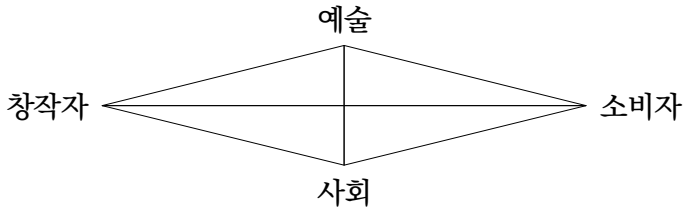

이 관점은 이론이라기보다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관계가 있음을 추상적으로 제시하는데 그치지만(Alexander, 2003), 그럼에도 사회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후 Alexander는 Griswold의 관점이 예술작품의 창조와 분배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 [그림 3]과 같이 수정된 문화 다이아몬드를 제시한다.

[그림 3] 수정된 문화의 다이아몬드(Alexander,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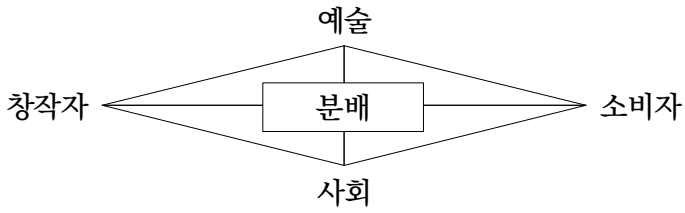

Alexander는 '분배체계'를 통해 어떤 종류의 예술이 광범위하게 또는 협소하게 분배되거나, 아예 분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Alexander, 2003). 알렉산더 관점의 핵심은 예술작품과 사회가 절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통해서만 연결될 수 있는데, 이때 분배체계의 여과 효과(filtering effects)는 어떤 예술품들이 관객에게 전달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Alexander, 2003). 여기서 Alexander의 '분배체계'는 Becker의 '유통체계' 개념과 유사하다. Becker에 따르면, 예술의 생산은 예술적 비전을 어떤 형태(물질적 대상이나 공연)로 현실화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Becker, 1982). 특히, 예술의 유통은 예술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ecker는 생산과 분배가 구별될 수도 있고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면서, 유통체계는 관객의 규모, 생산자와 예술가, 유통자 간의 권력 균형, 그리고 예술작품의 특성과 같은 요소에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제약과 가능성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Alexander, 2003).

결국, 예술 생산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Hirsh(1972) 역시 문화산업을 하나의 체계로 바라보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산업은 조직의 연결체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취득해(투입, input) 어떠한 방식으로 변환시킨 후에(throughput) 다음 단계의 조직이나 시장으로 내보내는 것(산출, output)을 의미하는데, 그 체계의 여과 효과와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2) 예술 생산체계의 여과 효과와 게이트키퍼 역할에 관한 논의

Hirsch는 예술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영리 사업체)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 특히 이들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역할에 주목하였다. 예술 생산체계 내에서 개인적 결정이든 조직의 결과물이든 간에 게이트키핑은 예술품의 내용을 직접 형성하지는 않지만, 대중이 실제 보게 될 예술품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현될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예술가들(공급자들)과 예술의 최종 소비자들(대중) 사이에 놓여있는 체계가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는가'에 따라 예술품은 걸러지게 되고,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예술품의 공급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 주목할 만한 개념이 바로 예술품(혹은 예술가)이 들어오고 나가는 체계를 통제하는 게이트키퍼이다. 게이트키퍼는 생산체계 내 단계마다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출판업계에서는 원고를 읽고 거절(혹은 승낙)을 하는 편집자들이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고, 이 단계의 체계 내에서 걸러진 책은 다음 단계인 마케팅 단계, 비평 단계, 도서관 내 서고 전시 단계 등에서 게이트키퍼를 거친다. 사실 게이트키퍼라는 개념은 Hirsch가 원래 논의했던 영리 추구의 문화산업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Alexander, 2003). 문화(예술) 생산체계 안에서, 특히 유통체계가 영리적 문화산업이든 비영리 조직이든 혹은 국지적 네트워크든 게이트키퍼는 존재한다. 따라서 예술작품이 창작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유통체계가 작품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체계에서 게이트키핑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예술 생산체계 내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의 주체로 기존 연구에서는 문화산업 내 기업(Hirsh, 1972), 비영리 조직인 아트센터(Kawashima, 1999), 갤러리(Peterson, 1997) 등 다양한 조직 형태에 주목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조직 형태는 다르지만 예술 수요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태가 예술 생산체계 속에서는 일종의 여과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바라보는 점은 공통된 관점이다. 이들의 논의를 투입 측면(input side)과 산출 측면(output side)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입 측면(input side)에서 교섭 담당(contact man)이라 불리는 경계 인력(boundary personnel)에 의해 소비 영역으로 전달할 예술인(작품)이 발굴된다. 이때, 수많은 예술인(작품) 중에서 어떤 예술인과 협업할지는 공식적인 절차 또는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결정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그리고 예술적 결과물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목표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일반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

적 이득과 예술계 내부의 평론단을 충족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술적 평가가 동시에 얻어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또, 예술인 또는 예술작품을 발굴하는 과정은 해당 장르의 흐름과 최신의 예술적 시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움(novelty)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한정된 기간 안에 선별하고 공연 또는 전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마케팅·홍보 단계로 넘어가야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실제 업무에서 경계 인력의 예술인(작품) 선별 방식은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개인적인 네트워크의 특성에 의해 예술 생산체계가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는 유명 예술인이나 과거 히트작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선별한다(Kawashima, 1999; Alexander, 2003).

다음으로 산출 측면(output side)에서 예술조직은 수요의 불확실성에 더해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선택적 홍보(selective promotion) 전략을 취한다(Hirsh, 1972; Alexander, 2003). 즉, 가장 성공할 만한 예술인 또는 작품 아니면 성공한 이력이 있는 경우를 지원하려는 경향이 크다.

한편, 이러한 선별 전략의 원인으로 예술 수요의 불확실성,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예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견해 이외에도 예술에 대한 평가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고 따라서 분석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Dimmagio & Hirsch, 1976; Peterson, 1997).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투입이든 산출이든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예술 생산체계 내에는 '선별' 과정이 존재하고 그 선별은 예술조직이 불확실한 외부 환경과 한정된 자원하에서 보이는 전략행태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선별이 '선택적'인데 그 선택이 이미 알고 있거나 이미 성공한 예술인 또는 작품(히트작)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시장의 불확실성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지적(Bystryn, 1978; Hirsch, 1972; Kadushin, 1976; Lang & Lang, 1988; Peterson, 1997)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술 생산체계의 요소와 이들의 분배 혹은 유통체계의 기능, 그리고 그 체계 내의 게이트키퍼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예술노동시장에서 예술가와 예술조직(단체)을 예술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로 단순화시키지 않는다.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논의가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체화하는데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예술인이 처한 불안정 예술노동이 개인적 능력과 재능의 결과물이 아닌 예술조직의 전략적 행태로 인해 전가된 위험과 불확실성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 행태를 논의하는데 있어 분석단위를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예술 생산체계 내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예술조직을 포함하고자 한다.

둘째, 예술조직의 선별적 의사결정이 불확실한 외부 환경과 조직이 보유한 한정된 자원에서 보이는 전략적 행태라는 점은 예술 생산체계 내에서 예술조직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대응 행태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예술인 개인 행태에 미치는 예술조직의 행태를 고려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러한 행태가 발현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하고자 한다.

2. 연구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술 생산체계 논의를 이론적 자원 삼아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그림 4]와 같다.

첫 번째로, 예술노동시장의 공급자이자 창작의 주체인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예술인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로, 이후 예술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세 번째 분석을 위한 기초 분석에 해당한다.

[그림 4] 연구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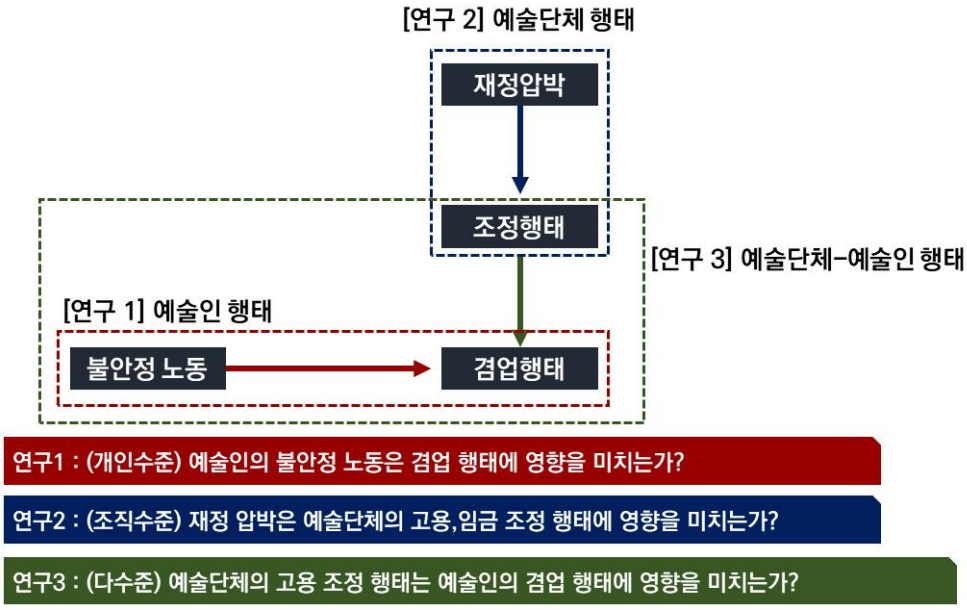

두 번째로, 재정압박에 대한 예술단체의 대응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역시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분석에서 설명변수의 일부로 활용될 예술단체의 특성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예술노동시장의 위험에 대한 조직의 대응행태를 살펴본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비영리 조직인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운영 자금의 압박이 커지는 제약 상황에서 고용과 임금을 조정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불안정 노동 확산의 주체로 역할 하는지 실증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는 세 번째 분석은 예술인 겸업 행태에 개인적 특성과 예술단체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이들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에 따라 예술단체에 속할 가능성이 큰 예술인의 겸업 행태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이 분석의 목적이다. 앞서, 예술 생산체계 내에 예술단체는 예술인과 같이 생산자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분배 또는 유통을 담당하는 주체임을 살펴보았다. 결국, 어떤 예술인과 함께 작업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임금 수준을 지급할

것인지는 예술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위계적 관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고려해 마지막 연구는 다수준 분석을 통해 모형을 추정하였다.

따라서 세 연구는 각각이 구분되는 개별 연구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세 번째 연구는 예술인 개인 특성에만 주목한 첫 번째 연구를 예술계 내의 또 다른 행위자인 예술단체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논의를 확장한다. 두 번째 연구는 세 번째 연구의 핵심 설명변수인 예술단체의 특성 변수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과 동시에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 확산 차원에서 외부적 재정압박에 대한 예술단체의 대응 행태를 살펴본다는 목적이 있다.

이하의 제4장, 제5장, 제6장에서는 각각의 연구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설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7장 결론에서는 세 분석을 종합하여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서술한다.

제4장 [연구 1] 불안정 노동과 예술인의 대응 행태

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불안정 노동에 대한 예술인의 대응 행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술노동의 불안정성이 심화할수록 예술인의 겸업 활동 가능성이 커지는지 1차로 살펴보고, 겸업 활동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2차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겸업 활동의 질적인 측면은 예술 관련 부업을 갖는지 아니면 예술과 관련 없는 부업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예술인의 겸업 활동은 예술인 행태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낮은 소득에 대한 보완적 경제활동으로만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예술인들이 낮은 소득을 받게 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거나 이를 분야적 특수성으로 못 박아 논의를 단순화한다. Throsby의 근로선호모형(work-preference model)을 그 예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예술소득이 비예술소득보다 낮다고 가정하고, 예술노동과 비예술노동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이 상충(trade-off) 관계에 있음을 보이는데, 이러한 예술인의 행태가 고전적인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일-여가의 설명의 예외적 모습이며, 이는 분야의 특수성과 예술인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부업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무엇인지에 주목하지 않거나, 주목하더라도 예술 관련 부업과 비예술 관련 부업으로만 구분하고 그러한 속성의 차이가 예술노동시장에서, 특히 예술 생산체계에서 예술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나아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예술인 겸업 행태 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겸업 여부와 겸업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들에 미치는 불안정 노동의 영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1. 겸업에 관한 논의

1) 겸업의 개념 정의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 형태의 다변화로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2015년 유럽에서 이미 직장이 있으면서도 부업(secondary job)을 가진 사람이 870만 명이 넘었으며, 미국도 730만 명의 근로자가 부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ouliakas, 2017). 우리나라도 「경제활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취업자 2,623만 5천 명 중 부업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0만 6천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성미, 2017)[9].

겸업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상태로, 본업 이외에도 부업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해외 문헌들은 주업(main job) 이외에 추가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dual job, second job 등의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정성미, 2017). 우리나라의 경우 부업이라는 표현보다 투잡(two-job)이라는 표현이 더욱 익숙하며 멀티잡(multi-job)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이고 있다(최형재 & 임용빈, 2020). 다양한 표현으로 일컬어지지만 결국 주업이 아닌 추가적 소득 활동을 지칭하는 것은 동일하다[10]. 그러나 어디까지 추가적 소득 활동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로 부업의 인정 범주가 달라지고, 이는 곧 겸업을 파악하

9)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부업을 하는 사람, 즉 겸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학계와 정책적 관심이 저조하다. '부업' 또는 '겸업'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부업'을 주제로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본 연구(정성미, 2017), 부업 행태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임용빈 & 최형재, 2017), 제도가 부업참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최형재 & 임용빈, 2020), 그리고 다중직업 종사자에 대한 노동 규제를 다룬 연구(최석환, 2019) 등이 있다

10) 부업과 겸업은 혼용되어 쓰이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업이 아닌 추가적인 소득활동(직업)을 부업으로 지칭하고,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상태 자체는 겸업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겸업이 복수의 직업을 가진 상태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부업은 복수의 직업 사이에 주(主)와 부(副)의 구분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는 범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겸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때 가사도우미나 건설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매일 일하는 장소가 달라지거나, 고용주가 동일한 상태에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업과 부업 모두가 자영업인 경우 겸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학계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학문 분야별로 조금 상이하다. 예를 들어, 조직행태 연구와 사회학 분야에서는 부업 하는 사람을(moonlighters) 전일제 주업을 갖고 있으면서 주업 이외의 부차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선택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개별적인 두 조직 안에서 별도의 두 직업을 갖고 완전히 구분된 관리자의 통제하에서 일하는 사람을 지칭한다(Inness et al., 2005: 733).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는 자영업자를 논의에서 배제할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시간제 직업을 갖는 사람들 또한 간과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Campion, 2018). 한편, 경제학 분야에서는 다중 직업종사자(multiple jobholder)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미국 노동통계청(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이하 BLS)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BLS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다중직업 종사자는 조사의 기준이 되는 한 주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보통 주업으로부터 시급 또는 고정급여를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BLS, 2015). 다만, 주업이 무급 가족종사자 지위이거나 자영업인 경우, 그리고 부업이 자영업이거나 무급 가족종사자 지위에 있는 경우는 논의에서 배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개념 정의는 접근 가능한 자료, 연구자의 연구목적 등 연구의 편의성에 의한 것이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겸업인[11]은 Campion(2018)이 제시한 개념처럼

11) 이하에서는 다중 직업인, 부업하는 사람을 겸업인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사용주이든 자영업자이든 금전적 지불의 대가로 행해지는 모든 업무 또는 일련의 업무들을 포함하는 직업이 한 가지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봉사 활동이나 비금전적 대가로 행해지는 업무를 하는 직업은 제외한다.

2) 겸업의 동기에 관한 논의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한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까? 이에 대한 설명은 금전적 동기와 비금전적 동기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먼저, 금전적 동기와 관련해서는 주업의 시간 제약 모형과 주업의 불안정성 모형이 있다. 주업의 시간 제약 모형(main job hour constraint)은 근로자가 주업에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임금 수준이 불충분해 근로시간을 늘려서라도 추가적인 소득 창출하고자 하며 이것이 바로 겸업의 동기가 된다고 설명한다(Shishko & Rostker, 1976; Paxson & Sicherman, 1994; Dickey et al., 2015; Hirsch et al, 2016). 즉, 주업에서의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제약으로 인해 겸업함으로써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겸업과 관련된 이론을 최초로 제시하고 검증한 연구는 Shishko와 Rosker(1976)의 연구인데, 이들 연구 이전까지만 해도 겸업인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묘사하는 수준에 그쳤다(Guthrie, 1969; Hamel, 1967). 그러나 Shishko와 Rosker는 주업에서 더 많은 근로시간과 소득이 생길 때, 개인의 노동 공급, 즉 추가 근로 의지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후 관련 연구 결과로는 (1) 주업에서의 노동수요와 보상이 높아질수록 부업을 탐색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설명(Krishnan, 1990), (2) 자신의 교육 수준을 비추어봤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소득 수준보다 낮다고 인식하거나 비싼 내구재 또는 주택 구매 계획이 있는 경우 부업을 찾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설명(Abdukadir, 1992) 등이 있다.

한편, 제약 모형에서 이론적 기반은 주관적 박탈감, 즉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데서 겸업하게 된다고 본 Wilensky(1963)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만한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적 박탈감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겸업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은 지배적인 관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모든 연구자가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Jamal(1986)은 '겸업하는 사람은 곧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약자'라는 가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은 박탈감(deprivation)보다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삶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진 포부(aspiration)가 큰 사람들이라는 점을 부각한다(Jamal, 1986: 980). 이와 같은 Jamal의 주장은 금전적 이유만으로 겸업의 동기를 단순화하기에는 근로행태의 동기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업의 시간 제약 모형에 대한 또 다른 비판으로 일반화의 한계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고용계약을 임금근로자에게는 이 모형이 적용될 수 있지만, 도급(용역)계약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Atherton et al., 2016).

겸업 행태의 금전적 동기와 관련한 또 다른 설명으로는 주업의 불안정성 모형(main job insecurity model)이 있다(Bell et al, 1997). 이 모형의 요지는 주업을 그만둘 위험에 처할 때 겸업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업은 실업과 소득 감소에 대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한다(Panos et al, 2014; Conen, 2020). 또, 주업의 불안정성은 임금근로자이든 자영자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가 사업으로 충분하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역시 주업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부업을 갖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Henley, 2007; Wu et al., 2009).

겸업 형태의 비금전적 동기에 관한 논의로는 이종직업 모형(heterogeneous jobs model)이 있다(Conway & Kimmel, 1998; Boheim & Taylor, 2004; Wu et al., 2009). 이 모형은 조직행태에서 다뤄지는 직업 포트폴리오(job portfolio)[12] 관점(Handy, 1984; 1995)을 차

12) 여기서 포트폴리오 작업이란 다른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여러 가지 다른 조그만 일들의 모음(collection) 또는 특정한 고용주로부터 독립해 다른 조직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

용한 것으로, 이 관점은 개인의 직무 다양화 욕구에서 제기된 것이다. 즉, 피고용인(employee)이 주업의 업무가 정형적이거나 재미없다고 느끼는 경우, 직무의 다양성과 모험 추구를 목적으로 이직하거나 겸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직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동기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직업에 대한 학습, 새로운 역량 획득, 직무 다양성에 대한 추구, 흥미 또는 취미 추구, 직업 불안정성에 대한 보험, 또는 유연한 근무 일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포함된다(Dickey et al., 2015; Hirsch et al., 2016). 그러나 이 모형 역시 자영업의 경우 겸업을 통해 직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Atherton et al., 2016).

한편, 최근 금전적 동기와 비금전적 동기 이외에도 잡 크래프팅[13] 이론(job crafting theory)을 통해 겸업의 동기를 설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Campion(201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잡 크래프팅은 보통 과업 또는 일의 관계적 경계에 있어서 개인이 만든 물리적 그리고 인지적 변화를 일컫는다(Wrzesniewski & Button, 2001: 179). 원래 논의에서는 잡 크래프팅의 동기를 직업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일의 의미, 긍정적 이미지 형성의 필요성, 그리고 인맥(human connection)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그 하위요소가 ① 업무의 양, 업무의 순서 등에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과업 크래프팅(task crafting), ② 함께 일하는 사람 및 그들과의 협업의 빈도 등과 같은 개인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의미하는 관계 크래프팅(relational crafting), ③ 업무의 목적 및 우선순위 등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인지 크래프팅(cognitive crafting)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Wrzesniewski & Button, 2001; 김민지·박용호, 2019). 또,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직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일의 의미를 더욱 크게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며, 조직 차원에서는 개인이 전체적인 작업 흐름

의 역량을 발휘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job crafting'의 용어번역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민지·박용호(2019)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 8월 말일까지 게재된 국내 양적 논문 61편을 분석한 결과, 잡 크래프팅(잡크레프팅 포함:54.7%), 직무재창조(5.7%), 직무개선, 직무크래프팅, 장인적 직무수행 등의 순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 조직목표 또는 부서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잡 크래프팅 개념은 한 조직 내에서 개인의 과업(task) 또는 직무(job) 확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겸업의 동기를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mpion은 잡 크래프팅이라는 개념이 '전체적인 경력 형성(total work experience crafting)'으로 재조작화 될 수 있다고 본다(Campion, 2018: 17). 특히, 이를 통해 단일 조직을 넘어서 어떻게 일의 경계를 확장하고 관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조직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한 가지 이상의 직업에서 일할 욕구 또는 추가적 기량을 형성할 욕구가 겸업할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동기는 주업에서의 소득 불안정성 또는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전적 동기와 역량 또는 경력 개발이라는 비금전적 동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겸업의 동기를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는 모형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형 근로형태의 확산과 불완전 고용(underemployment)의 여파로 겸업이 증가하고 있는 유럽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설득력 있는 관점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각의 기저에는 겸업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자라는 가정과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를 지지할 만한 일관된 연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다. 특히, 최근 고학력 전문인력 사이에서도 겸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설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겸업의 동기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있다고 보면서 개인의 기량과 경력 개발을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이종직업 모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비금전적 동기에 주목하는 설명은 겸업의 동기를 이해하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의 폭을 확장하게 한다. 먼저, 이종직업 모형은 겸업의 동기가 전적으로 금전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

의 한계를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겸업하는 방식이 주업 이후의 부업이라는 순차적 접근방식 이외에도 여러 직업의 동시 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잡 크레프팅 이론을 빌려 한 조직 내에서가 아닌 개인의 정체성을 기준으로 직업(직무)의 경계를 조정하는 행태로 겸업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전의 논의와 또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논의 중 어느 것이 더 겸업의 동기를 잘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고, 각각의 설명이 반드시 배타적인 관계인지도 모호하다. 특히, 이들 논의의 연구대상이 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임금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작업의 완성을 계약하는 도급(용역)계약의 비임금근로자들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Atherton et al., 2016).

2.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에 관한 논의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취업자 중 2% 미만이 겸업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8.2%가 예술노동 이외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나라 예술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Menger 2006, Casacuberta & Gandelman, 2012; Mangset et al., 2018) 그만큼 예술인의 겸업 활동은 만연하다. 이는 예술노동만으로 예술노동 자체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예술인의 목소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이강진, 2015; 이동연, 2018; 정경운, 2019). 결국, 예술인의 겸업은 그들의 자발적 행태라기보다는 불안정하고 낮은 예술소득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만연한 예술인의 겸업 행태는 그 경향과 원인에 대해 많이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예술인 겸업의 동기로 주목할 만한 설

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Throsby(1994)의 근로선호모형(Work preference model)이다. 이 모형은 어떻게 예술인들이 예술과 비예술 시장에 노동력을 투입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예술인의 노동시장 공급 관련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된다. 근로선호모형은 기본적으로 (1) 예술인들의 소비수준을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준으로 고정하고(Papandrea & Albon, 2004), (2) 예술시장의 임금은 비예술시장의 임금에 비해 낮다고 가정한다(Withers, 1985). 이를 전제로 비예술활동을 통한 소득창출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만 충족된다면 예술시장에 노동력을 투입을 늘린다는 것이다. 한편, 모형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실증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선호모형을 지지하는 경우(Robinson & Mongomery, 2000),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경우(Rengers & Maddens, 2000; Yoon & Heo, 2019), 지지하지 못하는 경우(Casacuberta & Gandelman, 2012) 등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선호모형이 겸업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직접적인 모형은 아니다. 오히려, 예술인들이 저임금을 받고도 어떻게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선호모형이 예술인의 겸업 행태 설명에 중요한 이유는 예술인의 노동공급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비예술분야에 대한 고려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예술노동의 소득 불안정성에 주목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편, 보다 직접적으로 예술인의 겸업 동기에 대해 언급한 연구로 Menger(2001; 201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Menger는 프로젝트 중심의 작업방식으로 인한 임시계약과 소득의 불안정성은 직업적 위험을 초래하였고, 예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을 다각화해 적응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예술인이 위험을 다각화하는 방식은 즉, 소득원천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고 설명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Menger & Gurgand, 1996). 하나는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으로 사적 이전소득(배우자, 가족, 지인으로부터의 금전적 도움, 기업의 후원 등)과 공적 이전소득(정부 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협회나 조합과 같이 상호 보험 제도를 설계하거나 서로의 임금을 통합하거나 공유하는 집단 차원의 재원 배분이다. 마지막으로는 여러 직업을 통해 소득 창출을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예술인의 겸업 활동이 가능한 것은 전일제 상용직과 달리 완전취업도 완전실업도 아닌 '일-보상된 실업 또는 비보상된 실업-직업탐색-네트워킹 활동' 사이의 반복적 순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Menger, 2001; Opara et al, 2019)[1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예술인의 겸업 동기는 주로 낮은 소득 또는 임시계약과 같은 불안정 고용 형태, 또 반복적인 '일-보상된 실업 또는 비보상된 실업-직업탐색-네트워크 활동' 순환 상태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불안정 노동이 예술인의 겸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겸업의 이유를 주업의 유지 수단으로 가정하는 주업의 불안정성 모형은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좀 더 구체화해보면 불안정 노동은 불안정 고용과 불안정 소득 차원에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예술노동시장의 프로젝트 중심의 작업 방식으로 인해 파생되는 계약 특성이 불안정한 고용의 주된 특성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불안정 노동에 관한 논의에서 살펴봤듯이 불안정 고용은 개념상 고용형태, 근로 제공방식, 근로시간 등 고용조건과 관련된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종사상 지위, 특히 정규직 이외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각 고용 형태 자체가 고용 불안정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고용 형태에 기반한 기존 논의는 주로 임금근로자 안에서의 불안정성의 정도를 구분하거나 비정규직에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여 비정규직이 불안정하다고 가정해 버리

14) Menger는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실업률 측정은 예술인의 경제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Menger, 2001).

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현실에서 발견되는 노동 불안정성의 복잡성과 모호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고용계약뿐만 아니라 도급(용역)계약에 기반을 두는 예술인의 작업방식을 고려할 때 종사상 지위를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그대로 차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계약 측면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근로 제공 방식의 불안정성에 주목하여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로 구분하고, 비임금근로자는 다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이하 사용주)로, 임금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분화한다. 이때, 가장 불안정한 근로 제공 형태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로 가정하고 이들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존의 근로 제공방식 측면에서 불안정한 고용 관계라 간주하는 범주 안에는 호출 근로 또는 파견 근로 이외에도 프리랜서가 주로 체결하는 용역 근로, 독립 근로와 같은 도급계약의 관계도 포함된다(이승윤 외, 2017: 79). 따라서, 1인 자영업자 역시 근로계약에 기반한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1인 자영업자 노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1인 자영업자는 노동에 있어서 발주자와의 계약 조건이 근무 기간의 제한이 아닌 작업의 완성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노동 방식이 정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인 자영업자의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용역)계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근무 기간(연/월/주/일/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일의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계약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 1인 자영업자 자신은 여타 자영업자와 달리 자신에게 종속되는 피용자를 두지 않는다. 또, 특정 고용주에 장기간 전속되지 않고 다양한 발주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단기간 노동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즉, 노동에 있어서 발주자와의 계약 조건이 근무 기간의 제한이 아닌 작업의 완성도에 있어서 구체적인 노동 방식이 정형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주자의 지시 내용에 따라 노동 장소, 방식, 근로시간이 좌우됨을 의

미한다. 이와 관련해 1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실질적으로는 도급 관계가 아닌 근로관계임이 분명한데도 사용주(발주자)가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도급계약을 이들에게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다(황준욱, 2009). 이와 같은 특성은 여타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1인 자영업자가 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이유로는 예술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예술노동시장은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종별 소그룹이 하나의 대단위 프로젝트팀을 형성하여 동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계약별로 보면 프리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집단 작업이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 일정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제작과정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협업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간 활용의 자율성은 제약되는 면이 강하다(황준욱, 2009). 이상의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의 불안정 고용을 대표하는 종사상 지위로 프리랜서를 기준집단으로 삼아 불안정 노동과 겸업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노동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프로젝트 기반의 작업방식을 보인다는 점인데, 이때 프로젝트 내에서 예술노동은 계약의 다양한 속성들로 구체화 된다. 따라서 예술노동의 불안정성을 살펴보는데 계약 특성의 속성들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Menger 역시 초단기, 저임금을 골자로 하는 계약 자체와 계약과 계약 사이의 실업 상태의 반복이 예술인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계약의 속성으로 적은 계약 건수와 계약금액, 초단기의 계약 기간을 불안정한 계약의 주요 속성으로 보고, 이들 요인이 예술인의 겸업 행태의 주요한 설명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 관련해 빈번한 경력단절 역시 겸업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함께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소득은 낮은 소득 수준으로 보고, 이에 대한 임금 보전의 활동으로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 불안정 예술노동은 예술인이 겸업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고용 측면]

(가설 1-1): 1인 자영업자 예술인은 다른 종사상 지위에 있는 예술인보다 겸업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2): 예술 분야에서의 불안정한 계약은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1-2a): 예술 분야에서 계약 건수가 적을수록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b): 예술 분야에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c): 예술 분야에서의 계약금액이 적을수록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예술 분야에서의 경력단절이 빈번할수록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소득 측면]

(가설 1-4): 예술소득이 낮을수록 예술인이 겸업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3. 불안정 노동과 겸업의 유형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불안정한 예술노동에 대한 보험으로 다른 직업을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업으로 삼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겸업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주업과 부업의 구체적 특성에 관해 다루지 못하고 있지만, 부업은 개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자본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상향이동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Pouliakas, 2017). 이는 부업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인적 자본 파급효과(human capital spillover)라고 볼 수 있다(Campion, 2018). 특히, 예술인의 부업이 예술과 관련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술과 관련된 부업에서 쌓은 인적 자본은 예술직업에서 직업적 성과 또는 예술적 성과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예술노동시장에서 평판은 인적 자본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요인인데(Towse, 2006; 양종민 외, 2019), 겸업하더라도 예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업을 통해 자신의 경력 및 평판 형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예술활동의 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예술인들에게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만약 비예술 분야에서 부업을 한다면 금전적 보상은 얻을 수 있으나 경력과 평판 형성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겸업 예술인들 사이에서 불안정 예술노동이 겸업의 질적인 속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불안정 예술노동이 예술인을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일차적 의미를 넘어서, 예술 활동의 지속성, 특히 경력과 평판 형성의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예술직업에서의 불안정 노동 수준이 단순히 겸업 여부가 아닌, 그 질적인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고려하였다. 특히, 불안정 노동으로 인해 예술인은 예술계 내에서 부업을 찾기보다 비예술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삼는다.

첫째, 주업 불안정 모형은 겸업 유형을 결정하는데도 여전히 유효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해준다. 겸업을 설명하는 일부 이론들은 겸업을 주업의 변경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겸업을 이해하거나, 아예 주업의 유지 또는 중단에 대

해 고려하지 않은 채로 겸업을 설명한다. 그에 비해 주업 불안정 모형은 주업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부업을 갖는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예술인이 예술직업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업을 갖는다고 설명하는 기존 선행연구(Throsby, 1994; Menger & Gurgand, 1996)를 보더라도 예술인의 상황과 가장 부합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형 역시 주업을 유지하기 위한 부업의 속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가정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이 모형을 통해 '예술인의 부업에는 예술직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업과 그렇지 않은 부업이 존재하며, 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주업인 예술직업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업을 선택하고자 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주업 불안정 모형에 더해 예술노동시장에서 경력이 갖는 의미와 그 형성의 메커니즘, 그리고 누적적 경력이 가져오는 누적적 이익을 추가로 고려한다면, 불안정 예술노동에 처한 예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겸업의 유형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력은 단기 프로젝트의 연속을 통해 형성된다'(Faulkner & Anderson, 1987)는 말처럼 예술노동시장에서 예술인은 단기 계약을 통해 옮겨 다니며 일하면서 경력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포트폴리오 경력(portfolio career)'이 아주 일상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이 하나의 회사를 위해 일하고 장기적 고용계약으로 이뤄지는 내부 승진 제도를 통한 관료제적 경력 형성과는 차이가 있다(Alexander, 2003: 298). 따라서 단기 프로젝트 참여는 소득 창출이 가능한 노동의 기회인 동시에 다음 기회를 마련하는 발판이기 때문에 예술인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해 Faulkner와 Anderson(1987)은 영화산업의 사례를 토대로 해당 산업 내 경력이 갖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하나는 이 산업에서 한 번 쌓인 신용은 고용될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경력이 누적되면 동등한 경력의 사람들과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프로젝트 참여, 즉 일할 기회를 얻는 것이 어렵지만 한번 일할 기회를 얻어 명성을 쌓는다면 이후 누적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때 주목할 점은 프로젝트 수행의 기회가 특정 엘리트 집단에 쏠리고,

결국 이들이 산업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력 초기 단계에서 일할 기회를 지속해서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Blair(2001) 역시 영화산업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초기 경력 형성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결국 이는 경력 형성의 기회가 개인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예술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산업 유보군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수가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또는 그보다 많기 때문에, 예술인 개인 차원에서는 항상 경쟁 속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이때 개인적 차원의 어떤 실패도 개인의 경력에 타격이 될 수 있기에 열악한 프로젝트의 근로환경, 저임금, 초단기 계약 조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예술인들에게는 단기 계약이라는 고용 형태보다 단기 계약이라도 연속해서 또는 누적적 체결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프로젝트를 통해 평판과 명성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예술인이 고용 형태와 소득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술계에 남아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부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선호한다고 모든 예술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앞서 Faulkner와 Anderson이 언급한 경력 특성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경력 형성의 기회는 이미 경력 형성으로 예술계에서 명성을 쌓은 예술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예술인들은 현재 예술직업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예술계 내에서 추가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얻기가 대단히 힘든 구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직업이 불안정 노동 특성을 띨수록 예술직업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처한 경제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예술 분야에서 부업을 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예술계에서 입지가 확고하지 않다는 뜻이고, 이는 예술계에서 또 다른 일할 기회를 얻는데 제약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 : 불안정 예술노동은 겸업 예술인이 동종보다 이종 겸업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고용 측면]

(가설 2-1): 1인 자영업자 예술인은 다른 종사상 지위에 있는 예술인보다 이종 겸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2): 예술 분야에서의 불안정한 계약은 겸업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2a): 예술 분야에서 계약 건수가 적을수록 겸업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b): 예술 분야에서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겸업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c): 예술 분야에서 계약금액이 적을수록 겸업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3): 예술 분야에서의 경력단절이 빈번할수록 겸업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소득 측면]

(가설 2-4): 예술소득이 낮을수록 겸업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제3절 연구설계

1.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 행태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구체적인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식 1]과 [식 2]의 독립변수들의 선형결합 함수는 같다. 그러나 분석대상과 종속변수에 차이가 있다. [식 1]의 경우 전체 표본이 분석대상이 되고, 종속변수는 겸업 여부이다. 한편, [식 2]는 겸업 예술인으로 분석대상이 한정되고, 종속변수는 겸업 유형이다. 이때, 겸업 유형은 동종 겸업(예술 관련 직종)과 이종 겸업(비예술 직종)으로 조작화하였다.

[식 1]

$$\ln\left(\frac{\pi_{1i}}{1-\pi_{1i}}\right) = \beta_0 + \beta_1 \mathrm{ArtStatus_i} + \beta_2 \mathrm{ConFreq_i} + \beta_3 \mathrm{ConPeriod_i} + \beta_4 \mathrm{Pay_i} + \beta_5 \mathrm{CareerBreak_i} + \beta_6 \mathrm{ArtInc_i} + \theta \mathrm{Ctr_i}$$

[식 2]

$$\ln\left(\frac{\pi_{2i}}{1-\pi_{2i}}\right) = \beta_0 + \beta_1 \mathrm{ArtStatus_i} + \beta_2 \mathrm{ConFreq_i} + \beta_3 \mathrm{ConPeriod_i} + \beta_4 \mathrm{Pay_i} + \beta_5 \mathrm{CareerBreak_i} + \beta_6 \mathrm{ArtInc_i} + \theta \mathrm{Ctr_i}$$

단, π_{1i} = Pr(Y=1=겸업),

π_{2i} = Pr(Y=1=비예술직 겸업)

ArtStatus : 종사상 지위

ConFreq : 계약 건수

ConPeriod : 계약 기간

Pay : 계약금

CareerBreak : 경력단절 횟수

ArtInc : 예술소득

Ctr : 예술활동 특성(활동 분야, 직업 유형, 활동 지역, 입문 연도, 전공),
가구 특성(가구 소득),
인구 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국민연금 직장가입 여부)

2. 분석대상 및 분석 자료

1) 분석대상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예술인[15]이란 예술활동을 취미가 아닌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

15) '누가 예술인인가?', 즉 예술인의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된 정의는 없다. 다만, 예술인의 정의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한 Jeffri와 Greenblatt(1989)의 정의에 따르면, 예술인은 시장적 정의(the marketplace definition), 교육과 협회적 정의(the education and affiliation definition), 자신과 동료에 의한 정의(the self and peer defini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적 정의는 예술인으로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수입의 일부를 조달하거나,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교육과 협회적 정의는 예술인 협회 또는 조합에 속해 있거나 순수 예술 분야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동료에 의한 정의는 동료에 의해 예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스스로 예술인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창작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쓰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예술에 대한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한다. 이들 개념 정의를 토대로 예술인복지법이 포괄하는 예술인 정의의 차원을 살펴보면, 관련 법은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삼으면서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술인을 정의하고 있어 시장적 정의와 자신과 동료에 의한 정의를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분석대상을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삼는 예술인으로 선정하였으며, 활동 분야에 있어서도 창작과 실연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지원 인력까지 포함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4년과 2017년으로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의 설정은 접근 가능한 분석 자료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분석 자료에서 상술한다.

2)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예술인의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예술인실태조사의 2015년, 2018년 조사 자료[16]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모집단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신청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수혜 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 회원에 한정된다. 물론, 예술인의 정의에 따라서 분석 자료의 모집단이 곧 '예술인 집단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삼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조사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조사이며 정부에서 조사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3002호)라는 점에서 분석 자료로 가치가 있다. 또, 본 연구의 관심인 겸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부업의 종사상 지위, 소득, 노동시간 등)이 조사 문항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전처리 과정에서 주요 변수에 결측치가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표본을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6,756명[17]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

16) 2015년, 2018년 예술인실태조사는 소득 조사 항목의 기준을 전년도로 설정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와 일치한다.
17) 2014년 관측치는 3,659명, 2017년 관측치는 3,097명이다.

3.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겸업 행태

겸업 행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겸업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겸업의 특성이 예술 활동과 관련이 있는 일인지'에 관한 것이다.

(1) 겸업 여부

먼저, 겸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예술인의 소득원천별로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즉, 예술인이 예술직업 이외에도 예술 관련 직업과 비예술직업에서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 경우 겸업을 한다고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술직업의 소득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직업 이외의 직업에서 소득 창출하는 경우 겸업 예술인이라고 보았다. 이는 예술을 업으로 삼더라도 소득이 아예 없거나 예술활동과 소득이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술노동시장의 특성상 미실현된 소득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분석 자료의 모집단이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삼는 예술인에 한정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2) 겸업 유형

다음으로, 겸업의 특성이 예술 활동과 관련이 있는 일인지 아닌지, 즉 겸업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창출된 소득원천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겸업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은 예술인의 본업인 예술직업과의 관련성 정도를 고려해 예술 관련 부업일 경우 예술직업과의 동종 겸업, 비예술 관련 부업만할 경우 이종 겸업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여기서 예술직업은 창작, 실연, 기술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을 의미하며, 예술 관련 직업은 예술 교육과 관련된 일, 비예술직업은 앞의 두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예술계 밖의 일자리를 의미한다.

2) 독립변수: 불안정 노동

(1) 고용 불안정

① 종사상 지위

불안정 노동 속성의 중심에는 불안정 고용이 있다. 불안정 고용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의 예술직업에서의 종사상 지위를 활용하였다.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하 사용주),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트타임, 시간제, 파견, 용역), 1인 자영업자[18], 앞선 지위로 규정되지 않는 비정형적 지위를 기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표 4] 참고).

[표 5] 종사상 지위 측정방식

종사상 지위 구분	측정
정규직	정규직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사용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
	일용직
	파트타임/시간제
	파견/용역
1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사업체)
기타	기타

18) 개념적으로 프리랜서는 1인 자영업자를 지칭하지만, 예술인들 사이에서 프리랜서의 의미가 곧 1인 자영업자를 지칭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수행된 「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종사상 지위를 묻는 문항(문 10-1)과 프리랜서 여부를 묻는 문항(문 11)을 구분해 묻고 있는데, 본인이 프리랜서라고 응답한 예술인 가운데 42%의 종사상 지위는 비정규직이었으며, 실제 1인 자영업자인 경우는 32%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예술인 집단에서 프리랜서의 의미가 1인 자영업자와 등치(等値)되지 않고 있는 인식 불일치 측면과 다른 하나로는 특정 사업체에서 고용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도급계약을 하는 프리랜서로도 활동하는 이중 근로 방식을 가질 가능성이다. 예술인 사이에서 프리랜서의 개념이 이론적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향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주제일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고용 불안정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종사상 지위를 활용하고 있고, 실제 종사상 지위를 1인 자영업자라고 답한 이들 중 81.5%가 프리랜서라고 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라고 보는 측정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② 계약 특성

계약의 특성은 계약 건수, 계약기간, 계약금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예술노동시장의 경우 많은 경우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을 통해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약의 특성은 불안정 예술노동의 속성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LO 역시 고용계약 차원에서 계약 내용,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의 제한이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계약 건수는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을 포함해 지난 한 해 체결한 총 계약 건수로 측정하였으며, 계약기간과 계약금은 가장 최근 체결한 계약(최대 3개)의 평균을 구해 각각을 측정하였다[19]. 이때 계약금의 경우 분포의 왜도가 커 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③ 경력단절

예술활동에 있어서 경력단절 경험은 경력단절의 횟수로 측정하였다. 경력단절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예술인들이 경험하는 경력단절은 예술직업의 불안정 속성과 관련이 깊으므로 불안정 고용의 한 차원으로 고려하였다. 특히나 경력단절은 예술인이 경험하게 되는 '일-보상된 실업 또는 비(非)보상된 실업-직업탐색-네트워킹 활동'의 순환 과정에서 비보상된 실업 기간의 연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⑵ 소득 불안정

소득의 불안정성은 연간 예술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이하[20], 즉 상

---

19) 2018년에 수행된 「예술인실태조사」의 조사표에서는 최근에 이루어진 계약 가운데 계약기간이 긴 순서대로 최대 3개 계약의 계약기간과 금액을 제한적으로 묻고 있다. 이는 응답자의 응답 피로도를 고려한 조사표 구성으로 판단되지만, 분석적 차원에서 특정 예술인이 체결하는 계약 전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계약 기간과 계약금액이 예술인 개인 차원에서 과대 또는 과소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다만, 동일 기간 내에 총 계약 건수에 대한 응답자 평균이 2.5건으로 3건를 상회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0)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득분배지표를 기준으로 2014년 균등화 중위소득(연간)은 시장소득의 경우 2,485만원(상대적 빈곤선: 1,242.5만원), 2017년에는 2,762만원(상대적 빈곤선:

대적 빈곤선 이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 불안정성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예술인의 경우 시급 또는 월급 형태의 지급 방식보다는 프로젝트 단위의 계약에 따라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총소득을 의미하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불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연 소득 기준의 소득 불안정성 측정은 예술인의 임금 지급 방식에 부합하다는 장점 이외에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3) 통제변수

(1) 예술 활동 특성

예술 활동 특성 차원에서 활동 분야와 직업 유형, 활동 지역, 작품활동 수준, 예술계 입문 연도, 예술전공 여부를 고려하였다. 활동 분야는 응답자의 주 활동 분야를 토대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 영상미디어, 기타로 구분하였다. 미술, 공예, 사진, 건축, 만화는 시각예술로, 음악, 국악, 무용, 연극은 공연으로, 대중음악, 방송연예, 영화는 영상미디어로, 문학은 문학, 기타는 기타로 측정하였다. 직업 유형은 창작, 실연, 기술, 기획, 기타로 구분하였다. 활동 지역은 주 활동 지역이 비수도권인지 아니면 수도권인지로 구분해 측정하였다. 작품활동 수준은 지난 1년간 주 활동 분야의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였다. 예술계 입문 연도의 경우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에 입문(데뷔)한 연도를 198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예술전공 여부는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 교육을 받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함인데,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누어 예술계인지 비예술계인지 구분하였다.

1,381만원)이다.

⑵ 가구 소득

불안정한 예술노동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는 부모 혹은 배우자 등 다른 가구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조달은 자구책인 겸업의 필요성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고려하였고, 예술인 개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 구성원들의 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로그 변환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예술인 개인소득을 제외한 이유에는 역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 예술인 소득이 가구 소득에 포함될 경우 가구 소득 수준이 예술인 개인의 겸업 행태에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예술인이 겸업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창출하는 소득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인 개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 구성원들의 가구 소득만을 고려하였다.

⑶ 인구 사회학적 특성

그 밖에 예술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남성, 여성), 연령대(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혼인상태(기혼, 미혼, 기타(이혼, 사별, 별거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여부를 고려하였다.

이상의 주요 변수의 측정 방식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21)]

21) 측정 방식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6]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종속 변수		겸업 여부		0. 전업, 1.겸업
		겸업 유형		0. 동종 겸업, 1. 이종 겸업
독립 변수	불안정 고용	종사상 지위		1. 정규직, 2. 사용주, 3. 비정규직, 4. 1인 자영업자, 5. 기타
		계약 특성	계약건수	계약건수(구두, 서면 포함)
			계약기간	최근 체결한 계약의 평균 계약기간(최대 3개)
			계약금	최근 체결한 계약의 평균 계약금(최대 3개)
		경력단절		경력단절 횟수
	불안정 소득	소득		0. 상대적 빈곤선 초과, 1. 상대적 빈곤선 이하
통제 변수	예술 활동 특성	활동 분야		1. 문학, 2. 시각예술, 3. 공연, 4. 영상미디어, 5. 기타
		직업 유형		1. 창작, 2. 실연, 3. 기술, 4. 기획, 5. 기타
		활동 지역		0. 비수도권, 1. 수도권
		작품활동 수준		작품 발표, 참여 횟수
		입문 연도		1. 80년대 이전, 2. 80년대 3. 90년대 4. 2000년대, 5. 2010년대
		전공	고등학교	1. 예술계, 2. 비예술계
			대학교	1. 예술계, 2. 비예술계
	가구 특성	가구소득		ln(가구소득-개인소득)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1. 남성, 2. 여성
		연령대		1. 20대, 2. 30대, 3.40대, 4. 50대, 5. 60대
		혼인상태		1. 기혼, 2. 미혼, 3. 기타(이혼, 사별, 별거 등)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여부		0. 직장가입자 아님(지역가입자, 미가입자), 1. 직장가입자임

제4절 분석결과

1. 예술인의 겸업 행태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 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예술인의 겸업 양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노동시장의 겸업 비중에 대한 파악을 위해 일반 취업자의 겸업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겸업 비중(단위: %)

소득 기준년도	2014(n=3,659)	2017(n=3,097)
예술인†	58.22	66.64
일반 취업자††	1.64	1.58

† 예술인실태조사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4년 소득 기준으로 예술인 중 58.22%가 겸업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66.64%로 약 8.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4년과 2017년 각각 일반 취업자 중 1.64%, 1.58%만이 겸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들 사이에서 겸업 행태가 다른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인들의 겸업 양태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소득원천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4년 소득을 토대로 겸업 예술인의 소득원천 유형을 살펴보면, 예술소득과 비예술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57.24%, 업으로 삼는 예술 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고 비예술 분야에서 부업을 하면서 소득 창출하는 경우도 4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소득을 조사한 2015년 조사표

의 경우 예술인의 소득원천을 예술소득과 비예술 소득으로만 양분하고 있어 예술 관련 소득 항목을 추가한 2018년 조사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2017년 소득원천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겸업 예술인의 소득원천 유형(단위: %)

소득원천 수	소득원천 유형	2014(n=3,659)	2017(n=3,097)
1개	예술	0	0
	예술 관련	-	9.22
	비예술	42.76	10.02
2개	예술+예술 관련	-	41.52
	예술+비예술	57.24	15.73
	예술 관련+비예술	-	4.04
3개	예술+예술 관련+비예술	-	19.47
Total		100	100

먼저,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소득원천이 1개인 경우를 살펴보면, 예술소득 없이 예술 관련 소득만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22%, 비예술 소득만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득원천이 2개인 경우, 예술과 예술 관련 직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했다는 응답자가 전체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인 41.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술과 비예술직업을 통한 소득 창출의 경우 겸업 예술인 중 15.73%를 차지하였고, 예술소득 없이 예술 관련 직업과 비예술직업에서 소득을 창출했다는 예술인이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예술직업 이외에 예술 관련 직업, 비예술직업 모두에서 소득을 창출했다는 예술인도 겸업 예술인 중에서 19.4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 양태

이어서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 양태 중 고용 형태를 잘 나타내는 종사상 지위와 취약한 소득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예술직업에 대한 예술인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표 9]와 같다. 예술인의 불안정 고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발표된 일반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와 비교하였다.

[표 9] 예술인의 종사상 지위(예술직업)

(단위: %)	2014		2017	
	예술인	일반 취업자	예술인	일반 취업자
정규직	5.01	44.35	6.77	50.24
사용주	4.37	5.59	4.44	6.02
비정규직	8.20	29.87	38.31	24.35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80.20	15.21	30.06	15.24
기타	2.21	4.98	20.43	4.15
Total	100	100	100	100

예술인의 경우 예술직업에서 1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또는 기존의 종사상 지위로 구분할 수 없는 기타 지위에 속하는 경우가 두드러졌다.[22]. 2014년 기준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80.20%를 차지하였으며

22) 종사상 지위(고용 형태)를 묻는 문항의 선택지 구성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 2015년 경우 고용주, 정규직,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 일용직, 파트타임/시간제, 파견/용역, 프리랜서, 기타로 구성된 반면, 2018년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영업자(1인 사업체), 정규직, 기간제/계약직/임시직/촉탁직, 일용직, 파트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는 8.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술 직종에서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예술인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1%에 그쳤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즉 사용주 역시 4.3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종사상 지위인 기타의 경우 2.21%를 차지하였다. 2017년의 경우, 이전과 달리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38.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1인 자영업자가 30.06%, 기타가 20.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6.77%, 사용주는 4.44%에 그쳤다.

반면, 일반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예술인과 확연히 다르다. 일반 취업자의 경우, 정규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 비정규직, 1인 자영업자, 사용주, 기타 순이었다. 이러한 분포의 경향성은 2014년, 2017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통상 정규직보다 고용계약 기간이 제한적인 비정규직의 비중이 커지면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17년에는 예술인의 비정규직 종사자 비중(38.31%)이 일반 취업자(24.35%)보다 13.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목할 점은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제도적, 조직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비임금근로자, 특히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은 일반 취업자의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취업자들과 비교할 때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소득 불안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 10]은 종사상 지위별로 예술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정규직과 사용주보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고 이해되는 비정규직, 1인 자영업자, 기타 지위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는 1인 자영업자보다 비정규직, 기타 지위에 있는 예술인 집단의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았다. 또, 2014년에 비해 정규직 예술인 가운데서도 예술소득 수준이 상대적 빈곤선에 못 미치는 비중이 약 20%p 상승하였다.

더불어 주목할 점은 예술인 내에서 종사상 지위별 소득 불안정성의 차이도

임/시간제,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종사상 지위의 비중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연도별 종사상 지위 분포의 경향성을 살펴본다.

크지만, 예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율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였다. 2014년 소득 기준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은 18.2%인데 반해, 예술인 72.55%의 예술소득 수준이 상대적 빈곤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역시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표 10] 종사상 지위별 상대적 빈곤율(예술소득 기준)

	2014	2017
정규직	24.85	44.10
사용주	25.58	25.98
비정규직	53.69	74.27
1인 자영업자	79.54	59.73
기타	89.97	77.15
전체†	72.55%(18.2%)	66.30%(17.3%)

† 괄호 안은 우리나라 상대적 빈곤율(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3.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겸업 행태

1) 불안정 노동이 겸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

[표 11]은 불안정 노동과 겸업 여부 관계에 대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불안정 노동을 고용과 소득 차원으로 구분해 예술인 겸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때, 계약 특성으로 계약금액과 계약 기간의 고려 여부에 따라 모형 (1-1)과 (1-2)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23].

고용 불안정의 한 측면으로 종사상 지위별 겸업의 가능성이 차별화되는지 살펴보면, 1인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예술인에 비해 정규직 지위 예술인은 겸업할 가능성이 작고, 비정규직, 기타 지위 예술인은 겸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모형 (1-1)과 (1-2)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1인 자영업 예술인을 불안정 고용의 기준집단으로 보고 이들이 다른 종사상 지위보다 겸업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겸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1인 자영업 예술인은 개인 단독으로 창작활동을 하거나 프로젝트팀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1인 자영업 예술인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를 일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야 하고, 다른 예술인들을 엮어 연습도 진행해야 하고, 식비, 공간과 시설 임대, 고용보험료, 사례비 지급 등을 혼자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인 자영업자로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계비 마련뿐 아니라 경비 마련을 위해서라도 겸업의 필요성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정규직과 기타 지위에 있는 예술인이 1인 자영업자에 비해 겸업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이들 집단의 상대적 빈곤율이 1인 자영업 예술인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비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1인 자영업자가 겪는 개인적 차원의 생계비 부담과 직업적 차원의 경비 부담이라는 이

23) 모형 (1-1)은 계약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으로 해당 변수들을 조사하지 않은 2015년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모형 (1-2)는 두 변수를 모두 추가로 고려하여 해당 변수를 조사한 2018년 자료만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중 부담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비정규직과 기타 지위에 있는 예술인 역시 불안정한 소득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역시 겸업의 동기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1인 자영업자만이 불안정 고용 지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비정형 종사상 지위 역시 불안정 고용 형태 중 하나로 언급된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주업의 불안정 모형은 여전히 유효한 설명력을 갖는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인 자영업자와 사용주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가 많은 산업 구조상 사용주 역시 1인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실적인 추정결과라 볼 수 있다.

고용 형태에 더해 예술노동시장에서 만연한 도급(용역)계약의 불안정성이 예술인 겸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건수의 경우, 계약 건수가 많은 예술인일수록 겸업할 가능성도 커졌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예술계에서 일거리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안정 노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써 겸업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적 예측과 반대로 추정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두 가지 잠정적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을 완화할 정도의 계약 기간과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 건수의 증가는 곧 불안정한 초단기 저임금 계약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겸업할 확률을 높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24]. 이러한 설명은 주업 불안정 모형을 토대로 가능한 이론적 예측이다. 즉, 프로젝트 참여가 누적되더라도 여전히 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겸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간·금액과 관계없이 계약 건수는 예술계에서 쌓은 경험 혹은 명성의 대리변수가 될 수 있고 일종의 지렛대로 작용해 추가적인 소득

24) 2018년 자료를 토대로 계약 건수와 계약 기간, 계약금액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계약 건수와 계약 기간의 경우 −0.218, 계약 건수와 계약금액의 경우 -0.127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창출의 계기를 마련하기 수월해질 개연성이 높다. 이는 부업이 주업과 관련성이 높다면 인적자본의 파급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적 논의와도 관련이 깊다.

두 가지 경우 중 더 적절한 설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계약 기간과 금액을 통제하여 추정한 결과가 모형 (1-2)이다. 그러나 추가적 고려와 관계없이 계약 건수는 여전히 겸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 건수'가 겸업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계약 건수가 경력 형성을 위한 발판이라는 해석은 계약 건수가 이종 겸업보다는 동종 겸업의 가능성을 키우는 역할을 보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가설 2에 대한 모형 추정 결과 부분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한편, 모형 (1-2)에서 보다시피 계약 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계약금액이 많을수록 겸업 확률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금 증가가 예술인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해 겸업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역시 이론적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실업'의 반복적인 순환 가운데 '실업'으로 인해 경력 형성이 더이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빈번할수록 겸업의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모형 (1-1)과 (1-2)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불안정 노동의 또 다른 축인 소득 불안정 역시 심화할수록 겸업할 확률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술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인 예술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예술인보다 겸업할 확률이 증가하였다.[25]

종합하면, 계약 건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불안정 노동과 예술인의 겸

25) 2018년「예술인실태조사」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부업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 중 49.8%가 낮은 예술소득이라고 응답했다. 불안정한 소득이 27.0%, 불안정 고용이 12.1%, 기타가 9.2%, 열악한 작업환경이 2.0%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기타 분야를 제외하고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유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이 겸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분석 결과를 지지해주는 응답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겸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유연한 고용 형태의 예술직업을 찾게 될 가능성이 예술인 사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업 확률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술 활동 특성 중에서도 활동 분야, 직업 유형, 입문 연도, 활동 수준에 따라 겸업의 가능성이 차별화되었다. 활동 분야의 경우, 시각예술 분야[26]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비교할 때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겸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술 분야에서 어떤 직업을 갖는지에 따라 겸업 가능성이 달라졌는데, 창작자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실연자와 기획자보다 겸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입문 연도의 경우, 2010년대 입문한 신진 예술인보다 1980년대 입문한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이 작았다. 예술 활동 수준은 활발할수록 오히려 겸업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가구 특성으로 고려한 가구소득은 겸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논의에서 가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겸업과 함께 예술인이 노동시장의 위험에 대처하는 대비책 중 하나로 언급된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가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예술인 개인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을 유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설명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는 혼인상태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여부에 따라 겸업의 가능성이 달라졌다. 기혼자보다 미혼인 예술인들이 겸업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미혼자 보다 기혼자의 부양 의무가 추가적인 소득 창출의 필요성을 유발할 가

26) 본 연구에서 건축 분야를 시각예술 분야에 포함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건축 분야는 종사상 지위와 소득 측면에서 다른 분야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비정규직(37.4%)과 1인 자영업자(30.7%)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과 달리, 건축 분야는 정규직(40.7%)과 사용주(46.0%) 지위의 예술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 2017년 예술소득은 연평균 6,455만원으로 응답자 전체 평균 연봉(예술소득)인 1,490만원의 약 4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정 노동 차원에서 건축 분야의 특수성은 고려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분석과정에서 이들 집단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비교했으나 추정 결과에 큰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체 표본 중 건축 분야 예술인의 비중이 2%에 그쳐 분석결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능성이 있고, 이것이 겸업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겸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7].

27) 국민연금 직장가입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야 함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측정한 국민연금 직장가입 여부 변수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의 출처가 예술직업인지 아니면 그 외의 직업(예술 관련 직업 또는 비예술직업)인지 특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명확히 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국민연금 직장 가입이 직업 수준의 안정성을 의미하기보다 개인 수준의 안정성, 즉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보다는 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간접적이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에 있어서 예술직업과 그 외의 직업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전업 예술인과 겸업 예술인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중을 살펴본 결과, 겸업 예술인이 전업 예술인 보다 그 비중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서 예술인들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한다. 결국, 국민연금 가입 여부 자체가 겸업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겸업할 경우 국민연금 직장 가입의 가능성이 커질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자료가 횡단면적 자료인 특성상 확인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해당 변수 해석에서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1] 불안정 노동이 겸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odds ratio)

DV : 겸업 여부(base: 전업)				(1-1)	(1-2)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종사상 지위 (ref. 1인 자영업자)		정규직	**0.277*** **	**0.321*** **
				(0.08)	(0.10)
			사용주	0.906	1.124
				(0.28)	(0.37)
			비정규직	**2.181*** **	**2.330*** **
				(0.38)	(0.42)
			기타	**1.538** **	**1.555** **
				(0.33)	(0.34)
	계약 특성	계약 건수		**1.038*** **	**1.034*** **
				(0.01)	(0.01)
		계약 기간			1.028
					(0.02)
		계약금			**0.828*** **
					(0.06)
	경력단절 횟수			**1.141** **	**1.153** **
				(0.06)	(0.07)
소득 불안정 (ref. 상대적 빈곤선 초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10.748*** **	**10.409*** **
				(1.80)	(1.82)
예술 활동 특성					
활동 분야 (ref. 시각예술)			문학	1.085	0.907
				(0.29)	(0.29)
			공연	**1.760** **	**1.662***
				(0.45)	(0.45)
			영상미디어	1.244	1.269
				(0.30)	(0.32)
			기타	0.484	0.483
				(0.22)	(0.23)
직업 유형 (ref. 창작)			실연	**0.506*** **	**0.472*** **
				(0.11)	(0.11)
			기술	0.888	0.965
				(0.62)	(0.69)
			기획	**0.511** **	**0.492** **
				(0.17)	(0.17)
			기타	0.955	0.939
				(0.39)	(0.39)
활동 지역 (ref. 비수도권)			수도권	0.826	0.845
				(0.12)	(0.13)
입문 연도 (ref. 2010년대)			80년대 이전	1.144	1.105
				(0.54)	(0.54)
			80년대	**0.583***	**0.563***

DV : 겸업 여부(base: 전업)			(1-1)	(1-2)
			(0.19)	(0.19)
		90년대	0.878	0.862
			(0.22)	(0.22)
		2000년대	0.83	0.834
			(0.15)	(0.16)
예술 활동 수준			**1.013****	**1.013****
			(0.01)	(0.01)
전공 (ref. 예술계열)	고등학교	비예술계열	0.879	0.876
			(0.15)	(0.15)
	대학교	비예술계열	1.195	1.184
			(0.21)	(0.21)
가구 특성				
가구소득			**0.843*****	**0.841*****
			(0.02)	(0.02)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ref. 남성)		여성	0.972	0.979
			(0.13)	(0.14)
연령 (ref. 20대)		30대	1.026	1.031
			(0.19)	(0.20)
		40대	1.518	1.537
			(0.44)	(0.46)
		50대	1.011	1.058
			(0.30)	(0.33)
		60대	0.885	0.951
			(0.32)	(0.36)
혼인상태 (ref. 기혼)		미혼	**0.737***	**0.714***
			(0.13)	(0.13)
		기타	0.729	0.675
			(0.25)	(0.23)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여부 (ref. 직장 가입자 아님)		직장 가입자	**6.714*****	**6.860*****
			(1.55)	(1.67)
조사년도(ref. 2015)		2018	1.128	
			(0.14)	
Constant			**0.350*****	1.055
			(0.13)	(0.57)
N			6,756	3,097
Pseudo R^2			0.266	0.273
Prob 〉 chi2			0	0
ll(model)			-50,300	-48,029

1)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한편, 예술노동시장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술 분야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 모형 (1-2)를 분야별로 구분해 추가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12]와 같다. 우선,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겸업 가능성의 차이는 분야에 따라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전체 모형의 추정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학과 영상미디어 분야의 경우 1인 자영업자 예술인보다 겸업 가능성이 큰 비정규직과의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연 분야의 경우, 정규직 예술인이 1인 자영업 예술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겸업할 가능성이 작았다. 한편, 눈여겨볼 점 중 하나로 계약 특성이 겸업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분야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문학과 시각예술의 경우 계약 건수, 계약금액과 같은 계약 특성이 겸업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연과 영상미디어 분야의 경우 계약 건수와 겸업의 가능성이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연의 경우 계약금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력단절 경험의 빈도 역시 공연과 영상미디어 분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연과 영상미디어 분야가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에 비해 계약 특성과 경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고용 불안정의 의미가 더 클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공연과 영상미디어 분야보다 문학과 시각예술은 예술인 개인의 단독 작업이 일반적이고, 예술계 내의 평판이 계약 특성과 경력단절 횟수보다는 작품 자체로 평가받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역시 분야별 차이의 원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물론, 공연과 영상미디어 역시 참여 작품에 대한 평가가 예술인 개인에게도 미치지만, 팀(team) 단위의 작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문학과 시각예술처럼 물리적인 형태로 작품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과 경력단절 자체로 불안정한 고용을 내포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가능한 설명이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불안정 노동과 겸업 가능성 사이의 관계가 분야에 따라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각 변수의 계수가 분야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안정은 분야를 막론하고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예술 분야별 불안정 노동이 겸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odds ratio)

DV : 겸업 여부(base: 전업)			전체 (1-2)	문학	시각예술	공연	영상 미디어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종사상 지위 (ref. 1인 자영업자)	정규직	**0.321*** **	0.318	**0.241** **	**0.195*** **	0.973
			(0.10)	(0.40)	(0.15)	(0.09)	(0.78)
		사용주	1.124	1	1.026	0.384*	2.19
			(0.37)	(.)	(0.53)	(0.22)	(1.75)
		비정규직	**2.330*** **	**8.883*** **	**2.572*** **	1.537	**2.082** **
			(0.42)	(4.73)	(0.88)	(0.49)	(0.63)
		기타	**1.555** **	1.169	**3.155*** **	1.009	1.036
			(0.34)	(0.64)	(1.19)	(0.38)	(0.39)
	계약 특성 계약 건수		**1.034*** **	0.919	1.004	**1.049** **	**1.026***
			(0.01)	(0.15)	(0.03)	(0.02)	(0.02)
	계약 특성 계약 기간		1.028	0.996	1.176	1.031	1.019
			(0.02)	(0.05)	(0.15)	(0.03)	(0.06)
	계약 특성 계약 금		**0.828*** **	0.608	0.778	**0.789** **	0.871
			(0.06)	(0.26)	(0.13)	(0.09)	(0.11)
	경력단절 횟수		**1.153** **	0.919	1.107	**1.244***	**1.240** **
			(0.07)	(0.08)	(0.20)	(0.15)	(0.11)
소득 불안정 (ref. 상대적 빈곤선 초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10.409*** **	**10.170*** **	**9.346*** **	**12.394*** **	**18.293*** **
			(1.82)	(6.51)	(3.16)	(3.47)	(5.34)
Constant			1.055	12.927	0.766	3.398	0.863
			(0.57)	(41.17)	(0.78)	(3.00)	(0.82)
N			3,097	267	862	1,126	795
Pseudo R^2			0.723	0.359	0.339	0.339	0.325
Prob 〉 chi2			0	0	0	0	0
ll(model)			-48,029	-2,192	-15,372	-13,229	-11,876

1)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2) 예술 활동 특성, 가구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통제함

2) 불안정 노동이 겸업 유형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겸업 예술인 중에서도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예술계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겸업을 이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속변수는 동종 겸업일 경우(Y=0) 혹은 이종 겸업일 경우(Y=1)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먼저, 모형 (2-1)의 추정 결과를 토대로 고용 불안정 차원에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겸업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13]), 겸업 예술인 중에서 1인 자영업자 예술인보다 사용주, 비정규직, 기타 지위인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과 기타 지위의 경우 앞서 모형 (1-2)에서 1인 자영업자보다 겸업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1인 자영업자로 종사하는 이들보다 불안정 수준을 더 크게 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정책에서 주요 정책 대상은 임금근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로 인해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는 시장위험을 그대로 직면해야 하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종업원이 있는 사용주의 경우, 본인의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종업원의 임금과 고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같은 비임금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와 비교했을 때 고용과 소득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예술노동시장에서 사용주 지위에 있다는 의미는 결국 예술단체 또는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경우 영리조직보다는 비영리 조직이 대부분이고 그 안에서도 영세 조직의 비중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용주 역시 불안정 노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문제는 사용주가 예술계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있다면, 예술계 내에서 추가적인 일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분석 자료를 추가로 살펴본 결과, 동종 겸업의 사용주는 예술 분야에서 계약체결 건수가 평균 4.4건인 반면, 이종 겸업하는 사용주는 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술계 밖에서 개인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거나, 예술계 밖으로 사업을 확장해 비예술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예술계에서 일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한편, 비정규직과 기타 지위 예술인 역시 예술계 내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예술계 내에서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비예술계에서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만 겸업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입문연도가 비교적 최근일수록 1인 자영업보다는 비정규직인 비중이 컸는데[28], 이는 직업적 숙련도의 차이가 불안정 노동 상황에서 겸업 유형의 차별화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술인의 불안정 고용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인 계약 특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이종 겸업의 확률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설 (2-2a)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계약금액과 기간에 대한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가설 (2-2a)를 지지하는 결과는 앞서 모형 (1-1)과 (1-2)의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려준다. 결국, 계약 건수가 예술인에게 다른 경력 형성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설명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겸업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체의 특성(계약금과 기간)과 무관하게 계약 건수 자체가 겸업 유형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예술계 내에서 일할 기회가 많을수록 겸업을 하더라도 예술과 관련된 경력을 계속해서 형성해 나갈 확률이 커진다는 것, 따라서 예술계 내에서 경력이 부족한 예술인은 이종 겸업을 하는 시간만큼 예술계 내에서 추가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 자체가 불안정하든 안정적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계약 기간 역시 겸업 유형을 차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계약 기간이 길수록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이 떨어졌다. 이는 가설 (2-2b)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계약금액과 경력단절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c)와 (2-3)은 지지하지 못하였다.

불안정 노동의 또 다른 차원인 소득 불안정 역시 예술인의 겸업 유형 결정

28) 이와 관련된 분석 결과는 [부록 표 2]와 [부록 표 3]에 제시하였다.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4)는 지지하였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예술 소득 수준이 상대적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을 상회하는 겸업 예술인보다 이종 겸업할 가능성이 컸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겸업 예술인 사이에도 소득 수준이 안정적인 집단이 비예술계에 비해 예술계에서 추가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Throsby가 언급했듯이 예술인이 근로에 대한 선호가 다른 분야보다 강하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주업이 부업에 미치는 인적 자본의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기존 논의의 경우 부업이 주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부업을 통해 쌓은 인적 자본이 주업에 상승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부업의 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주업에서 쌓은 인적 자본이 부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나의 조직 범주 안에서 경력을 형성하거나 인적 자본의 활용이 제한되지 않는 예술노동시장의 특성상 예술인처럼 정체성을 기준으로 경력을 형성하는 경우 Campion이 언급한 인적 자본의 파급효과는 더욱 큰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예술소득이 높다는 것은 예술노동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부업을 하더라도 예술직업과 관련된 인적 자본이 자원이 되어 상승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Faulkner와 Anderson(1987)이 언급한 누적적 이익을 얻기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제변수의 추정 결과는 모형 변화에도 대부분 일관된 경향성을 보였다. 우선, 예술 활동 특성 차원에서는 활동 분야, 직업 유형, 입문 연도, 예술 활동 수준, 그리고 대학 전공계열이 겸업 유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 활동 분야의 경우,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비교할 때 문학, 영상미디어, 기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이종 겸업의 가능성이 컸다. 한편, 시각예술 분야와 공연 분야의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모형 (2-1)과 (2-2)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직업 유형 차원에서 창작자로 활동하는 예술인에 비해 기술자, 기타 직업을 갖는 예술인의 경우 이종 겸업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술인이 언제 예술계에 입문

했는지 역시 이종 겸업할 확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0년대에 입문한 신진 예술인은 2010년 이전에 예술계에 입문한 예술인보다 예술계 밖에서 겸업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형 (2-2)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초기 경력 형성이 어려운 예술인의 경우, 예술계 내에서 부업을 찾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한편, 예술 활동 수준 역시 겸업 유형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예술인일수록 예술계 내부에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컸다. 예술전공 여부에 따라서도 겸업 유형은 갈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에서 예술계열 전공자 출신인 예술인보다 비예술계 전공 출신 예술인의 이종 겸업 확률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성은 두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예술계 입문 시기와 예술 활동 수준은 이 역시 Faulkner와 Anderson이 언급한 바처럼 경력이 또다른 경력을 가져오는 예술노동시장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예술전공 여부가 겸업 유형을 가르는 것 역시 블레어가 언급한 경력 형성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회자본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29]. 한편, 가구소득은 겸업 여부와 달리 겸업 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차원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겸업 유형 차이가 확인되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이종 겸업할 확률은 낮고, 20대보다 60대가 이종 겸업할 확률은 높았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모형 (2-2)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29) 관련해서 최근 SNAAP(Strategic National Arts Alunmi Project)의 보고서인 'Careers in the Arts: Who Stay and Who leave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 수준이 중요하기보다 가족 중 예술가가 있거나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학교 재학시절에 경력 계발을 하거나 경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예술직업을 유지하는데 미치는 영향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창의노동 또는 문화산업에서 예술인이 일할 기회를 획득하는데 경력이 중요하고 그 경력을 형성하는 것은 네트워크 또는 사회자본임을 말해 준다.

[표 13] 불안정 노동이 겸업 유형에 미치는 영향(odds ratio)

DV : 겸업 유형(base: 동종 겸업)				(2-1)	(2-2)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종사상 지위 (ref. 1인 자영업자)		정규직	1.077 (0.56)	1.033 (0.52)
			사용주	**3.588** (1.98)	**3.331** (1.80)
			비정규직	**1.671** (0.44)	**1.623*** (0.42)
			기타	**2.426***** (0.76)	**2.341***** (0.74)
	계약 특성	계약 건수		**0.948** (0.02)	**0.919** (0.03)
		계약 기간			**0.819***** (0.04)
		계약금			1.028 (0.11)
	경력단절 횟수			1.034 (0.05)	1.041 (0.05)
소득 불안정 (ref. 상대적 빈곤선 초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4.701***** (1.46)	**4.229***** (1.31)
예술 활동 특성					
활동 분야 (ref. 시각예술)			문학	**2.344***** (0.72)	**7.293***** (2.99)
			공연	1.371 (0.48)	1.512 (0.54)
			영상미디어	**2.229**** (0.75)	**2.362**** (0.80)
			기타	**4.933*** (4.15)	**4.974*** (4.37)
직업 (ref. 창작)			실연	1.638 (0.50)	1.63 (0.51)
			기술	**0.279**** (0.17)	**0.274**** (0.17)
			기획	0.572 (0.25)	0.645 (0.26)
			기타	**0.260***** (0.11)	**0.305***** (0.13)
활동 지역 (ref. 비수도권)			수도권	0.809 (0.17)	0.81 (0.17)
입문 연도 (ref. 2010년대)			80년대 이전	**0.184**** (0.16)	**0.183**** (0.16)
			80년대	**0.190*****	**0.191*****

DV : 겸업 유형(base: 동종 겸업)			(2-1)	(2-2)
		90년대	(0.08) **0.219***** (0.08)	(0.08) **0.234***** (0.09)
		2000년대	**0.364***** (0.10)	**0.374***** (0.10)
예술 활동 수준			**0.937***** (0.01)	**0.937***** (0.01)
전공 (ref. 예술 계열)	고등학교	비예술계열	1.284 (0.40)	1.29 (0.42)
	대학교	비예술계열	**2.871***** (0.58)	**2.884***** (0.59)
가구 특성				
가구소득			0.966 (0.03)	0.966 (0.03)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ref. 남성)		여성	**0.672*** (0.14)	**0.694*** (0.15)
연령 (ref. 20대)		30대	0.824 (0.24)	0.799 (0.24)
		40대	1.281 (0.56)	1.197 (0.52)
		50대	1.901 (1.02)	1.631 (0.86)
		60대	**3.074*** (1.80)	**2.995*** (1.73)
혼인상태 (ref. 기혼)		미혼	0.725 (0.20)	0.704 (0.20)
		기타	0.58 (0.26)	0.661 (0.30)
국민연금 가입여부 (ref. 미가입)		가입함	1.287 (0.27)	1.347 (0.29)
Constant			**0.123***** (0.08)	0.234 (0.22)
N			1,575	1,575
Pseudo R^2			0.269	0.282
Prob > chi2			0	0
ll(model)			-24,427	-23,973

1)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한편, 앞서 불안정 노동과 겸업 여부의 관계를 예술 분야별로 구분해 추가

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겸업 유형에도 그 특성이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14]와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살펴본 불안정한 예술노동과 겸업 여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분야에 따라 불안정 노동과 겸업 유형의 관계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없다. 각 변수의 계수가 분야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예술 분야별로 이종 겸업 가능성에 있어서 1인 자영업자 예술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종사상 지위는 조금씩 달랐다. 문학과 공연 분야의 경우 1인 자영업자 예술인보다 비정규직과 기타 종사상 지위에 있는 예술인이,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사용주 지위에 있는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이 컸다. 한편, 영상미디어 분야의 경우 종사상 지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특성 중 계약 건수와 계약 기간이 겸업 유형에 미치는 영향 역시 분야별로 통계적 유의미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문학 분야를 제외한 시각예술, 공연, 영상미디어에서 계약 건수는 이종 겸업의 가능성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계약 기간의 경우 시각예술과 공연 분야에서만 이종 겸업 가능성과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횟수의 경우 전체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학 분야만 별도로 분석한 모형에서는 경력단절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종 겸업의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학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경력단절이 증가하더라도 이종 겸업보다는 동종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지, 이때 동종 겸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30].

마지막으로 소득 불안정 변수는 영상미디어를 제외한 나머지 예술 분야에서

30) 본 연구자료를 통해 문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 사이에서 동종 겸업을 하는 예술인과 이종 겸업을 하는 예술인 사이의 평균 경력단절 횟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각각 0.65회(CI: 0.24, 1.06), 0.93회(CI: 0.41, 1.45)로 나타났으나 양자는 오차범위 안에 있어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종 겸업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예술 분야별 불안정 노동이 겸업 유형에 미치는 영향(odds ratio)

DV : 겸업 유형(base: 동종겸업)			전체 (2-2)	문학	시각예술	공연	영상 미디어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종사상 지위 (ref. 1인 자영업자)	정규직	1.033	1	2.115	3.188	1
			(0.52)	(.)	(1.98)	(3.26)	(.)
		사용주	**3.331****	1	**5.918****	4.612	1
			(1.80)	(.)	(4.32)	(6.97)	(.)
		비정규직	**1.623***	**3.301***	1.785	**4.872****	0.88
			(0.42)	(2.31)	(0.87)	(3.13)	(0.35)
		기타	**2.341*****	**7.717*****	1.572	**15.170*****	0.911
			(0.74)	(5.64)	(0.75)	(11.06)	(0.47)
	계약 특성 계약 건수		**0.919****	0.932	**0.784*****	**0.719*****	**0.926****
			(0.03)	(0.18)	(0.07)	(0.07)	(0.03)
	계약 특성 계약 기간		**0.819*****	0.946	**0.447*****	**0.702*****	0.97
			(0.04)	(0.05)	(0.11)	(0.09)	(0.08)
	계약 특성 계약 금		1.028	1.695	1.475	1.011	0.836
			(0.11)	(0.66)	(0.37)	(0.22)	(0.14)
	경력단절 횟수		1.041	**0.640****	1.083	0.974	0.99
			(0.05)	(0.13)	(0.08)	(0.05)	(0.10)
소득 불안정 (ref. 상대적 빈곤선 초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4.229*****	**80.757*****	**3.250****	**14.840*****	2.123
			(1.31)	(77.27)	(1.63)	(13.13)	(1.08)
Constant			0.234	0.401	2.166	0.063	3.545
			(0.22)	(1.15)	(3.75)	(0.12)	(5.41)
N			1,575	152	483	559	334
Pseudo R^2			0.282	0.409	0.375	0.479	0.228
Prob > chi2			0	0	0	0	0
ll(model)			-23,973	-1,294	-6,995	-5,116	-6,343

1)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2) 예술 활동 특성, 가구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통제함

제5절 소결

본 연구는 불안정한 예술노동이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이때 겸업 행태를 겸업 여부뿐만 아니라 겸업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예술을 업(業)으로 삼는 예술인을 조사대상으로 한 「예술인실태조사」를 활용함으로써 예술인 개인 행태에 대해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불안정한 예술노동으로 인해 예술인은 겸업을 하게 되는가?'와 '겸업을 한다면, 불안정한 예술노동이 예술계 내보다 밖에서 일할 가능성을 키우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관한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불안정한 예술노동이 겸업의 가능성을 키우는가?'라는 연구 문제에 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안정 노동의 특성을 고용과 소득 차원으로 구분할 때, 고용의 불안정성은 겸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예술인 대부분의 종사상 지위인 1인 자영업자는 정규직 예술인보다 겸업할 가능성이 컸으며, 기존 논의에서 불안정 고용 상태라고 여겨지는 비정규직 예술인은 1인 자영업자보다 겸업할 가능성이 컸다. 또, 프로젝트별 계약이 만연한 예술노동시장의 맥락적 요소를 고려해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대변할 수 있는 계약 특성이 겸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오히려 계약 건수가 많음에도 겸업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약금이 클수록 겸업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금의 수준이 소득 불안정에 기여해 겸업 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지속적인 일할 기회, 즉 고용의 기회를 대변하는 경력 단절 경험의 횟수도 겸업의 가능성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차원의 불안정성 역시 심화할수록 겸업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예술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일 경우 그렇지 않은 예술인에 비해 겸업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예술노동으로 인해 예술인이 예술직업 이외의 소득

활동을 할 개연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예술인의 예술 활동 특성을 고려한 뒤에도 불안정 노동과 겸업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나 예술노동 자체가 예술인의 생계 문제를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 차원에서 부업을 하거나 지속적인 창작 활동 이력이 요건인 정부 지원사업의 후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부업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정필주, 2016; 이동연, 2018)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불안정한 예술노동이 예술인의 겸업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 불안정성을 종사상 지위로 측정했을 때 1인 자영업 예술인보다 사용주, 비정규직, 그리고 비정형 노동 형태로 해석할 수 있는 기타 지위의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이 컸다. 사용주를 제외한 비정규직, 기타 지위의 예술인들은 1인 자영업자보다 겸업할 가능성이 컸던 집단이다. 이는 그동안 예술인의 불안정 고용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1인 자영업자보다 이들 고용 형태에 있는 예술인들이 더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는 방식의 기회비용이 매우 클 가능성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종 겸업으로 불안정한 소득을 보전하는 행위의 기회비용은 예술계에서 경력을 쌓아 상향 이동할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또 주목할 점은 이들의 특성이 다른 고용 형태에 비해 연령이 낮거나 비교적 입문 시점이 최근이라는 점이다. 즉, 청년 또는 신진 예술인의 경우 겸업을 하더라도 기회비용인 큰 이종 겸업의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계약 특성 중 계약 건수는 계약금액과 기간에 관계없이 많을수록 이종 겸업의 확률을 떨어뜨렸다. 계약금액은 겸업 유형을 차별화하지 못하지만, 계약 기간은 길수록 이종 겸업의 확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차원에서 예술소득의 불안정성 심화는 예술인이 이종 겸업을 할 확률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안정 노동이 겸업 여부와 그 유형에 미치는 방식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들을 예술계 밖으로 밀어내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 기타 지위 예술인들이 전업보다 겸업을, 겸업 중에서

도 이종 겸업을 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 예술계 내부에서의 계약 건수는 그 속성이 불안정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곧 예술인에게 경력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예술인의 겸업 유형을 차별화하는데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이는 앞서 예술노동의 여건이 좋든 나쁘든 '참여의 기회'를 얻는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예술계의 관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 예술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종 겸업의 가능성은 감소시키고 동종 겸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두 겸업 유형 사이에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제5장 [연구 2]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조정행태

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예술단체의 특성이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예술단체의 특성을 재정압박에 대한 반응행태로 구체화하고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예술단체의 반응행태로 고용·임금 조정행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기존 예술 생산체계 내에서 예술단체는 공급 일부를 선별하여 소비 영역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Hirsh, 1972), 이는 예술노동시장 관점에서 보면 결국 노동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조절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과 임금에 관련된 것이다. 결국, 예술 생산체계의 분배 단계에서 내리는 예술단체의 의사결정은 예술인의 고용·소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예술단체의 고용·임금 조정행태에 미치는 요인으로 재정압박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기존 연구의 두 가지 한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예술 생산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예술단체가 분배 단계에서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는가'의 문제와 같이 의사결정의 양태에 대해 주로 다뤄왔지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예술단체의 재정압박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 요인은 예술단체의 의사결정을 제약하거나 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앞의 이유와 연결되는데, 비영리 조직이 대부분인 예술단체의 특성상 재정압박에 관한 논의는 수입 불충분성에 주목해 '어떻게 하면 외부로부터 자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실용적 차원에만 치우쳐 진행되어왔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 차원에서 기존의 경사된 논의는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당위성 논리로 활용될 뿐, 정책 결정단계에서 예술단체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또는 행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

다. 하지만 재정압박은 수입 측면 이외에도 지출 측면의 재정압박이 존재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정 자원을 분배하는지에 따라 예술단체가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 또는 반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예술단체가 포함된 예술노동시장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영리 조직의 예술단체가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는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 조정행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압박 중에서도 예술인고용보험제도와 같이 정책으로 인해 예술단체에 추가적인 지출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조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예술단체의 재정압박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술단체의 조직행태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분석의 시도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로 인한 예술단체의 행태 변화를 예측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1. 재정압박에 관한 논의

재정압박(fiscal stress)은 일반적으로 재정위기(fiscal crisis) 상태 이전에 나타나는 재정현상(임성일, 2001; 신유호 & 최정우, 2013)으로 재원 조달과 서비스 제공의 기능이 취약한 상태를 일컫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지방재정 논의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31]. 하지만 반드시 지방재정 논의에서만 재정압박의 의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리조직과 비영리 조직, 정부 조직할 것 없이 각각의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확보와 효율적·효과적인 자원 할당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직의 특성상 재정적 어려움이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조직 존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 구체적인 개념 정의 또는 하위 개념의 구성 및 측정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재정압박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

31) 구체적으로 재정위기는 재정압박, 재정위기, 재정파산으로 단계를 구별하고 있다.

32) Greenlee & Trussel (2000)에 따르면, 영리 분야에서는 조직의 신용도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로 재정위기, 정확히는 재정적 취약성(financial vulnerability)을 예측하는 모형에 관심을 두었는데, 특히 기업의 파산(bankruptcy)을 예측하는 재정적 취약성 예측 모형을 개발하는 여러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기업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실용적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론적 개념화가 정제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반면, 비영리 조직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창기 영리조직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측정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은 영리조직과 달리 재정적 취약성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어려움 또는 비영리 조직에 요구되는 문서작업 등과 같은 자격요건 충족의 어려움, 환경의 변화, 이사회의 갈등 등 비재정적인 요인으로 조직의 활동을 실행하기 어려워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의 파산 예측을 목적으로 재정적 취약성을 다루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 비영리 조직의 재정적 취약성에 대한 측정방식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측정을 통한 파산 예측 정도도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 논의가 정제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논의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조직이 대부분인 예술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재정적 취약성'으로 개념화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예술단체의 파산을 예측하기 위한 구조적 재정 문제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경험하는 예산제약 또는 자금압박에 대한 대응행태를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의 흐름이 맞지 않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하나는 조직의 유형은 다르지만 비영리 예술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재정압박은 바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자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재정압박에 대한 논의는 비영리 예술단체의 재정압박을 설명하는데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하나는 지방재정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압박에 대한 연구의 주 관심 중 하나가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인데, 이는 재정압박에 대한 조직의 대응에 관심을 두고 있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에서 다루어진 재정압박의 개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의 논리를 살펴보고, 예술단체의 재정압박을 설명하는 이론적 자원 요소를 구조화하고자 한다.

먼저 재정압박 개념에서 핵심 내용은 기존의 행정서비스 수준 유지에 필요한 세입 부족에 있는데 남황우(2013)는 재정압박을 “현재의 세입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좀 더 간략하게 정의하면 재정압박은 수입과 지출 사이의 불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고(최웅선 & 최서연, 2018), 이렇게 볼 때 재정압박 개념의 적용 범위는 비영리 예술단체에도 확장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비영리 예술단체의 수입상태에서 예술작품의 예술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해서 공연, 전시, 기획의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영리 예술단체를 대상으로도 재정압박 개념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지방정부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만 재정압박에 대한 측정 논의 역시 예술단체의 재정압박을 조작화하는데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재정압박 측정은 아직까지 일관된 지표체계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 그리고 수지 불균형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허명순, 2011; 최웅선 & 최서연, 2018). 각각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구체적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정압박의 측정지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허명순(2011)에 따르면 세입 측면에서 자체세입 비중, 자체세입 증가율, 경상재원 비율이, 세

출 측면에서는 경상비용 비율, 투자지출 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제시되고 있다. 최웅성 & 최서연(2018)은 여기에 더해 재정압박이 기존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거나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원의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압박을 본다면 세입의 감소나 세출수요 대비 세입의 부족이라는 측정지표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구체적 측정지표가 비영리 조직인 예술단체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맥락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재정압박을 비영리 조직인 예술단체 차원에서 수입 측면, 지출 측면으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입과 지출 사이의 수지 불균형으로 요약될 수 있는 재정압박 상황에서 조직이 보일 수 있는 행태는 무엇이 있을까? 지방정부의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대응 행태를 보일 수 있다고 논의되는데, 하나는 수입을 늘리거나, 다른 하나는 수입은 유지하고 지출을 축소하는 것, 마지막으로 수입을 늘리면서도 지출은 축소하는 것이다(최웅선 & 최서연, 2018). 사실 이러한 행태를 지방정부만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압박이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산제약 상황에서 예술조직이 보일 수 있는 행태 역시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 예술 분야의 재정압박과 예술조직의 대응 행태에 관한 논의

예술조직이 처한 예산제약과 관련해 주로 다뤄지는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산제약을 최소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용증가에 따른 예산압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적 성과를 이룰 것인가?'이다(Werck et al., 2008; Woronkowicz et al, 2020). 전자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예술조직의 재원 조성 논의로 흐르고, 후자의 경우 예술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논의로 이어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 질문은 '재정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이루어진 예술조직의 재원 조성 논의는 수입 측

면의 재정압박 완화와 관련된 것, 비용증가에 따른 예산압박과 예술적 성과와 관련된 논의는 지출압박에 대한 조직의 대응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 재구조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 분야의 예산제약 논의는 재정압박의 의미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 예술조직의 비용증가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로 Baumol & Baumol(1985a)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은 '보몰의 비용 질병(Baumol's cost disease)' 개념을 통해 예술 분야가 겪는 고질적인 수지 불균형 상태에 대해 지적하였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만큼이나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임금 상승 부분에서는 여타 분야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병리적 현상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예술조직이 수입압박을 완화하는데 자체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외부로부터 재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개념은 또 다른 비용 질병인 '억압된 비용 질병(suppressed cost disease)'인데 이 역시 Baumol & Baumol(1985b)에 의해 제시되었다(Baumol & Baumol, 1985b; Werck et al., 2008). 이는 공연예술단체가 비용 압박으로 인해 질적인 생산량 변화를 할 때, 이것을 비용 질병의 억압된 형태라고 한 것이다. 이는 지출압박에 대한 예술단체의 행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비용 질병의 억압된 형태' 차원에서 예술단체가 보이는 구체적 행태로서는 리허설 횟수를 줄이거나, 한 번에 많은 관객 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예술적 옵션 범위 내에서 무대 장치를 더 간소화 하거나(최동길 외, 2010),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작품 선택(Throsby. 1996)을 하는 등의 행태를 들 수 있다. 결국, 지출압박 상황에서 예술기관들이 작품의 가치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술조직이 지출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예술작품의 품질을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작품의 품질을 조절하는 것은 곧 조직의 목표와 상충

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안팎의 평가는 외부재원 조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고려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지보다 확실한 전략은 지출압박의 내부적 요인 조절하는 것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체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Werck et al., 2008). 물론 작품의 특정 배역을 제거하면 인건비 절감에는 분명 효과가 있겠지만 작품 자체가 파괴될 것이라는 지적(Peacock, 1996)도 있다. 그러나 레퍼토리 전체 구성의 변화를 통한 배역 규모 축소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관찰됨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Baumol & Baumol, 1985a)[33].

한편, 인건비 절감이 반드시 인력 규모 축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몸값이 비싼 스타급 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최동길 외, 2010), 초단기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Lingo & Tepper, 2013; Menger, 2017; Woronkowicz et al, 2020)이 고려될 수 있다. 즉, 임금 수준이 낮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 역시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3. 사용주의 인건비 절감과 조정행태

그렇다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주인 예술조직의 조정행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로 작동되는가? 특히 고용과 임금 조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론적 논의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고용 관계(employment relationship)와 관련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과 임금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고용주의 선택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고 본다(Freedman, 1996; Houseman, 2001)[34]. 특

33) Baumol & Baumol(1985a)은 1946년과 1977년 사이에 브로드웨이의 평균 출연자 규모가 15.8명에서 8.1명으로 떨어짐을 제시한 바 있다.
34)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 중 (1) 인적 자본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히 통제와 비용 측면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고용주에게 유리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통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용주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이다(Hyman, 1994). 고용규제는 바로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인데(Baccaro & Howell, 2011), 그 결과 내부시장의 종신 계약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환경이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상대적으로 정부 개입이 덜 이루어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환경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가격의 영향을 더 받고 그만큼 임금과 근로환경 요건에 대한 사용주의 부담이 덜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용주는 비정규직 해고가 자유롭고(Bosch, 2004), 시장 경쟁을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련시키기 때문에(Flecker et al., 2013) 근로자에 대해 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한다(Benassi et al., 2020).

비용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주들은 퇴직금, 임금과 근무환경의 최소 조건,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회피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Houseman & Ōsawa, 2003; Stone & Arthurs, 2013). 이 같은 행태를 토대로 Houseman(2001)은 고용 보호 및 사회보장제도가 오히려 고용주의 노동 유연성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덧붙여서 이런 왜곡을 시정하고자 유연한 고용 형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은 오히려 이들의 고용을 축소하거나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Benassi와 그의 동료들은(2020)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보이는 고용주의 선택이 비정규직 고용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것과 비정규직을 저숙련 노동시장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접근의 한계를 지적한다. 실제 최근에는 비정규직 내에도 임시계약 형태가 다양하고, 고용주는 고용 결정 시 통제와 비용

임금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Houseman, 2001), (2) 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이 좋은 사업체일수록 비정규직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Mangum et al., 1985; Houseman, 2001)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측면에서 임시계약을 유형별로 차별화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고숙련 노동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임시계약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임시계약이 (1) 수요 변동에 대해 반응하기 위한 수량적 유연화의 강화, (2) 생산과 서비스 혁신에 대한 기여, (3) 정원 감축과 인건비 축소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는 현상(Nesheim 2003; Kalleberg & Marden, 2005; Appelbaum a& Batt, 2014)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Benassi et al., 2020).

한편, 회계학 분야에서 고용주의 인건비 절감은 기업의 원가 행태[35]의 일부로 바라보고, '매출의 변화에 따라 원가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발전시켰다. 특히, 인건비 항목은 기업의 원가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고용주(경영자)의 재량적 조정 가능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가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Anderson & Lanen, 2007; 홍철규, 2010; Dierynck et al., 2012). 구체적으로 고용주가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홍철규·정준희, 2014). 종업원 수를 줄임으로써 총인건비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1인당 임금을 낮춤으로써 인건비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절충안으로 두 방법 모두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종업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 1인당 임금을 낮추는 방안이 더 선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로는 (1) 조정 원가를 고려할 때 우월한 방안이라는 설명(Anderson et al., 2003), (2) 상여금(bonus), 성과급 및 특근수당과 같은 1인당 인건비와 관련된 항목을 줄이는 방법이 쉽다는 설명, (3) 경영자의 사적 이익 추구와 지위 강화 측면에서 더 유용한 방법이라는 설명(Chen et al., 2012), (4) 법에 따른 제재 등의 정책적 제약이 심한 인원 감축보다 1인당 인건비 감축은 제재로부터 우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다(홍철규·정준희, 2014).

35) 원가(cost)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의미하고, 원가 행태(cost behavior)란 조직 내 활동의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원가의 발생액이 변화하는 양상을 의미한다(김진, 2020).

그러나 1인당 인건비 삭감은 기존 피고용인 대다수의 실질적 소득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피고용인의 사기와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고 우수인력의 외부 이탈 가능성도 커진다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외부 노동시장에 부정적 신호로 작용함으로써 우수인력의 유입 가능성 역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원 감축 역시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우선, 기존 피고용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미래 매출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조정 원가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효과가 지속되는 방법은 인원 감축이라는 것이 기존 연구 결과이다. 특히, 재무적 성과가 나빠 투자자들의 압력이 증가하거나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이자 지불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경우 국내외적으로 인원 감축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달성하는 경향이 있다(Cascio, 1993; 김언수·김재욱, 1997; 이화득·이재훈, 2001; 홍철규·정준희, 2014 재인용).

4. 가설 도출

지금까지 재정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예술단체가 보일 수 있는 조정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 논의의 시사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먼저, 재정압박의 개념은 그동안 예술조직의 예산제약 논의를 구체화하는데 이론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정압박의 정의처럼 예술조직의 재정적 어려움 역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한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로 인해 예술조직이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정압박의 개념은 차용될 수 있다. 또 이는 예술조직 연구에서 예산제약 또는 자금압박, 재정적 취약성 등 연구마다 다르게 용어를 사용해 개념적 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특히, 재정압박에 대한 다차원적 개념 정의는 본 연구의 분석 차원에서도 수입압박, 지출압박으로 구분해 재정압박을 조작화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조직의 재정압박을 수입과 지출 측면으로 구분해 가설을 구성하였다.

둘째, 예산제약과 예술조직의 조정행태에 관한 기존 논의는 실제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적 대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예술 생산체계 내에서 이러한 예술조직의 행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까지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Becker(1982)가 예술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술조직이 예술 생산체계 내 예술작품과 예술인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 중 하나라고 언급한 것을 상기해 볼 때, 재정압박에 대한 예술조직의 조정행태는 조직 단일 차원을 넘어서 생산체계 차원으로 확대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예술 생산체계 내의 예술조직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예술조직의 대응 중에서도 예술작품과 예술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용과 임금 조정행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조직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조직의 조정행태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고용 관계와 회계학의 원가 조정행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고용과 임금 조정행태가 인건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사용주의 통제라는 정치적 이유도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확인하였다. 또, 덧붙여 추가로 주목할 만한 설명은 사용주가 고용 보호 정책에 대한 우회로 고용 형태를 조정함으로써 고용 규모와 임금 규모를 동시에 절감할 수 있는 대응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구체화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이론적 자원이 된다. 첫째, 고용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용의 형태, 즉 비정규직 비중 조정도 분석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고용 보호 정책으로 인한 사용주의 부담은 고정화된 인건비 지출의 상승, 곧 지출압박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출압박을 조작화하는데 있어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이 함께 고려되어

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압박을 수입과 지출압박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조정행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특히, 고용 조정의 구체적 형태는 인력 규모와 비정규직 비중으로 조작적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재정압박이 커질수록 고용을 축소할 것이다.

[수입압박]

(가설 1-1a) 자체 수입이 감소할수록 인력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가설 1-1b) 순수익이 감소할수록 인력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가설 1-1c) 수입이 기존 지출 수요보다 작을 경우 인력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지출압박]

(가설 1-1d) 경상비가 증가할수록 인력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가설 1-1e)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 가능성이 있는 경우[36] 인력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가설 2 재정압박이 커질수록 비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수입압박]

(가설 2-1a) 자체 수입이 감소할수록 비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가설 2-1b) 순수익이 감소할수록 비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

36) 실제 모형분석에서는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 가능성 유무와 지출압박의 수준으로 구분해 추정하였다. 이는 (가설 2-1e), (가설 3-1e)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 논의는 변수 측정과 분석 결과에서 다룬다.

(가설 2-1c) 수입이 기존 지출 수요보다 작을 경우 비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지출압박]

(가설 2-1d) 경상비가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가설 2-1e)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가설 3 재정압박이 커질수록 임금을 삭감할 것이다.

[수입압박]

(가설 3-1a) 자체 수입이 감소할수록 1인당 임금을 삭감할 것이다.

(가설 3-1b) 순수익이 감소할수록 1인당 임금을 삭감할 것이다.

(가설 3-1c) 수입이 기존 지출 수요보다 작을 경우 1인당 임금을 삭감할 것이다.

[지출압박]

(가설 3-1d) 경상비가 증가할수록 1인당 임금을 삭감할 것이다.

(가설 3-1e)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 가능성이 있는 경우 1인당 임금을 삭감할 것이다.

제3절 연구설계

1. 분석모형과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 관심은 재정압박 상황에서 예술단체가 보일 조정행태이다. 이때, 조정행태는 고용과 임금 차원으로 구분하고 예술단체가 내릴 의사결정의 구체적 유형을 축소(삭감), 유지(동결), 확대(인상) 3개 범주로 나누었다. 예술단체의 고질적 문제로 논의되는 재정압박은 수입과 지출 두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각각이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는 고용 보호 정책이 예술단체의 재정압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예술인고용보험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될 수 있는 인건비 지출압박 상황을 가정하여 예술단체의 고용과 임금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당초 예술노동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정책이 기존 재정압박에 더해 추가적인 지출압박으로 작용해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분석 모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식 1]과 같다.

[식 1]

$$Y = \beta_1 RP + \beta_2 EP + \beta_3 PP + \gamma Ctr$$

단, Y = 조정행태(고용, 임금)

RP = 수입압박(자체 수입, 작년 수익, 지출 수요 대비 수입)

EP = 지출압박(경상비)

PP = 지출압박(정책도입으로 인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부담)

Ctr = 단체 특성(법적 형태, 설립연도, 소재지, 활동 유형, 활동 실적),
자원 특성(재정 및 인력 규모)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모형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론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먼저, 종속변수의 범주가 3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달리 종속변수의 범주가 3개 이상일 경우 활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기준점이 되는 사건에 대비해서 관심 사건의 비율에 대한 모형이라는 점에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논리를 확장한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길곤, 2018 :149).

다음으로 예술단체의 조정행태가 시간의 경과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예술단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활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관찰되지 않은 특성은 오차항에 대한 가정에 따라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으로 구분해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모형을 모두 추정하였다[37].

이상의 분석 방법을 고려해 [식 1]을 다시 표현하면 다음 [식 2]와 같다.

[식 2]

$$Y_{ijt} = \beta_{1j} RP_{it-1} + \beta_{2j} EP_{it-1} + \beta_{3j} PP_{it-1} + \gamma_j Ctr_{it} + u_{ij} + \epsilon_{ijt}$$

37) 패널자료 분석에 있어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중 어느 모형이 더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 역시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든 분석모형에서 고정효과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인 패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종속변수가 시간불변일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세한 내용은 STATA 17.0의 명령어 xtmlogit에 대한 매뉴얼 참고). 즉, 예술단체의 의사결정이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술단체의 행태 조정뿐 아니라 특정 행태의 유지 역시 고려 대상이라는 점에서 고정효과 모형만으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제한적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Pr(y_{it} = m \mid x_{it}, \beta_j, u_{ij})$$

$$= F(y_{it} = m, x_{it}\beta_j + u_{ij}) = \begin{cases} \dfrac{1}{1 + \sum_{j=2}^{J} \exp(x_{it}\beta_j + u_{ij})} & \text{if } m = 1 \\ \dfrac{\exp(x_{it}\beta_m + u_{ij})}{1 + \sum_{j=2}^{J} \exp(x_{it}\beta_j + u_{ij})} & \text{if } m > 1 \end{cases}$$

2. 분석대상 및 분석 자료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2년~2017년으로 정한다. 여기서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8].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단체,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지원기관 및 기타 단체로 구분되며 해당 단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15]와 같다.

38)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표 15]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구분	해당 단체
공연단체	-공연예술 분야의 단체를 운영하는 법인·단체 -공연예술 분야의 기획·제작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공연예술 분야의 축제를 기획·운영하는 법인·단체 -공연예술 분야의 협회를 운영하면서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기타 공연예술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
공연장 운영단체	-공연장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시각예술 분야의 기획·제작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전시장 시설운영을 하는 법인·단체 -전시 분야 협회를 운영하면서 전시기획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지원기관 및 기타 단체	-기금 지원 등 지원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분석대상을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첫째,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취미로 예술을 즐기는 동아리와는 달리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삼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을 업으로 삼는 예술인이 예술노동시장의 공급 주체라면,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는 이들에 대한 수요 주체라 볼 수 있다.

둘째, 전문예술단체의 정부 재정지원 의존도가 상당하지만, 자원 배분 측면에서 단체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재정압박에 따른 단체의 조정행태를 살펴보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인력 채용 여부와 활용 방식에 관한 의사결정은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예술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사용주 입장을 논의하는데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시간적 범위를 2012년에서 2017년 특정한 것은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재정압박에 대한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분석하는데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단체의 행태가 예술인 개인의 겸업 행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기 때문에 예술인 행태 분석 자료와 시간적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2) 분석 자료

분석 자료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정한 전문예술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의 원자료이다. 이 조사는 모집단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광역시도 단체장이 지정한 문화예술법인·단체로 하고, 법인·단체 일반현황(법적 형태, 설립연도, 지역, 전용 연습실 보유 현황, 공연장 보유 현황 등), 인력 현황(기획·행정인력, 무대 기술, 상근단원 등), 재정 현황(공공지원금, 기업 후원금, 개인 기부금, 자체 수입), 활동 실적(자체 기획 공연·전시, 행사초청 공연·전시, 대관실적 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조사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매년 신규로 선정되는 단체들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매년 기존 단체와 신규 단체들의 정보를 동시에 수집 및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패널 조사처럼 일정 규모의 표본 수를 유지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 수의 변동이 수반된다. 또한, 지정 법인·단체라 하더라도 운영현황조사에 대한 응답 의무 규정이 없어 매년 관측치가 일정치 않은 불균형 패널 형태를 띠고 있다(이슬기,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첫째, 공연과 전시, 지원 단체를 포괄하는 유일한 조사 자료이며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전국구 자료라는 점에서 추정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의 관심 변수인 재정압박 상황과 고용, 임금 조정에 관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수집했기 때문에 성실히 응답한 단체를 대상으로 패널 자료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단체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을 통제할 수 있어, 추정의 타당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추정의 정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우선, 주요 변수의 결측값이 없고, 상시 인력이 최소 1명 이상이면

서 인건비 지출이 있는 단체에 한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1,834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3. 변수 측정

1) 종속변수

(1) 고용 조정

사용주의 조정행태 중 고용 조정에 대한 측정은 인력 규모 조정과 비정규직 규모 조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인력 규모 조정은 전년도와 올해 인력 규모를 비교하여 축소, 유지 또는 확대하였는지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비정규직 비중 조정 역시 전년도와 올해 비정규직 비중을 비교하여 축소, 유지, 확대로 범주화해 측정하였다.

(2) 임금 조정

예산제약에 대한 사용주의 조정행태 중 하나인 임금 조정에 대한 측정은 단체 내 1인당 평균 연봉 수준이 전년도 대비 올해 삭감, 동결, 인상하였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2) 독립변수 : 재정압박

재정압박은 크게 수입, 지출압박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수입압박은 작년 총수입 중 자체 수입 비중, 작년 수익(총수입-총지출), 기존 지출 수요 대비 수입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기존 지출 수요 대비 수입 측정에서는 작년 총지출을 기존 지출 수요라고 보고 이를 올해 수입을 비교해 측정하였는데, 올해 수입이 작년 총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초과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지출압박은 경상비와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때 경상비는 작년 지출 총액 대비 경상비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또, 고용보호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과거에 시행되었다면 예술단체가 비정규직 인력 활용을 위해 추가로 부담했을 인건비를 산출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추가 부담의 가능성은 비정규직 활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담 수준은 아래 [식 3]과 같이 산출하였다. 산식의 근거는 현재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주 부담 고용보험료 산정 방식을 반영해 연간 비용을 산출하였는데, 이때 분석 자료를 통해서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보수 측정이 불가능해 최소 기준보수로 가정하였다. 즉, 소득 확인 및 월 평균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의 보수가 적을 때 기준보수를 8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였다. 또, 예술인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식을 산출하였다. 이처럼 제도 도입 이전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제도 도입의 효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이경희&민인식, 2018).

[식 3]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

= (작년 비정규직 인력 인원수)*(80만 원)*(0.008[39])*(12개월)

3) 통제변수

(1) 단체 조직 특성

단체 조직 특성은 법적 형태, 소재지, 활동 유형, 활동 실적을 고려하였다. 법적 형태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임의단체로 측정하였다. 소재지의 경우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측정하였고, 활동 유형은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단체,

39) 사용주의 예술인고용보험료율(0.8%)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지원기관 및 기타 단체로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활동 실적은 공연 또는 전시 횟수로 측정하였는데, 공연 또는 전시 횟수는 그 횟수를 합산하여 5분위로 범주화하였다.

(2) 자원 특성

예술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특성을 모형에 고려하기 위해 재정 자원 특성과 인적 자원 특성을 구분해 측정하였다. 우선, 예술단체의 재정 현황으로 '총수입 중 정부 지원금 비중'과 '총수입 규모'를 고려하였다. 정부 지원금 비중은 연속형 변수로, 총수입 규모는 5분위로 범주화해 측정하였다.

한편, 인적 자원 특성으로 인력 규모를 고려하였는데, 상시 인력의 총인원수를 5분위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주요 변수의 측정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16]와 같다.[40]

40) 측정 방식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부록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16]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종속 변수		고용 조정	전체 인력		0. 축소, 1. 유지, 2. 증가
			비정규직 비중		
		임금 조정			0. 삭감, 1. 동결, 2. 인상
독립 변수	재정 압박	수입 압박	자체 수입		작년 수입 대비 자체 수입 비중
			순수익		(작년 수입-작년 지출) 5분위 구분
			지출 수요 대비 수입		0. 미충족(작년 지출액>올해 수입), 1. 충족(작년 지출액=<올해 수입)
		지출 압박	경상비		작년 지출 총액 대비 경상비 비중
			인건비 추가 부담	(작년 비정규직 인력수)*80(만원)*0.008*12(개월)	
				가능성	0. 부담 가능성 없음, 1. 있음
				수준	추가 인건비 5분위 구분
통제 변수	단체 조직 특성	법적 형태*			재단법인, 사단법인, 임의단체
		소재지*			1. 비수도권, 2. 수도권
		활동 유형*			1. 공연단체, 2.공연장 운영단체, 3.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4.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
		활동 실적	공연/전시 횟수		공연횟수 또는 전시횟수를 합산하여 5분위로 구분
	자원 특성	재정	정부 지원금 비중		총수입 중 정부 지원금 비중
			수입 규모		총수입 규모 5분위로 구분
		인력 규모			총인력 수 3분위로 구분(소, 중, 대)

* 시간불변 변수

제4절 분석 결과

1. 예술단체의 재정압박

1) 수입압박

수입압박의 측정지표에 대한 기초통계에 앞서, 예술단체의 재정 현황에 대한 파악을 위해 수입 규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예술단체의 수입 규모별 수입액 수준과 재원별 비중은 다음 [그림 5]와 같다. 수입액을 5분위로 구분하였을 살펴본 결과, 수입액이 하위 20%에 속하는 단체들의 평균 수입액은 2,901만 8천 원인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단체들의 평균 수입액은 85억 4,465만 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단체들의 수입 대비 상위 20% 단체들의 수입은 약 294배 큰 것으로 나타나, 예술단체 간의 수입 격차도 상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수입 규모별 수입액과 재원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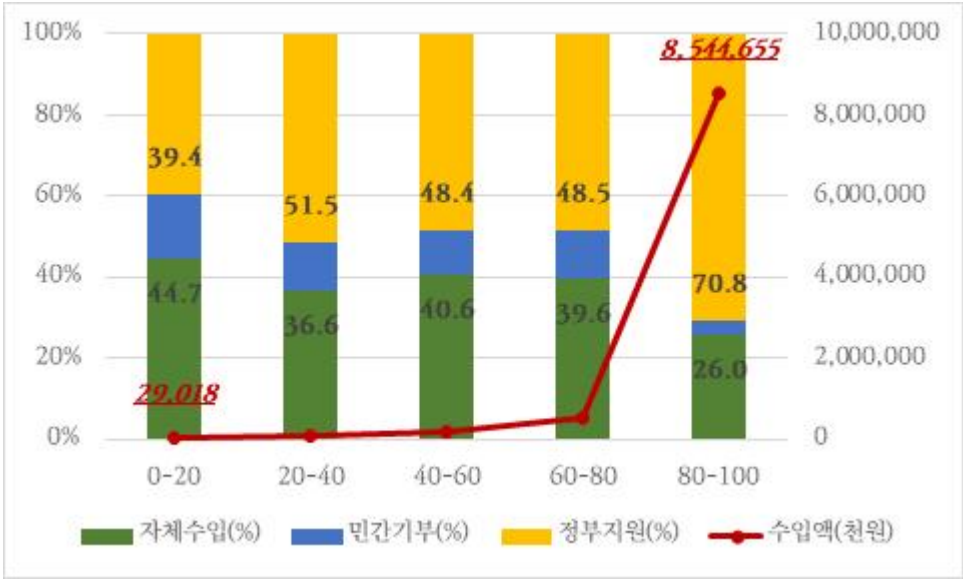

한편, 분위별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하위 20% 예술단체 수입의 44.7%가 자체수입이고 정부 지원금이 39.4%, 나머지 15.9%가 민간 기부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26.0%인 반면, 정부 지원금이 7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입 규모의 증가와 정부 지원금 비중 증가가 같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 자체 수입의 경우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30% 후반에서 40% 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는 자체 수입만으로 예술단체의 수입 창출이 어렵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예술단체의 수입압박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본 연구에서는 수입압박의 지표를 자체 수입 비중과 순수익, 지출 수요 대비 수입 수준으로 측정하는데, 앞서 수입 규모별 재원 구성을 살펴보면서 자체 수입 비중을 살펴보았으니 순수익과 지출 수요 대비 수입 수준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예술단체의 전년도 순수익 수준을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년도 순수익은 전년도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측정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순수익의 중윗값이 0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예술단체 중 절반이 한 해 사업을 마치면 적자 상태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6] 전년도 순수익 구간별 경곗값(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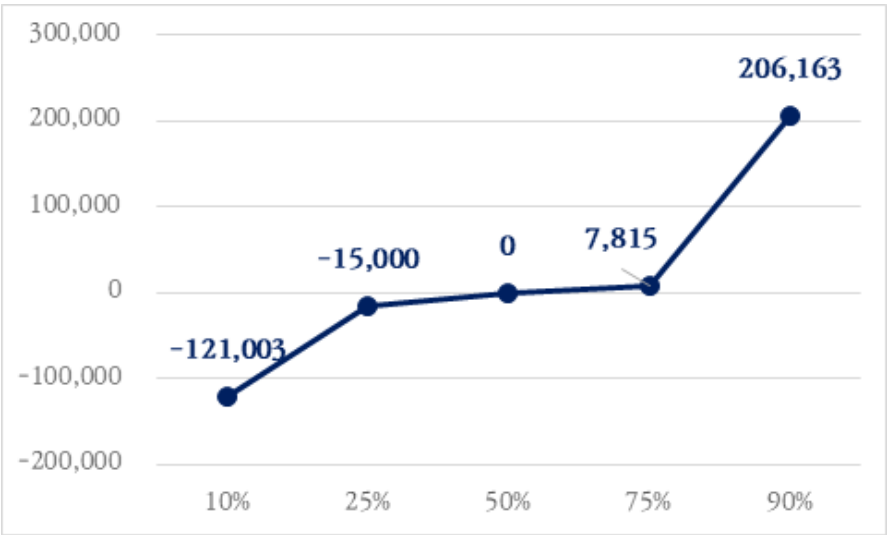

물론 본 연구대상이 영리 추구 목적이 아닌 비영리 조직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예술단체 절반이 적자 상태에 있다는 점은 예술단체의 영세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다음으로 수지 불균형 차원에서 기존 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수입이 확보되는지 살펴본 것이 [그림 7]이다. 구체적인 측정 방식은 앞서 밝혔듯이, 작년 지출 규모와 올해 수입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때 수입이 기존 지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비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술단체 중 약 50% 내외로 수지 불균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에는 미충족 단체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그림 7] 연도별 수입의 기존 지출 수요 미충족 단체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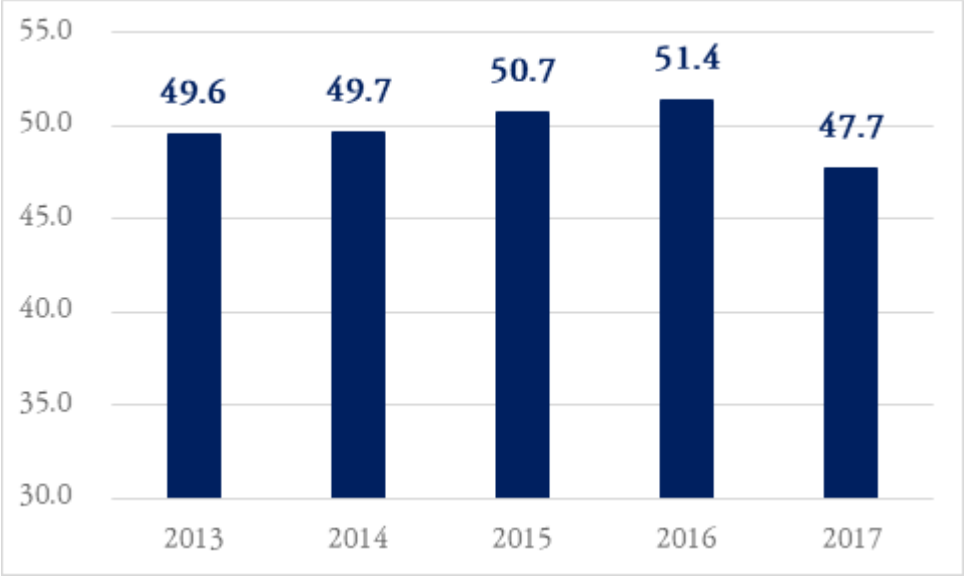

추가로 수입 규모에 따른 수지 불균형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수입액 구간별 지출 수요 미충족 단체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 [그림 8]이다. 수입 규모가 작을수록 수지 불균형의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수입 규

모가 하위 20%에 속하는 단체들 가운데 71.0%가 기존 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수입액 구간별 지출 수요 미충족 단체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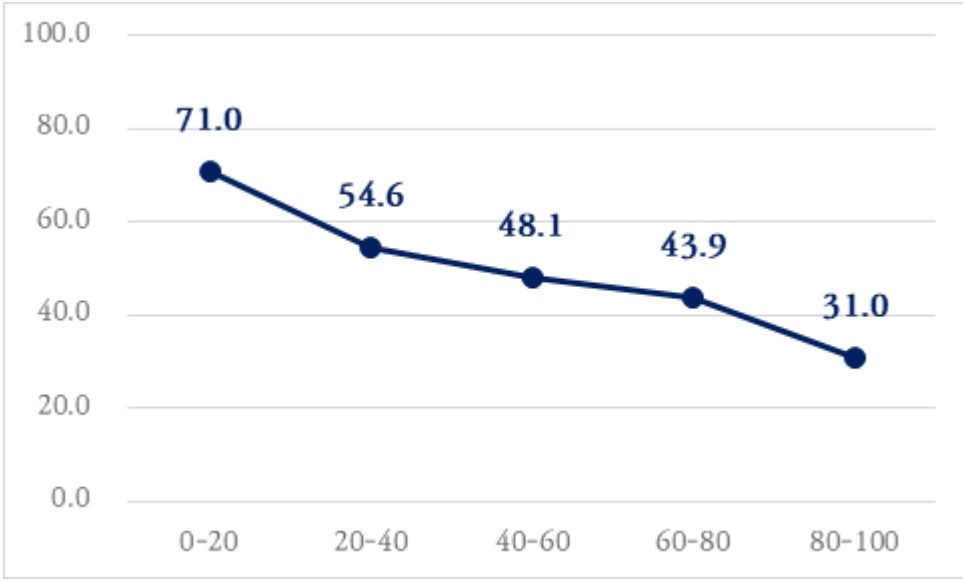

2) 지출압박

지출압박 역시 측정지표에 대한 기초통계에 앞서, 예술단체의 지출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출 규모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예술단체의 지출 규모별 지출액 규모와 지출 항목별 비중은 다음 [그림 9]와 같다. 지출액을 5분위로 구분하였을 살펴본 결과, 지출액이 하위 20%에 속하는 단체들의 평균 지출액은 3,537만 5천 원인 반면, 상위 20%에 속하는 단체들의 평균 지출액은 1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단체들의 지출 대비 상위 20% 단체들의 지출은 약 390배 큰 것으로 나타나, 예술단체 간의 지출 격차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 지출 규모별 지출액과 항목별 비중

한편, 분위별 지출 항목의 구성을 살펴보면, 하위 20% 예술단체 지출의 47.3%가 공연 또는 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술 사업비고 인건비가 27.4%, 경상비가 15.8%, 그 밖의 예술 외 사업비가 9.5%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경우에는 예술 사업비 지출 비중이 30.2%이고, 예술 이외 사업비가 27.7%, 인건비 22.5%, 경상비 19.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간별 차이의 특성을 살펴보면, 상위 20% 예술단체의 재원 할당 방식이 다른 구간과 예술이외 사업비 비중에서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예술 사업과 예술이외 사업을 통합해서 살펴보면, 모든 구간에서 50% 내외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 나머지 지출 항목인 경상비와 인건비 비중 역시 구간별 차이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는 지출에 있어서 예술단체 사이의 유사한 재원 할당 양태를 보임을 시사한다. 다만,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사업비는 지출 규모가 커질수록 커지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인건비의 경우 비중의 하락이 보인다는 점이다.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한정된 예산에서 예술단체의 존립 목표와 직결되는 예술 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할수록 인건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단체의 내부 운영 차원에서 발생하는 지출압박 이외에 외부적 차원에서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출압박이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인건비 상승 가능성과 그 부담 수준으로 이를 구체화하였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책도입 이전 자료에 '이 시기에 정책이 도입되었더라면'이라는 일종의 what-if 분석 접근방식으로 이 지표를 추정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예술단체의 또 다른 지출압박 지표인 정책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출압박 가능성과 그 수준은 어떠할까?

먼저, 연도별 정책으로 인한 지출 부담이 예상되는 대상단체의 비중을 살펴본 것이 [그림 10]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2016년을 제외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 예술단체의 70% 이상이 정책으로 인한 추가 지출 부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형태가 만연한 예술노동시장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인 동시에 대부분의 예술단체가 정책도입으로 인건비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10] 연도별 정책으로 인한 지출 부담 예상 대상단체 비중(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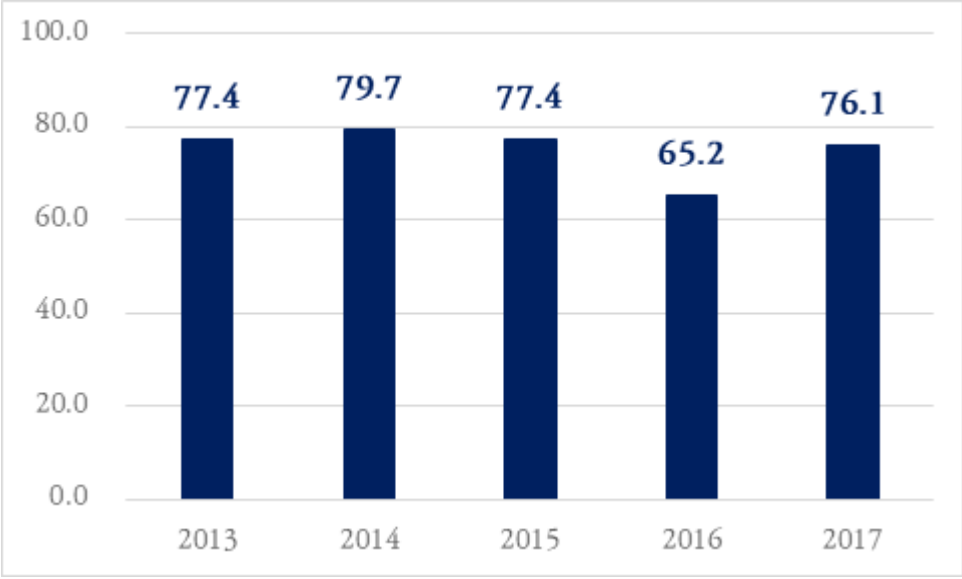

다음으로 예술단체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지출압박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은 지출 부담액의 구간별 경곗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구간별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술단체가 지출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도출된 경곗값을 살펴보면 25%에 되어서야 7만 7천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을 경험하게 되고, 95%에 돼서는 322만 6천 원 정도의 부담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정책으로 인한 지출 예상 부담액 구간별 경곗값(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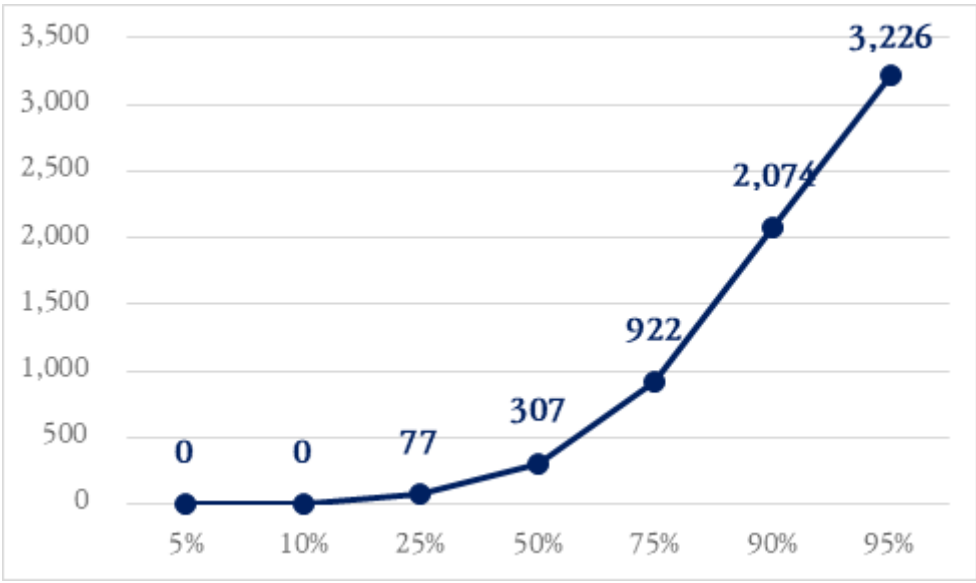

물론, 작년과 동일한 인력 규모를 활용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할 때 그 절대적 금액 수준이 재정압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예술단체의 순수익 수준을 고려한 상황에서 지출 부담액 수준을 검토하였다([그림 12] 참고). 이는 지출 부담액의 절대적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단체의 순수익 수준을 고려할 때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 수준인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즉, 예술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이 갖는 예상 지출 부담액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림 12]의 x축은 올해 순수익 수준의 구간을 나타낸 것이고, 파란색 원형 표식은 올해 순수익 구간별 순수익의 평균값을, 붉은색 네모 표식은 올해 순수익 구간별 지출(비용) 부담액을 나타낸다. [그림 12]는 전년도 인력 규모가 올해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올해 정책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인건비 상승 비용이 모든 구간에서 순수익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현재 수익 상태로는 소액이라도 예술단체 입장에서 지출 차원의 재정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나, 순수익 규모가 하위 60%에 속한 단체들의 경우 적자 상태나 여유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12] 순수익 구간별 평균 순수익과 평균 지출 부담액(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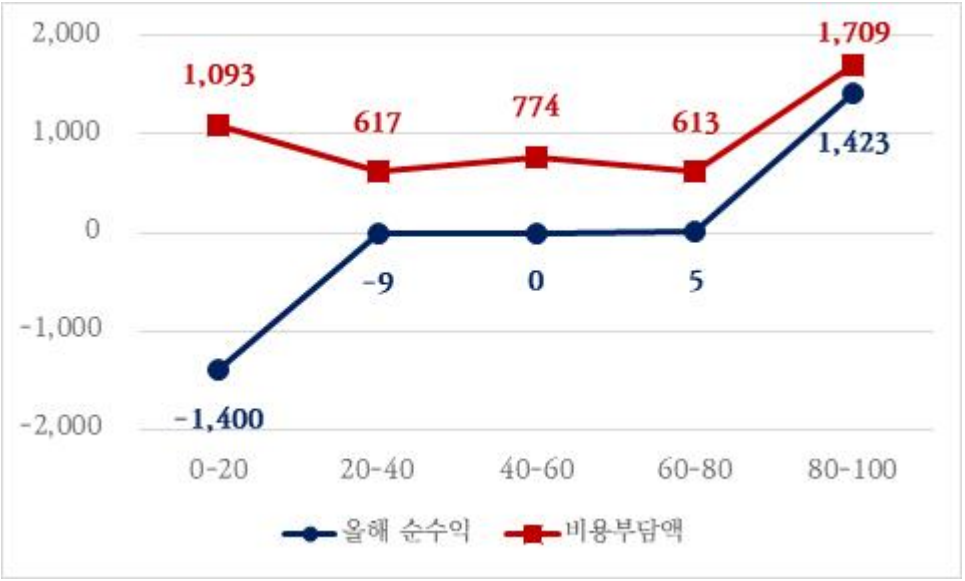

2. 예술단체의 조정 양태

1) 고용 조정

(1) 인력 규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예술단체에서 이루어진 고용 조정을 인력 규모와 비정규직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3]과 [그림 14]와 같다.

먼저, 예술단체의 인력 규모 조정의 경우 유지보다 축소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축소와 확대 조정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지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5년간 추세는 확대 조정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인력 규모를 유지하는 예술단체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6년에는 확대 조정이 47.7%로 다른 해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3] 연도별 인력 규모 조정(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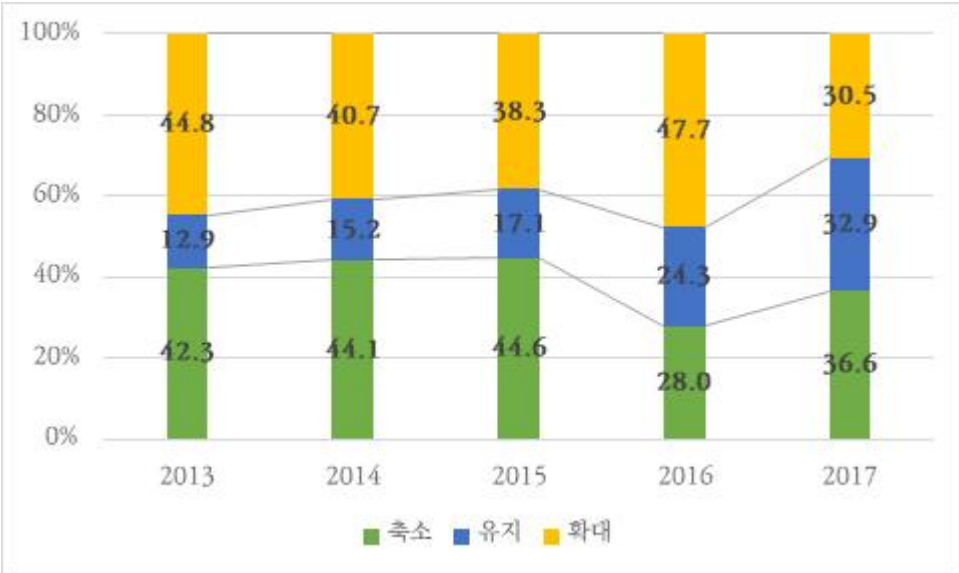

(2) 비정규직 비중

예술단체 내 비정규직 인력 비중에 대한 조정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4]와 같다. 우선, 2013년에 비정규직 비중 조정의 양태는 축소(42.7%), 확대(41.1%), 유지(16.1%)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까지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반면, 2016년에는 비정규직 비중을 늘린 단체가 45.2%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유지(27.5%), 축소(27.3%) 순의 조정행태를 보였다. 한편, 2017년은 예술단체 내 비정규직 인력 비중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단체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단체 중 40.1%가 비정규직 비중을 유지했고, 비정규직 비중이 축소된 단체의 비중(30.9%)과 확대된 단체의 비중(29.0%)이 뒤를 이었다.

[그림 14] 연도별 비정규직 비중 조정(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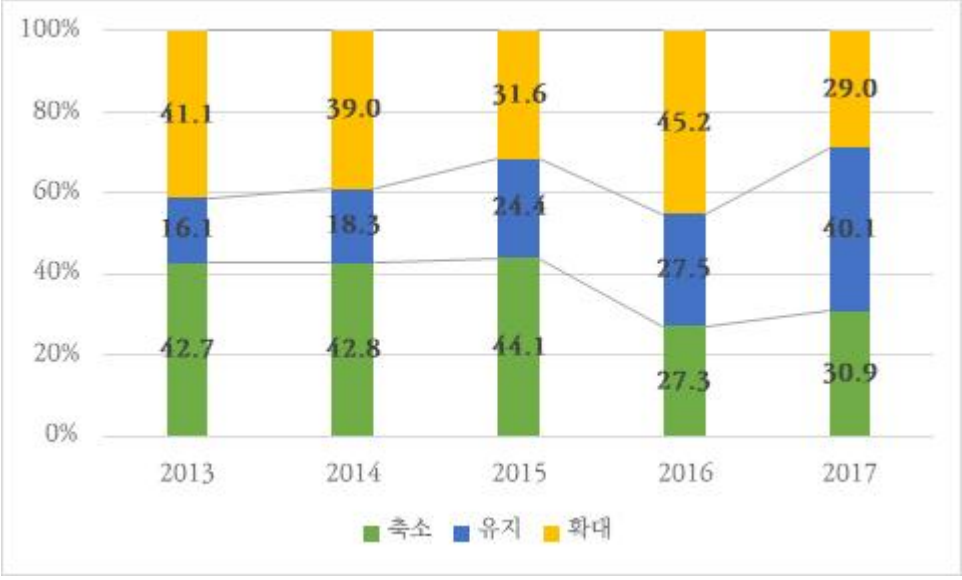

2) 임금 조정

앞서 살펴본 고용 조정과 달리 예술단체의 임금 조정행태는 연도별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금이 인상된 예술단체의 비중이 가

장 컸는데, 대략 50%대 후반 수준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삭감, 동결의 순을 보였다.

[그림 15] 연도별 임금 조정(단위: %)

3.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조정행태

1) 재정압박과 고용 조정행태

(1) 인력 규모 조정

예술단체의 재정압박 상황이 인력 규모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가 [표 17]이다[41]. 분석은 재정압박 중 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 변수의 측정 방식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모형 (1-1)은 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즉 추가적인 지출 부담 가능성 유무를 고려하고, 모형 (1-2)는 그 부담 수준을 고려하였다.

우선, 수입압박의 지표 중 자체 수입이 증가할수록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1-1)과 (1-2)의 확률효과 모형에서만 일관되게 나타났다. 즉, 수입압박이 완화될수록 인력 규모를 확대보다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수입압박이 완화될수록 인력 규모는 확대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과 상반된 것으로, 가설 (1-1a)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반면, 순수익의 증가로 수입 측면의 재정압박이 완화될 경우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모형 (1-1)과 (1-2)의 모든 추정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 (1-1b)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수입 측면의 또다른 재정압박 지표인 기존 지출 수요에 대한 수입의 경우 기존 지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보다 충족했을 경우 인력 규모 축소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 (1-1)의 확률효과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가설 (1-1c)를 그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지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충족한 경우 인력규모를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축소하기보다 최소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41) 지면상의 이유로 여기서는 주요 변수의 추정 결과만 제시하고, 전체 추정 결과표는 [부록 표 5]에 제시하였다.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지출 측면에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경상비 상승은 인력 규모 조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가설 (1-1d)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반면,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의 가능성을 측정한 예술인고용보험료 부담 가능성은 예술단체의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축소할 가능성을 키우고 동시에 규모 확대의 가능성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확률효과 모형이든 고정효과 모형이든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을 부담 수준으로 측정한 모형 (1-2)의 추정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가설 (1-1e)를 지지하는 결과로, 정책으로 인해 지출압박이 예상될 경우 예술단체가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17] 예술단체의 예산제약과 고용 조정행태(인력 규모, odds ratio)

Y의 기준: 유지			모형 1-1				모형 1-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수입 압박	자체수입		1 (0.00)	**0.995*** (0.00)	1.003 (0.00)	0.997 (0.01)	1 (0.00)	**0.995*** (0.00)	1.004 (0.01)	0.998 (0.01)
	순수익		0.936 (0.09)	**1.197*** (0.13)	1.148 (0.19)	**1.483**** (0.25)	0.916 (0.09)	**1.205*** (0.13)	1.146 (0.20)	**1.531**** (0.26)
	수입의 기존 지출 수요 충족*	충족	**0.731*** (0.12)	0.997 (0.17)	0.771 (0.17)	0.798 (0.18)	0.762 (0.13)	0.979 (0.16)	0.815 (0.19)	0.776 (0.18)
지출 압박	경상비		1 (0.00)	1 (0.00)	0.996 (0.01)	0.992 (0.01)	1.002 (0.00)	0.999 (0.00)	0.994 (0.01)	0.992 (0.01)
	부담 가능성		**2.422***** (0.42)	**0.643**** (0.12)	**2.539***** (0.71)	**0.392***** (0.11)				
	고용보험료 부담 수준						**1.671***** (0.11)	**0.840***** (0.05)	**1.650***** (0.17)	**0.642***** (0.07)
통제			Yes				Yes			
Constant			0.536 (0.33)		0.087*** (0.06)		0.464 (0.30)		0.081*** (0.05)	
Prob 〉 chi2			0		0		0		0	
ll			-1,704.1		-530.4		-1,632.3		-490.2	
N of obs			1,834		1,463		1,834		1,463	
N of groups			679		406		679		406	

*(ref. 미충족)

(2) 비정규직 비중에 대한 조정

예술단체의 재정압박 상황이 고용 조정의 또 다른 형태인 비정규직 비중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가 [표 18]이다[42]. 모형 (2-1), (2-2) 사이의 차이는 앞서 설명한 모형 (1-1), (1-2) 사이의 차이와 같다.

먼저, 수입압박 측면에서 재정압박의 완화가 될 수 있는 자체 수입 증가는 모형 (2-1)과 (2-2)의 확률효과 모형에서만 비정규직 비중을 유지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작다고 나타났다. 이는 곧 자체 수입이 감소할수록 비정규직 비중을 유지하기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가설 (2-1a)를 지지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순수익의 증가 역시 수입압박의 완화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때 모형 (2-1)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비정규직 비중이 유지되기보다 확대될 확률이 크다고 나타났다. 모형 (2-2)의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유지대비 축소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났으며, 확률효과 모형의 경우 유지대비 확대될 가능성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예술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 인력 활용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수지 불균형의 대리변수인 기존 지출 수요 대비 수입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수입이 기존 지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보다 충족할 경우 비정규직 비중을 유지대비 축소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모형 (2-1)에 대한 확률효과 추정 결과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설 (2-1c)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지출압박 측면에서 경상비 상승은 비정규직 비중 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d)를 지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예술인고용보험료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즉 인건비 추가 부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형 (2-1)의 고정효과 모형에서만 예술단체가 비정규직

42) 지면상의 이유로 여기서는 주요 변수의 추정 결과만 제시하고, 전체 추정 결과표는 [부록 표 6]에 제시하였다.

비중을 유지하기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담 수준을 고려한 모형 (2-2)의 경우, 확률효과 모형이든 고정효과 모형이든 부담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비중을 유지보다 축소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대할 가능성의 감소는 고정효과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18] 예술단체의 예산제약과 고용 조정행태(비정규직 비중, odds ratio)

Y의 기준: 유지			모형 2-1				모형 2-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수입 압박	자체수입		0.997 (0.00)	**0.995** (0.00)	0.996 (0.01)	0.996 (0.01)	0.996 (0.00)	**0.995*** (0.00)	0.996 (0.01)	0.998 (0.01)
	순수익		1.137 (0.12)	1.168 (0.12)	1.318 (0.24)	**1.535**** (0.27)	1.175 (0.13)	**1.206*** (0.13)	**1.483**** (0.29)	**1.537**** (0.28)
	수입의 기존 지출 수요 충족*	충족	**0.699**** (0.12)	0.957 (0.15)	0.773 (0.19)	0.74 (0.17)	0.822 (0.15)	0.979 (0.17)	0.798 (0.21)	0.721 (0.17)
지출 압박	경상비		1.004 (0.00)	1.004 (0.00)	0.997 (0.01)	1 (0.01)	1.008 (0.01)	1.003 (0.01)	1.002 (0.01)	1.004 (0.01)
	부담 가능성		6.01E+08 (5.96e+11)	1.132 (0.20)	7.62+08 (4.56e+10)	**0.449**** (0.14)				
	부담 수준						**4.239***** (0.44)	0.905 (0.07)	**5.167***** (0.91)	**0.671***** (0.08)
통제			Yes				Yes			
Constant			0 (0.00)		0.084*** (0.05)		0.022*** (0.02)		0.073*** (0.05)	
Prob 〉 chi2			0		0		0		0	
ll			-1573.3		-426.63		-1508.2		-378.03	
N of obs			1,834		1,405		1,834		1,405	
N of groups			679		387		679		387	

*(ref. 미충족)

2) 재정 불안정성과 임금 조정행태

재정압박의 심화가 고용 조정 이외에도 임금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이를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19]이다[43].

우선, 수입 측면의 재정압박 지표 중에서 자체 수입과 수지 불균형 상태 여부가 임금 조정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 수입이 증가할수록 임금 수준을 동결하기보다 삭감 또는 인상할 가능성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형 (3-1)과 (3-2)의 고정효과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3-1a)를 지지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동시에 정반대의 조정행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단체의 자체 수입 증가가 재정압박 상태를 완화해 예술단체 인력의 임금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수지 불균형 상태로 볼 수 있는 기존 지출 수요에 대한 수입의 충족 여부 요인 역시 임금 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수입의 확보는 임금을 동결하기보다 삭감 또는 인상하는 조정행태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모형 (3-1)과 (3-2)의 고정효과 모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다만, 모형 (3-2)의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인상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출 측면에서 재정압박 요인으로 살펴본 경상비 상승은 임금 조정행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 요인은 모형 (3-1)의 확률효과 모형에서만 임금 조정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으로 인해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경우 예술단체가 임금 수준을 동결하기보다 오히려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담 수준의 영향을 살펴본 모형 (3-2)의 확률효과 모형에서도 일관된 추정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대략적인 기초통계와 앞서 살

43) 지면상의 이유로 여기서는 주요 변수의 추정 결과만 제시하고, 전체 추정 결과표는 [부록 표 7]에 제시하였다.

펴본 모형 (1-1)과 (2-1)의 추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예술단체는 비정규직 인력을 축소함으로써 인력 규모를 줄이고, 이로 인해 정규직 인력만 남아 1인당 평균 임금 수준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임금 조정 수준별 전체 인력 조정과 비정규직 인력 조정의 규모를 살펴본 [그림 16]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x축은 임금 조정 수준을 10분위로 구분한 것이며, y축의 좌측은 임금 조정 수준을, 우측은 조정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전체 인력 조정과 비정규직 인력 조정의 수준도 임금 조정 수준의 분위별 평균을 구한 값이다. 따라서 [그림 16]을 통해, 임금이 인상될수록 전체 인력은 감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인원 감축 수준이 전체 인력 감축 수준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즉, 전체 인력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는 비정규직 인력의 상당 부분을 조정하는 행태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상향 임금 조정은 비정규직 인원 감축으로 인한 효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림 16] 임금 조정 수준별 전체 조정 인원과 비정규직 조정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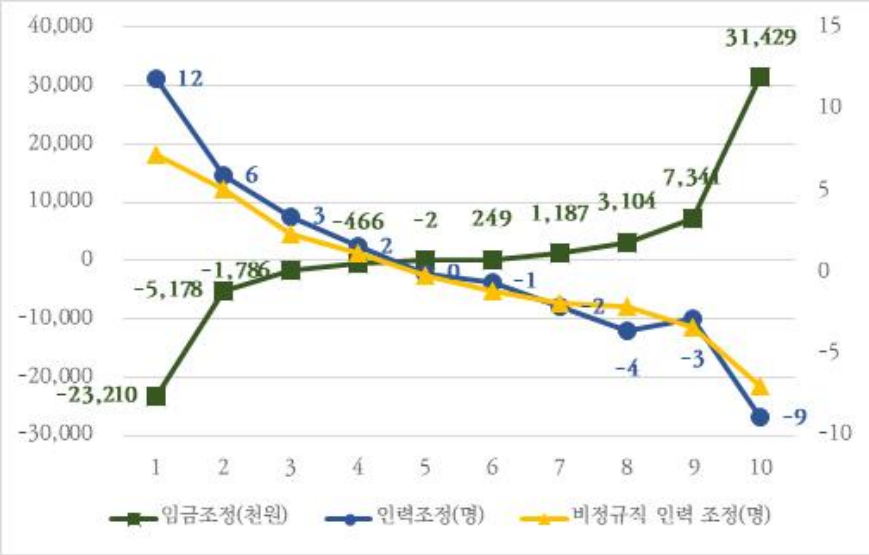

[표 19] 예술단체의 예산제약과 임금 조정행태(odds ratio)

Y의 기준: 임금 수준 동결			모형 3-1				모형 3-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수입 압박	자체수입		1 (0.01)	1.001 (0.01)	**1.051*** (0.03)	**1.052*** (0.03)	1 (0.01)	1.001 (0.01)	**1.053*** (0.03)	**1.054*** (0.03)
	순수익		0.701 (0.16)	0.938 (0.22)	0.497 (0.42)	0.742 (0.62)	0.706 (0.16)	0.939 (0.21)	0.445 (0.43)	0.671 (0.65)
	수입의 기존 지출 수요 충족*	충족	1.172 (0.46)	1.803 (0.70)	**15.032**** (20.60)	**25.963**** (35.63)	1.163 (0.46)	**1.909*** (0.74)	**14.890*** (20.69)	**26.945**** (37.51)
지출 압박	경상비		0.991 (0.01)	0.996 (0.01)	0.97 (0.03)	0.977 (0.03)	0.991 (0.01)	0.996 (0.01)	0.967 (0.03)	0.973 (0.03)
	부담 가능성		1.098 (0.38)	**2.030**** (0.69)	0.545 (0.61)	1.532 (1.72)				
	고용 보험료 부담 수준						0.986 (0.13)	**1.392**** (0.18)	0.607 (0.30)	1.038 (0.51)
통제	단체 특성		Yes				Yes			
Constant			3.501 (4.84)		0.838 (1.16)		3.695 (5.09)		0.726 (1.00)	
Prob 〉 chi2			0		0		0		0	
ll			-1,294.2		-466.23		-1,264		-443.68	
N of obs			1,785		1,390		1,785		1,390	
N of groups			659		376		659		376	

*(ref.미충족)

제5절 소결

본 연구는 재정압박에 따른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얼마만큼 조정하는가'보다는 '어떤 조정행태를 보이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수익 창출이 어려운 예술단체의 고질적 문제인 재정압박에 더해 정책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적 지출압박이 예술단체의 고용과 임금 조정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이 있을 때, 예술단체가 양적 측면에서 고용 규모를 유지대비 축소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확대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의 수준으로 볼 때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예술단체가 재정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 규모를 유지보다 축소하거나 확대보다 유지하는 조정행태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곧 예술노동시장의 노동수요가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이 비정규직 규모 조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방식에 따라 그 추정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달라졌다.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 가능성 유무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조정은 고정효과 추정모형에서만 유지대비 확대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상 지출압박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예술단체가 비정규직 규모를 유지하기보다 축소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확대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이 예술단체의 임금 조정행태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지출압박의 측정방식과 상관없이 확률효과 모형에서만 동결 대비 인상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수입 구조하에서 기존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축소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을 축소한 결과, 소수의 정규직 인력만이 남게 되고 이로써 평균 임금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6장
[연구 3]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와 예술인의 겸업 행태

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단체의 조정행태가 예술인 개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앞의 두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각각의 연구가 마지막 연구에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연구(제4장)를 통해 개인 수준 차원에서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 특성이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그동안 예술인의 겸업과 관련된 논의의 분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예술인이 처한 구조적 위험 요인을 불안정 노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술인이 겸업을 하는지, 겸업을 한다면 어떤 유형의 겸업을 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예술단체의 행태가 예술인 개인 특성을 고려한 뒤에도 설명력을 갖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론적, 분석적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제5장)는 재정압박 상황에서 예술단체가 보일 수 있는 조정행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고용과 임금 조정으로 구체화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결과와 그 추정값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예술인 개인 행태에 관심을 두면서, 예술단체의 행태에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론적 논의를 근거로 한다.

첫째, '예술은 어떻게 생산되고 분배되는가?'의 질문에 대한 논의가 창작자인 예술인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를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앞의 질문과 관련된 예술 생산의 주요 논의는 창작자와 분배망, 예술작품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예술을 창작자 개인적 행위가 아닌 '예술계'의 여러 행위자에 의한 집단적 행위로 설명한 Becker의 논의를 들 수 있다(Alexander, 2003). 이는 예술인이 예술계 내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의사결정 또는 관계, 체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계에서 보이는 예술인의 행태는 결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술계 내에서 예술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의사결정 주체의 행태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그렇다면, 예술계 내에서 예술인의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 중 어떤 주체에 주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예술 생산체계 내의 여과효과(filtering effect)와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에 관한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Hirsch(1972)는 예술의 생산과 분배를 산업체계 관점에서 '투입(input)'-'전환(throughput)'-'산출(output)'의 단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전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여과효과와 게이트키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여과효과는 생산 영역에서 창작된 예술작품 일부분만이 소비 영역으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때 어떤 예술작품이 선별되고, 어떤 형태로 소비 영역으로 전달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게이트키퍼의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의 주체로 기존 연구에서는 문화산업 자체 또는 문화산업 내 기업(Hirsh, 1972)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술 생산이 기업에서뿐만 아니라 비영리 예술단체에서도 이루어지며, 비영리 예술단체 역시 예술의 생산과 분배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예술단체의 게이트키퍼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 게이트키퍼로서 예술단체가 행하는 여과와 선별의 대상이 예술작품에 한정되기보다는 어떤 예술인 또는 얼마나 많은 예술인과 작업해 소비 영역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 즉 예술인 선별 또는 채용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고려해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미칠 수 있는 예술단체의 행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예술단체가 사용주를 대변한다고 보고 먼저 예술노동

시장에서의 사용주와 예술인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예술단체의 조정행태가 예술인 겸업 행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예술인 개인 자료와 예술단체의 자료를 결합해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를 가정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s) 분석 방법을 적용해 모형을 추정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 연구가 산업 중심의 논의로 흘러 지나치게 거시적이거나 미시적 차원에서 예술인 개인 행태에만 집중해 구조적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가설 도출

1. 예술노동시장에서의 사용주와 예술인의 관계

Menger(2001)는 예술인 경력 형성과 관련해서 인적 자본이론 이외에도 사회자본과 고용 관계를 기초한 작업 할당(work allocation)과 명성 구축에 관한 메커니즘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예술노동시장에서 사용주와 피용인 예술인의 거래가 노동과 임금의 교환에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먼저, 예술인 입장에서 노무 계약은 자신의 시간과 예술적 재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창구인 동시에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경력(일종의 지렛대)이 되기도 한다. 즉, 계약의 형태가 무엇이든 프로젝트는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이자,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고 평판을 형성하는 기회이고,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자본 역시 축적할 기회인 것이다(Haunschild, 2003). 따라서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이라면 노동 공급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흔히 노동시장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유보 임금만으로 예술인의 경제활동 행태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한편, 예술노동시장에서의 사용주는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언급하듯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협상에서 우위를 갖는데, 이는 (1) 채용과 해고, (2) 역할 배정과 같은 영역에 대한 통제 권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Haunschild, 2003). 이를 독일 극장 단원 인터뷰를 통해 임시 고용 관계의 특성을 분석한 Haunschild(2003)의 연구를 토대로 통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사용주의 재량적 권한 행사가 예술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는 예술 생산체계 논의에서 여과와 게이트키퍼 역할이 예술노동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예술노동시장의 경우 채용 및 해고 절차가 표준화되지 않은 분야이다. 특히, 해고 절차와 비용에 대한 노동 규제 자체가 부재해왔는데, 독일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이는 사용주의 채용과 해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채용과 해고 모두 사용주 재량의 영역으로 다뤄져 피용인 예술인 입장에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그 예측 불가능성 자체뿐만 아니라, 채용과 해고는 예술인에게 작품 참여 더 나아가 경력 형성 및 지속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또, '누구를 어떤 역할에 배정할지' 역시 사용주 결정에 달려 있다. 역할 배정은 일의 분배로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역시 그 기준과 과정에 명확한 계약상의 또는 제도적 규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종종 예술적 이유(artistic reasoning)로 그 판단이 설명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예술적 이유는 예술인에게도 중요해 보인다. 어떤 배역을 맡게 된다는 그것 자체로 자신의 재능과 역량에 대한 '예술적' 평가이자 예술계 평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이 단역이든 팀 구성을 위한 것이든 각각의 프로젝트는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에 대한 분배가 사용주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예술노동시장에서 사용주와 피고용인의 비대칭적 권력 관계는 독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용주와 피고용인의 위계적 관계의 구체적 사례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왔다. 특히 제작과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들과 관련이 깊다. '좋아서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낮은 임금쯤은 감수해야지'라는 인식이 예술계 내부에 존재하며, 이는 '계약서 작성'이 일반화되지 않은 관행과 함께 맞물려 낮은 임금구조와 계약서의 유효성 문제를 예술인 개인에게 떠넘기게 만든다(민경선, 2014). 특히, 갑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집단 작업과 달리,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미술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옥다애·정필주, 2017). 이는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가 명확히 포착되거나 법적으로 다뤄지지 못하는 데 일조한다. 옥다애·정필주(2017)는 인식 문제 이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뭔가 변화를 일으킬 여력(인력과 시간)이 없어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주(갑)라 할 수 있는 판매자, 전시기획자들도 주요 경매사, 화랑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세한 상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사용주의 재량적 권한 행사로 인한 피용인의 불이익은 공연계에서도 만연하다. 구두계약 또는 보수를 정하지 않고 연습부터 시작하는 관행, 인건비 지급날짜를 지나서도 여러 번 요구해야만 지급하는 사용주의 행태, 갑작스러운 공연 중단으로 인해 다른 공연을 잡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는 배우와 스태프의 현실적인 손해와 희생, 배우로서의 저작권이 없는 현실 등이 예로 꼽힌다(정은미, 2018). 그 밖에도 출판, 영화, 음악 등 가릴 것 없이 신인 작가는 수익 배분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계약을 맺는 업계의 관행도 공공연하다. 신인 작가들은 이 불공정한 관행에도 데뷔하려면 거쳐야 하는 진입 비용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손아람, 2017).

이를 통해 계약의 유형을 떠나 예술작품이 소비 영역으로 가는 길목인 제작과 유통 단계에서 맺어지는 사용주와 예술인 사이의 관계가 위계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 노동조합의 구성과 역할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피용인의 권리 주장과 사용주의 재량을 견제할 만한 집단적 행동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양자 간 관계가 일방적일 가능성이 크다. 즉, 사용주의 의사결정이 예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용주인 예술단체가 고용과 관련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위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예술인이 처한 불안정 노동의 특성과 함께 예술인의 경제적 위험과 미래 경력 형성의 가능성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와 예술인의 겸업

예술단체의 조정행태,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고용 조정행태가 어떤 방식으로 예술인 겸업 행태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제도로 인해 채용 및 해고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예술단체가 고용 또는 계약방식을 조정해, 그 영향이 예술인 개인의 직업적 위험에도 미치고 있다는 연구는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가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와 겸업에 대한 직접적 관계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예술인의 겸업이 직업적 위험에 대한 자구책임을 고려할 때 이론적 논의를 하는데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예술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본 Menger의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Menger는 제도 시행 이후 1인당 계약 기간은 줄고 1인당 계약 건수는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제도의 특성을 이용한 사용주의 전략적 행태에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로 이전보다 인건비에 대한 고정 지출 부담이 커진 사용주는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프랑스의 재충전권이라는 예술인고용보험의 제도적 특징을 이용한다. 이는

애초에 유연안정성(flexicurity) 확보라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유연만 남고 노동의 안정성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용주가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초단기 계약을 제안해, 제도로 인한 지출 부담은 줄이면서 저임금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Menger, 2017). 결국, 이와 같은 연구는 고용주의 비용부담이 피용인 예술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Menger, 2001).

최근 도입된 우리나라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경우 재충전권은 없지만, 기존 고용보험제도와 달리 수급 기간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활동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는 프랑스 경험을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해 예술인에게는 경력 축적의 기회를 주는 대신 값싼 인건비로 사용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반응행태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재정압박으로 작용해 고용 또는 계약의 수를 조정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다[44]. 이는 예술인의 일할 기회 축소와 실질 임금의 감소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용주인 예술단체가 이러한 조정행태를 시도한다면, 해당 단체와 계약(고용 또는 도급)을 맺은 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은 불안정하게 되어 예술인 스스로 또다시 자구책인 겸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개연성이 있다.

3. 가설 도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일에 대한 경험 축적이 곧 경력이 되는 예술인에게 일할 기회의 의미는 다차원적 특징을 갖는데, 이는 피용인에 대한 사용주의 위계적 권한을 강화하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논의는 앞서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살펴본 사용주인 예술단체의 게이트키퍼 역할이 예술인에게 미

44) 이는 앞서 연구 2에서 사용주의 구체적인 인건비 절감 행태로 고용과 임금 조정을 설명한 논의와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치는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예술인에게는 예술단체의 '선별'은 단순히 '이번' 일자리의 유무(또는 형태)가 아닌 '다음'의 유무(또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한편,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예술인고용보험제도와 같이 사용주에게 인력 활용에 있어 고정 지출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정적 압박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사용주의 행태에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연구는 사용주 행태 변화의 영향이 사용주와 관계를 맺은 예술인에게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그 결과로 예술노동시장의 평균적인 계약 특성 변화로 예술인의 고용이 불안정해졌을 것이라 추론하는 데 그쳐, 구체적으로 이로 인해 예술인의 행태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까지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상의 기존 논의의 함의를 토대로,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행태가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용자인 예술단체의 비용 회피적 조정행태가 피용인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예술인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성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체에 속한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가설2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 가능성이 커질수록 단체에 속한 겸업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제3절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 관심은 재정압박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이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겸업 여부와 겸업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고, 예술인 개인 특성을 고려한 뒤에도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이 예술인 개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기본적으로 연구 1의 분석모형에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 확률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분석모형은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 변수 추정방식에 따라 구분된다. 재정압박에 대한 고용 조정 확률은 예술단체의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추정방식은 변수 측정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론적 특성을 고려하였다. 하나는 종속변수의 범주가 2개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층모형이라고 불리는 이 모형은 위계적 자료(Hierarchical Data) 또는 내재자료(Nested Data)인 다층자료를 분석할 때 활용된다. 학교-학생과 같이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가 개인과 조직 수준의 복수인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에서는 널리 활용되는 모형이다. 기존 단층구조의 자료를 분석하도록 고안된 통계 모형들(예: 분산분석모형, 회귀분석모형)의 경우 다층구조의 자료를 분석할 때에도 분석 단위를 하나만 선택해야 하므로 분석의 딜레마가 있었다(강상진, 2016: 45). 문제는 다층자료의 특성을 간과하고 하나의 단위만을 선택할 경우 회귀분석모형의 독립성 가정을 위배해 추정 결과에 편의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강상진, 2016: 77)[45]. 다층모

형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이점이 있다. 이는 결국 모형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모수 추정치의 종류도 다양해진다는 장점과도 연결된다. [표 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경우 단일 수준의 고정효과의 모수만을 추정할 수 있는 반면,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서는 1수준의 고정효과 이외에도 2수준의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동시에 추정할 수 있다(최진이, 2005).

[표 20] 모형별 모수 추정치의 종류

기능	정보 유형	단순 로지스틱 회귀모형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모형
모수 추정치	(1수준) 예술인 고정효과	O	O
	(2수준) 단체 고정효과	X	O
	(2수준) 단체 임의효과	X	O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역시 조직인 예술단체와 개인인 예술인으로 삼고 있어 분석 단위가 복수라는 점에서 다층모형을 통한 추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일반적인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비교해 그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3-1]과 같다. 여기서 y_{ij}는 집단 j에 속한 개인 i의 종속변수라 하고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p는 관심 사건의 발생확률을 의미한다. 이때, 단체 특성을 절편에서만 고려하는지(random intercept model) 아니면 절편과 기울기 모두 고려하는지(random intercept and coefficient model)에 따라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모형만을 추정하고자 한다.

45) 예를 들어, 학생의 영어성취도는 학생 개인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동일 학교 내에 다니는 학생들의 영어성취도는 서로 상관을 갖는다. 학생들이 동일한 영어교사에게서 수업을 받을 뿐 아니라, 학교의 학업 분위기 등 수많은 요인을 공유하며 학습하고 서로 교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본의 대상인 모든 학생의 영어성적이 소속학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강상진, 2016: 77). 따라서, 학생과 학교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층모형을 통한 추정이 더 적절하다.

[식 3-1]

$$Y_{ij} = \log(\frac{p_{ij}}{1-p_{ij}})$$ **라고 할 때,**

1수준 모형 :

$$Y_{ij} = \beta_{0i} + \beta_{1j}(Artstatus)_{ij} + \beta_{2j}(ConFreq)_{ij} + \beta_{3j}(ConPeriod)_{ij}$$
$$+ \beta_{4j}(pay)_{ij} + \beta_{5j}(CareerBreak)_{ij} + \beta_{6j}(ArtInc)_{ij} + \theta(Ctr)_{ij}$$

2수준 모형 : $\beta_{0j} = \gamma_{00} + \gamma_{01}(EmpAdj)_j + u_{0j},\ \sim\ N(0,\tau)$

통합모형 :

$$Y_{ij} = \gamma_{00} + \gamma_{01}(EmpAdj)_j$$
$$+ \beta_{1j}(Artstatus)_{ij} + \beta_{2j}(ConFreq)_{ij} + \beta_{3j}(ConPeriod)_{ij}$$
$$+ \beta_{4j}(pay)_{ij} + \beta_{5j}(CareerBreak)_{ij} + \beta_{6j}(ArtInc)_{ij}$$
$$+ \theta(Ctr)_{ij} + u_{0j},\ \sim\ N(0,\tau)$$

단, Y= 겸업 행태

EmpAdj :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고용 축소 가능성)

ArtStatus : 종사상 지위

ConFreq : 계약 건수

ConPeriod : 계약 기간

Pay : 계약금

CareerBreak : 경력단절 횟수

ArtInc : 예술소득

Ctr : 예술 활동 특성, 가구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

2. 분석대상 및 분석 자료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요인으로 예술인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예술노동 수요 주체인 예술단체의 특성도 고려해야 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삼고 있는 예술인과 예술법인·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예술인과 예술단체 사이의 실제 계약관계에 기반한 자료를 활용해 그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겠지만,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 중에서 실제 특정 계약 건에 대한 계약 당사자인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특성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구축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노동시장의 공급자인 예술인에 대한 조사인 「예술인실태조사」와 수요자인 예술단체에 대한 조사인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를 활용해 재현자료(synthetic data)를 구축해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분석대상인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관계는 실제 계약관계를 맺은 쌍방이 아닌 일정 기준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단체와 예술인이다. 분석대상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 단년도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현황조사는 매해 시행되지만 예술인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주요 변수의 시간적 범위가 일치하는 2017년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46].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한 재현자료 구축 방법과 분석 자료의 특징은 다음에서 상술한다.

2) 분석 자료 구축

예술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와

46) 실제 조사년도와 조사 기준년도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한다. 시간적 범위인 2017년은 조사 기준년도를 말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조사년도는 2018년이다. 「예술인실태조사」는 2015년과 2018년에 시행되었다. 물론, 2015년 이전에도 3년 주기로 「예술인실태조사」는 시행되었지만 2015년 조사를 기점으로 조사표 구성과 표본 구성에서 변화가 있어 동일 조사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이 사용주-근로자가 결합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단체-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각각의 자료를 일정 기준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대상끼리 결합하여 일종의 사용주-근로자 위계 자료를 가상으로 구축하였다. 이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예술인) 자료는 「예술인실태조사」를, 사용주(예술법인·단체) 자료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를 활용하였다.

자료 구축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연계의 논리를 빌리지만, 본 연구는 개인-단체의 다수준을 가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데이터 연계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제약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크게 3가지를 고려해 분석 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논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데이터 연계(data linkage) 또는 데이터 매칭(data matching)은 서로 다른 복수의 자료를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공통변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개체 또는 유사한 개체를 결합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이다[47]. 일반적으로 데이터 매칭은 '개인-개인'처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수준이 다른 개인과 단체라는 점에서 동일 개체 또는 유사 개체 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통변수를 토대로 층화를 설정하고 최대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큰 개인과 단체를 매칭하였다. 여기서 공통변수로 예술활동 지역과 분야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예술인의 활동 지역과 활동 예술분야가 단체의 소재지와 활동 예술분야와 일치할 경우를 동일 층(strata)으로 설정하고, 동일 층(strata)에 존재하는 예술인과 단체를 매칭하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예술 분야를 하는 예술인과 단체가 계약(고용)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

47) 매칭 방법에 따라 '정확 매칭(exact matching)'과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서로 다른 데이터라도 식별정보를 활용하여 동일한 개체(same individual, family, event or place)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후자의 경우, 서로 다른 데이터에서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유사한 개체(similar individual, family, event or place)를 결합하는 방법이다. 통계적 매칭의 하나로 대표적으로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들 수 있다(Kum & Masterson, 2010).

문제는 동일 층 내에서 예술단체와 예술인이 무작위로 계약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층화추출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무작위층화추출의 적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층화(strata) 내에서 어떤 예술인과 어떤 단체를 매칭할 것인지 그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는 연계된 예술인-단체가 모집단 특성에 가깝게 하기 위해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동일 층화 범위 내에서도 계약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예술인과 단체를 매칭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예술인의 예술소득과 예술단체의 수입 규모를 각각 순위를 매기고, 동일 층화 내에서 수입 규모가 큰 예술단체와 예술소득 수준이 높은 예술인을 매칭하였다. 이는 수입 규모가 큰 예술단체일수록 높은 수준의 임금 지불 능력이 있고, 또 예술인 입장에서도 높은 수준의 임금에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예술인-예술단체의 1:1 매칭이 아닌 예술단체의 인력 규모에 따라 예술인을 가중 할당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종의 층화임의할당방식(Stratified Random Allocation)을 차용한 것으로 예술단체의 노동수요 규모를 고려해 매칭하고자하는 의도가 반영된다. 이상의 자료 구축 방식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7]과 같다[48].

[그림 17] 예술단체-예술인 자료 구조 예시

층(strata)	예술단체		예술인
	수입순위	인력 규모	소득순위
서울/공연	1	대	1
			2
			3
	2	중	4
			5
	3	소	6
서울/시각예술	1	대	1
			2
			3
	2	중	4
			5
	3	소	6

48) 층별 할당된 예술인과 단체 수는 [부록 표 8]에 제시하였다.

3. 변수 측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연구 1의 분석모형에 단체 특성을 추가로 고려한 것이다[49]. 따라서 여기서는 새롭게 추가된 단체 특성 변수에 대해서 상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단체 특성은 재정압박 상황에서 단체가 보일 수 있는 고용 축소 행태의 가능성이다. 이에 대한 측정값은 실제 관측값이 아닌 관측값을 기반으로 추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추정 모형과 추정방식에 따라 네 개의 추정값을 고용 조정 변수로 활용하였다[50]. 따라서 어떤 추정값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모형 역시 차별화된다. 다음 [표 21]는 추정된 모형과 추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추정된 값이 적용된 분석모형을 나타낸다.

[표 21]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 변수 추정방식

추정방식 / 모형	확률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 가능성 유무	$EmpAdj_{r1}$ (모형 1·3-1)	$EmpAdj_{f1}$ (모형 1·3-2)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 수준	$EmpAdj_{r2}$ (모형 2·4-1)	$EmpAdj_{f2}$ (모형 2·4-2)

49) 측정 방식에 따른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는 [부록 표 9]에 제시하였다.
50) 추정모형과 추정방식은 연구 2에서 살펴본 재정압박과 고용(인력)조정의 관계에 관한 모형과 동일하다.

제4절 분석결과

1.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겸업 여부

1) 기초모형 검증

예술인의 겸업 활동 여부에 미치는 예술조직의 영향을 살펴보기 앞서, 단순 로지스틱 분석 모형보다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 모형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1수준과 2수준의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절편만 포함한 기초모형을 검증하였다([표 22] 참고). 이는 '예술인의 겸업 활동 여부는 예술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검증하는 절차이다. 분석 결과를 나타낸 [표 22]는 기초모형을 통해 추정된 임의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 단순 로지스틱 모형과 다수준 로지스틱 모형 비교 결과, 그리고 집단내 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예술단체의 임의효과(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의 겸업 여부에 예술인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이들이 소속될 가능성이 큰 예술단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절편만 포함된 단순 로지스틱 모형과 다수준 로지스틱 모형 사이의 모형 적합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본 LR-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예술단체의 임의효과가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집단내 상관을 계산한 결과, 총 분산 중 예술조직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 비율은 52%로 나타났다[51].

[표 22] 가설 1의 기초모형 분석 결과

Parameters	Estimate (SE)	LR test	ICC
예술단체 수준 임의효과(τ)	3.630*** (0.71)	chibar2(01) = 256.42 Prob≥chibar2= 0.0000	0.52

51) 보통 5% 이상일 경우 군집화(clustering)가 필요하다고 본다(Heck et al., 2013).

2) 연구모형 검증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가 예술인 겸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표 23]과 같다[52]. 모형 (1-1)에서 모형 (2-2)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 조정 변수 측정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기본적으로 종속변수와 고용 조정 이외의 설명변수는 동일하다.

본 연구의 주 관심은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이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가설 1은 겸업 행태 가운데서도 겸업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서 2수준인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변수의 고정효과와 임의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예술단체 수준에서 고용 감축 변수의 고정효과는 모형 (1-2)와 (2-2)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고용 감축 가능성이 높은 예술단체와 관계를 맺는 예술인들이 그보다 고용 감축 가능성이 낮은 예술단체와 관계를 맺는 예술인들보다 겸업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단체 수준 임의효과를 살펴보면, 모든 추정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곧 예술단체별로 해당 단체와 관계를 맺은 예술인들의 평균 겸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은 예술단체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으나,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행태가 예술인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에 대한 검증 결과, 모형 (1-2)와 (2-2)에서만 지지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 특성을 고려했음에도 단체의 특성이 개인 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예측을 지지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겸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 1인 자영업 예술인보다 정규직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은 낮고, 비정규직과 기타 지위, 즉 정형화되지 않은

52) 지면상의 이유로 여기서는 주요 변수의 추정 결과만 제시하고, 전체 추정 결과표는 [부록 표 10]에 제시하였다.

종사상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인이 겸업할 가능성이 컸다. 이들 집단은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 1의 모형에서도 1인 자영업 예술인에 비해 겸업할 가능성이 컸던 집단이다.

계약 특성의 경우, 계약기간과 금액 변수가 겸업 가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건수는 모형(1-2)와 (2-2)에서 유의미하게 겸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횟수가 빈번할수록 겸업할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예술소득의 불안정성 역시 겸업 가능성을 키웠으며, 이 또한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재정압박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가능성 수준은 해당 예술단체와 계약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큰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러한 예술단체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계약 특성을 제외하고 예술인이 처한 불안정 예술노동 특성 역시 여전히 겸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odds ratio)

DV = 겸업 여부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EmpAdj_{r1}$	$EmpAdj_{f1}$	$EmpAdj_{r2}$	$EmpAdj_{f2}$
고정효과							
[2수준] : 예술단체							
단체 행태	고용 축소 (인력 감축)			2.993 (2.46)	**29.021**** **(45.65)**	1.656 (0.97)	**17.862**** **(23.63)**
[1수준] : 예술인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종사상 지위 (ref. 1인 자영업자)	정규직	**0.184***** (0.06)	**0.161***** (0.06)	**0.185***** (0.06)	**0.163***** (0.07)
			사용주	0.633 (0.20)	0.707 (0.29)	0.638 (0.20)	0.691 (0.29)
			비정규직	**2.025***** (0.36)	**2.024***** (0.44)	**2.025***** (0.36)	**2.047***** (0.45)
			기타	**1.520*** (0.34)	1.461 (0.39)	**1.528*** (0.34)	1.478 (0.39)
		계약 특성	계약 건수	1.007 (0.01)	**1.032***** (0.01)	1.007 (0.01)	**1.031***** (0.01)
			계약 기간	0.996 (0.03)	1.001 (0.03)	0.995 (0.03)	1.001 (0.03)
			계약 금액	0.94 (0.07)	1.044 (0.10)	0.941 (0.07)	1.045 (0.10)
		경력단절 횟수		**1.247***** (0.08)	**1.314***** (0.11)	**1.246***** (0.08)	**1.307***** (0.11)
	소득 불안정 (ref. 상대적 빈곤선 초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14.861***** (3.16)	**15.339***** (4.05)	**15.028***** (3.20)	**15.309***** (4.03)
예술 활동 특성				Y	Y	Y	Y
가구 특성				Y	Y	Y	Y
인구사회학적 특성				Y	Y	Y	Y
임의효과							
예술단체 수준 임의효과(τ)				**2.484***** (0.72)	**2.348**** (0.80)	**2.486***** (0.72)	**2.354**** (0.80)
Constant				0.617 (0.39)	0.353 (0.26)	0.73 (0.44)	0.366 (0.27)
N of obs				1,771	1,220	1,771	1,220
N of groups				372	265	372	265
ll(model)				-816.50	-551.30	-817.03	-551.07
ICC				0.22	0.21	0.22	0.21
LR test vs. logistic model:			chibar2(01)	31.47	15.68	31.01	16.19
			Prob >= chibar2	0.00	0.00	0.00	0.00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2.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겸업 유형

1) 기초모형 검증

앞서 예술인의 겸업 활동 여부에 대한 기초모형 검증 논리와 마찬가지로 예술인의 겸업 유형에 미치는 예술단체의 영향에 관한 기초모형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24]와 같다.

먼저, 예술단체의 임의효과(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예술인의 겸업 유형에 예술인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예술단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절편만 포함된 단순 로지스틱 모형과 다수준 로지스틱 모형 사이의 모형 적합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본 LR-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다수준 로지스틱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한편, 예술단체의 임의효과가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얼마만큼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집단내 상관계수(ICC)를 계산한 결과, 총 분산 중 예술단체 간 차이로 설명되는 분산 비율이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가설 2의 기초모형 분석 결과

Parameters	Estimate (SE)	LR test	ICC
예술단체 수준 임의효과(τ)	0.788*** (0.27)	chibar2(01) = 31.32 Prob≥chibar2= 0.0000	0.19

2) 연구모형 검증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가 예술인 겸업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25]이다[53]. 여기서 겸업 유형은 예술계 내에서 일하는 동종 겸업과 예술계 밖에서 일하는 이종 겸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53) 지면상의 이유로 여기서는 주요 변수의 추정 결과만 제시하고, 전체 추정 결과표는 [부록 표 1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2수준인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변수의 고정효과는 모형 (3-2)와 (4-2)에서 이종 겸업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변수가 예술인의 이종 겸업 확률에 있어서 예술단체의 평균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가설 2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예술단체 수준의 임의효과는 모든 추정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단체의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은 모형 (3-1)과 (4-1)의 추정 결과는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에 예술단체가 미치는 영향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다만, 추정 결과가 모형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가능한 설명으로 예술인이 예술단체와 맺는 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인 한 명이 여러 예술단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행태는 소득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감소한 소득 분 만큼을 보완하기 위해 겸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예술단체와의 관계 축소가 곧 예술인이 예술계 밖에서 부업을 찾을 정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즉, 특정 예술단체 한 곳에 종속되기보다는 여러 예술단체와 협업하는 예술인의 작업 방식을 고려했을 때, 한 예술단체에서의 고용 축소가 곧바로 예술계 내에서의 모든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인의 복수 계약 특성이 본 연구 자료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이러한 설명의 가능성까지 확인해 보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예술인이 하나의 예술단체와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자료 보완을 통해 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종 겸업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요인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 1인 자영업 예술인보다 기타 지위, 즉 정형화되지 않은 종사상 지위에 놓여 있는 예술인이 이종 겸업할 가능성이 컸다. 비정형 종사상 지위에 있는 예술인의 경우 겸업할 가능성도

컸던 집단이다. 또, 앞서 종사상 지위별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았을 때도 1인 자영업 예술인 집단과 유사하거나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더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모형 (3-1), (4-1)과 같이 일부 모형에서만 나타났다.

계약 특성 측면에서는 계약 건수가 많고 기간이 길수록 이종 겸업의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예술노동 시장에서 일할 기회를 많이 잡을수록 또는 긴 호흡의 프로젝트에 참여할수록 예술계 내에서 또 다른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경력단절 횟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불안정성은 여전히 이종 겸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25]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odds ratio)

DV = 겸업 유형(base. 동종 겸업)				모형 3-1	모형 3-2	모형 4-1	모형 4-2
				$EmpAdj_{r1}$	$EmpAdj_{f1}$	$EmpAdj_{r2}$	$EmpAdj_{f2}$
고정효과							
단체 수준							
단체 행태	고용 축소 (인력 감축)			0.865 (0.78)	**15.105** (20.60)	1.762 (1.10)	**5.904** (5.92)
개인 수준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종사상 지위 (ref. 1인 자영업자)	정규직	0.624 (0.39)	0.376 (0.31)	0.627 (0.39)	0.38 (0.32)
			사용주	1.271 (0.65)	1.134 (0.72)	1.24 (0.64)	1.113 (0.71)
			비정규직	1.127 (0.29)	0.842 (0.26)	1.128 (0.29)	0.866 (0.27)
			기타	**1.894** (0.55)	1.486 (0.52)	**1.869** (0.54)	1.547 (0.53)
		계약 특성	계약 건수	**0.873** (0.03)	**0.855** (0.04)	**0.874** (0.03)	**0.853** (0.04)
			계약 기간	**0.832** (0.05)	**0.723** (0.06)	**0.834** (0.05)	**0.720** (0.06)
			계약 금액	0.959 (0.11)	1.099 (0.18)	0.956 (0.11)	1.093 (0.18)
		경력단절 횟수		1.007 (0.05)	1.011 (0.09)	1.006 (0.05)	1 (0.09)
	소득 불안정 (ref. 상대적 빈곤선 초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4.209** (1.29)	**3.141** (1.23)	**4.091** (1.24)	**3.200** (1.25)
예술 활동 특성				Y	Y	Y	Y
가구 특성				Y	Y	Y	Y
인구사회학적 특성				Y	Y	Y	Y
임의효과							
예술단체 수준 임의효과(τ)				1.255 (0.20)	1.3 (0.27)	1.234 (0.20)	1.278 (0.27)
Constant				0.701 (0.61)	1.069 (1.24)	0.605 (0.52)	1.185 (1.37)
N of obs				877	604	877	604
N of groups				308	220	308	220
ll(model)				-424.34	-286.14	-423.94	-286.61
ICC				0.06	0.07	0.06	0.07
LR test vs. logistic model:			chibar2(01) Prob >= chibar2	4.16 0.02	3.49 0.03	3.10 0.04	2.95 0.04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제5절 소결

마지막 연구의 목적은 예술단체의 조정행태가 예술인 개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그동안 예술인의 취약한 소득 지위에 대한 논의는 과잉공급, 수요의 불확실성 등과 같은 시장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취약한 소득 지위와 관련해 예술인의 겸업 행태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예술인 겸업 행태에 주목하였고, 이와 관련해 불안정 노동의 논의를 빌려 불안정 노동을 경험하는 예술인 개인적 특성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행태는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에 있어 예술단체 수준의 임의효과가 유의미하고, 고용 감축 변수의 고정효과 역시 일부 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예술인의 겸업 유형에 있어서는 예술단체 수준의 임의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일부 모형에서 고용감축 변수의 고정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행태가 예술인의 이종겸업 가능성을 증가시킬 개연성을 확인하였다. 물론,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행태가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완전한 고용관계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예술노동시장의 프로젝트 위주의 작업 방식과 이 프로젝트팀이 주로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술단체와 특정 예술인의 고용관계는 단절과 회복을 반복하는 형태일 수 있다. 특정 예술단체와 특정 예술인의 관계가 유지된 상황에서 고용관계가 단절과 회복을 반복하는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 그러한 관계가 더 강화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예술인의 불안정 노동과 어떤 관련을 맺고 겸업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향후 추가적으로 다뤄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술인 입장에서 단절과 회복의 반복 역시 고용의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반복을 결정하는 주체는 주로 예술단체와 같은 고용주에게 있다는 점이다.

제7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예술인은 왜 겸업을 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에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기존 논의가 직업적 위험에 대한 예술인의 자구책 중 하나로 겸업을 설명하는데 그쳐 지나치게 예술인 개인 차원의 문제로 한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정된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관계가 불안정 예술노동의 확산과 대응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예술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들 행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예술인 개인 수준, 예술단체 조직 수준, 개인과 조직 수준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수준(multilevel)으로 구분해 세 가지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는데, 각각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는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에 관한 기존 논의를 불안정 노동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예술노동시장 안에서 예술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예술인실태조사」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정 노동이 겸업 여부와 그 유형에 미치는 방식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들을 예술계 밖에서 일자리를 찾게 했다. 고용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기타 지위 예술인들이 전업보다 겸업을, 겸업 중에서도 이종 겸업을 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 계약 특성을 계약 건수, 기간, 금액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예술계 내부에서의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겸업을 할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특히나 동종 겸업할 가능성을 키졌다. 한편, 계약금이 클수록 겸업의 가능성은 감소하였고, 겸업

예술인 중 예술계 내에서 맺어진 계약 기간이 긴 예술인일수록 동종 겸업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한 소득 역시 예술인을 예술계 밖으로 밀어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소득이 낮은 경우 겸업의 가능성과 이종 겸업의 가능성이 모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은 예술단체의 행태가 예술인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예술단체의 행태 자체를 구체화하고자 재정압박 상황에서 예술단체가 보일 수 있는 조정행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고용과 임금 조정으로 구분해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재정압박 중에서도 내부 운영으로 인한 수입, 지출의 압박보다 정부 정책이 지출압박으로 작용해 예술단체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술인의 사회적 위험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도출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매년 실시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의 원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이 있을 때, 예술단체가 양적 측면에서 고용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의 수준이 커질수록 축소의 가능성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이 비정규직 규모 조정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 방식에 따라 그 추정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달라졌다.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 가능성 유무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조정은 고정효과 추정 모형에서만 유지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예상 지출압박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예술단체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으로, 정책에 의한 지출압박이 예술단체의 임금 조정행태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결과, 확률효과 모형에서만 임금 인상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수입 구조하에서 기존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축소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을 축소한 결과, 소수의 정규직 인력만이 남게 되고 이로써 평균 임금

은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는 예술단체의 조정행태가 예술인 개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예술단체와 예술인 특성이 함께 수집된 실제 자료의 부재(不在)로 본 연구는 「예술인실태조사」와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현황조사」의 원자료를 결합하여 재현자료로 구축하였고, 이를 활용해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한 다수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예술단체의 고용 조정행태, 구체적으로는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이 클수록 예술인 겸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예술인이 처한 개별적 불안정 노동 상태와 인적 자본을 고려한 상황에서도 그 영향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는 재정압박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조정행태가 예술인에게도 영향을 미침을 의미하며, 결국 예술단체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술인에게도 전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예술단체의 고용 감축 가능성 역시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추정하는 단계에서 고정효과를 가정해 추정한 고용 감축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의의

1. 이론적·방법론적 의의

본 연구 결과의 의의는 이론적, 방법론적 차원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이론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겸업 행태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겸업에 관한 기존 논의가 '어떤 사람이 겸업하는가?' 또는 '왜 겸업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머무르지만, 본 연구를 통해 '어떤 사람이 왜 동종업계보다 이종업계에서 겸업할 가능성이 큰가?'와 같은 질문으로 확장하고 겸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그동안 예술인의 부업은 비예술 시장으로만 한정된 경향이 있었는데(Throsby, 1994), 이러한 관점은 예술인의 부업이 예술계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경력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예술경력이 아닌 소득 창출의 수단으로 비예술계에서 부업할 경우 예술인에게는 경력 형성 자체가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 즉, 겸업 유형의 특성이 주업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겸업 행태의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겸업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예술인에게 겸업의 이중적 의미를 고려하고,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대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는 겸업 행태에 관한 기존 논의가 특정 조직에 미치는 긍정, 부정적 영향을 넘어서 근로자 개인의 경력 형성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로 확장되고 있는 이론적 흐름(Campion, 2018)을 예술노동시장에서의 겸업 행태를 이해하는데 확장하여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관련해서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역시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착취적인 특성 자체 또는 그로 인한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을 넘어 부업으로 삼는 노동과 예술노동의 상호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는데(Lindström, 2016), 본 연구는 국내 사례를 살펴보고 논의의 외적

타당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이론적 의미가 있다.

둘째, 예술단체의 예산제약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재정압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수입압박과 지출압박으로 구분해 동시에 고려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술단체의 재정과 관련해서 기존 논의는 수입 측면의 재정압박에 주로 관심을 두고, 이를 심화하는 요인 또는 완화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재정압박은 수입 측면 이외에도 지출 측면의 재정압박이 존재하고, 한정된 재원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정 자원을 분배하는지에 따라 예술단체가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 또는 반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재정압박 개념이 예술단체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예술단체의 조직행태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보이는 예술단체의 고용·임금 조정행태에 주목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근로자에 대한 통제력 강화를 위한 사용주의 의사결정이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기존 논의의 적용 가능성을 보였다. 동시에, 예술단체의 재정압박이 기관 차원의 예술적·재정적·운영적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기존 논의의 범위를 넘어 예술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즉 노동수요 축소의 가능성을 실증 분석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논의 범위의 확장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는 그동안 예술인의 취약한 경제적 지위에 관해 빈번하게 다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예술인의 겸업 행태를 직업적 특성으로만 이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술노동시장에서 예술인이 보이는 겸업 행태가 직업적 또는 시장적 특수성에 의한 개인 행태로만 이해되기보다는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에 기

반한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다층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지출압박으로 인한 예술단체의 고용감축 행태가 예술인의 겸업 여부와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우선, 앞서도 언급했듯이 예술인 겸업 행태에 대해 시장적 특수성 또는 개인의 위험관리 방식 중 하나로 이해하려는데 그친 기존 논의를 예술노동시장의 행위자 행태 차원에서 중범위 논의로 재구조화하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사회학에서 논의된 예술 생산체계 관점을 이론적 분석틀로 차용해 예술단체-예술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모형화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불안정 노동 논의를 토대로 예술노동의 불안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기존 논의의 한계 또한 이론적 의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불안정 노동의 한 차원인 불안정 고용을 이해하는 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종사상 지위이며, 이때 기존 논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할 때,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형태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비정규직과 용역(도급)계약이 만연한 예술노동시장의 불안정 고용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다. 즉, 예술노동시장의 사례를 통해 불안정 고용을 이해하는 기존 방식이 비정규직을 넘어 비정형 고용 형태가 만연한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불안정 노동에 대한 기존 논의의 범위 확장 또는 관점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제기한다. 특히, 본 연구가 단일 계약의 영속성보다는 다중 계약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비정형 노동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계약 특성과 경력단절 요인을 고용 불안정성을 측정하는데 고려한 점은 논의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분석 단위(예술단체와 예술인)의 개별적 자료를 통합해 새로운 재현자료(synthetic data)를 구축하고, 자료의 위계적 특성

을 고려해 다층분석을 진행했다는 데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재현자료 구축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정확매칭이나 확률매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층화임의할당방식(Stratified Random Allocation)을 차용해 계약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매칭하였다. 이는 기존의 자료 매칭이 주로 공통변수를 기준으로 동일 분석 수준의 동일 개체 또는 유사 개체를 결합하는데 적용되었다면, 본 연구는 분석 단위가 다른 개인과 단체를 결합해 위계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차용한 층화임의할당방식은 활동 지역과 활동 예술분야를 공통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층(strata)을 나누고, 동일 층에 존재하는 예술인과 단체를 각각의 소득(매출)로 정렬해 할당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재현자료 구축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의 범위와 이론적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또, 이러한 위계적 자료를 활용해 다수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위계적 관계가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일반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가 처할 수 있는 시장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일반적이지만, 예술노동시장의 경우 고용 보호를 위한 정책의 부재로 시장이 유발하는 경제적 위험을 예술인 개인적 차원에서 겸업을 통해 다뤄온 상황에 본 연구는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술노동시장에서 만연한 겸업 행태에도 불구하고, 예술분야의 직업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는 기존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예술 생산체계 관점에서 예술인 또는 작품에 대한 선별 기능을 담당하는 분배체계의 주요 행위자인 예술단체(조직)의 행태가 예술노동시장의 위험에 대응하는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특히, 예술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예술단체의 고용·임금 조정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용보호의 취지로 설계된 정책으로 인해 예술단체가 부담하게 될 추가적 지출압박에 주목함으로써, 기존 예술 생산체계의 상황과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정책 비용 부담이 가져올 수 있는 노동 수요 축소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예술지원정책 차원과 노동정책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예술지원정책 차원에서는 정책 대상을 예술인, 예술단체로 구분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술 생산체계(또는 예술 생태계) 차원에 대한 포괄적·연계적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예술지원정책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으로 분절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로 예술단체를 주 대상으로 삼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예술인을 주 대상으로 삼는 예술인복지재단으로 구분되어 전달되는 지원체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원정책의 대상을 예술인 개인으로 설정하더라도 실제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예술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이 속한 예술노동시장, 구체적으로는 사용주인 예술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 특히,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이전의 방식과 달리 정책순응 비용 부담에 대한 분담이 이루어지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와 같이 예술단체에게 지출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은 예술단체의 조정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결국 예술인에게 귀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본 연구 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본래 정책 의도와 다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결정단계는 물론이고 정책 평가 단계에서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예술지원정책이 예술노동시장의 개별 행위자가 아닌 예술 생태계 관점에서 행위자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려한다고 할 때, 예술노동시장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예술단체의 행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장하자

면 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예술단체의 의미와 역할을 정책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상술하면, 기존 문화정책 영역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어떻게 정책이 지원되는가'와 같은 지원체계 또는 전달체계 중심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지만, 본 연구는 '지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흡수되는가'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 역시 중요함을 제기한다. 특히, 정책분석과 평가 측면에서 관심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근 예술지원정책은 단순히 예술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로서의 지위 인정 및 예술인 삶의 질 향상 등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도 날실과 씨실처럼 겹쳐져 정책의 복잡성이 가중된 상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정책간의 정합성 또는 상보적 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의 차별적 효과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정책효과 역시 두 개의 집단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예술인의 잦은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 역할을 하더라도 예술단체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세거나 예술계에서 이미 평판과 경력이 구축된 숙련 예술인을 위주로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예술단체가 고용을 축소하는 대상이 미숙련 예술인에게 집중될 개연성이 크고, 결국 예술노동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정책 비용의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서 1인 자영업 예술인 집단보다 평균 연령이 낮고 입문연도가 비교적 최근인 예술인의 비중이 컸던 비정규직 그리고 기타 지위에 속하는 비정형 고용 지위의 예술인 집단이 겸업의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이 큰 이종 겸업할 확률이 1인 자영업 예술인에 비해 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고용보험제도와 달리 현행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서는 빠져있는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신진 예술인이 실업기간에도 발생하는 교육 또

는 생활비의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확률이 큰 이종 겸업으로 인한 경력 형성 등과 같은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예술노동과 예술인의 겸업 행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예술노동시장의 메커니즘에 주목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예술지원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술노동의 특성은 노동 형태의 스펙트럼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고숙련(high-end) 노동자의 경우 노동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wage) 중심의 정규직 고용 형태를 띠는 반면, 저숙련(middle, low-end) 노동자는 주어지는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piece-rate)으로 구분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는데, 최근 숙련도와 관계없이 비정규직·비정형 고용과 일감(task) 중심의 임금체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프리랜서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애초에 오랜 시간동안 그러한 노동 특성을 보인 예술노동시장의 메커니즘과 이에 대응하는 주요 행위자인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행태는 플랫폼 노동 등과 같은 신흥 노동형태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세 가지 연구 각각이 갖는 한계와 이를 통해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4장에서 수행한 연구 1은 횡단면 자료 활용으로 인과적 추론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내생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종사상 지위가 겸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외에도 예술직업을 부업의 일종으로 삼고자 1인 자영업이나 비정규 형태의 종사상 지위를 선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예술인의 겸업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고려할 때 그러한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정경운(2019)의 연구에서 예술직업만으로는 생계비와 작업비 모두 충당할 수 없고 예술인의 1년 생활 패턴이 크게 휴지기(1~2월)-준비기(3월)-활동기(4~12월)로 구분되어 휴지기에는 '활동기'에 비축한 수입을 나누어 생활을 유지하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한다는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예술인 스스로가 불안정한 노동 성격을 갖는 비정규직 또는 1인 자영업 지위를 선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는 예술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구 조사 자료로 「예술인실태조사」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 적절한 분석 자료를 확보하는데 선택지가 없었다. 따라서 향후 예술인의 노동환경과 경력 형성 과정에 대한 패널 자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겸업 속성을 예술시장과 비예술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으로 구분할 뿐, 부업의 직업적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히나 장르별로 예술직업의 근로 시간대와 근로시간 양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는 또 예술직업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부업의 노동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술인실태조사에서는 겸업 예술인을 대상으

로만 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묻고 있어 현재로서는 예술인의 시간 사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겸업 유형을 넘어 겸업에서의 노동 형태 및 직업적 특성이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겸업이 불안정 노동속성을 유지한다면, 이것이 주업인 예술노동의 지속성과 역량계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덧붙여, 겸업에 대한 예술인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논의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겸업 활동의 동기는 대부분 소득 창출에서 기인하지만, 겸업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말 생계비 마련이라고 여길 수 있고, 아니면 이전 작품과 새롭게 시작할 작품 사이의 견디는 시간 또는 준비의 시간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역량 또는 경력 계발이라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의 겸업 행태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직업 정체성 측면에서 겸업 여부 혹은 겸업 유형에 따라 정체성의 긴장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도 추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예술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술로서의 예술과 직업으로서 예술,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직업 사이에서 정체성 분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연구(이강진, 2015)[54]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겸업 유형에 따라 예술인이 겪는 정체성 분화 과정과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그 반대로 예술인이 겪는 정체성 분화 과정에 따라 예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겸업의 유형이 달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예술인 행태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겸업의 의미와 직업 정체성 차원에서 예술인의 주관적 인식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54) 이강진(2015)은 부업을 가진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가난한 예술인'으로 남지 않겠다는 의지로 문화산업 내에서 추가로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순수 예술계에서는 주변부로 남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자신이 가진 예술적 재능을 어떻게 생계와 연결할지 고민한 끝에 얻어낸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만족감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 수행한 연구 2의 한계로 먼저, 정책으로 인한 지출압박의 측정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예술인고용보험료 부담 가능성과 수준은 관찰값이 아닌 가설적 상황을 가정한 값이다. 따라서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예술단체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미시 자료 구축을 통해 본 연구모형의 현실 적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예술단체의 조정행태 변화가 지출압박 변수보다 전년도 변화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일종의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 문제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조정행태를 측정하는 방식을 조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출압박 변수의 영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55].

제6장에서 수행한 연구 3의 한계로 예술단체-예술인의 다수준 자료가 실제 수집 자료가 아닌 재현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예술인고용보험제도로 인한 예술단체의 행태, 그리고 고용 또는 도급계약에 기반한 예술단체-예술인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해석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또, 예술단체의 조정행태를 실제 관측값이 아닌 추정값으로 측정했다는 점 역시 해석의 범위를 제약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술노동시장에 미치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추정했다는 해석과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이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술노동시장의 기존 메커니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가로 요구되는 정책 비용부담이 이해관계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과 그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모형화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정교화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향후 예술단체와 예술인 관계를 고려한 구체적인 자료 구축과 축적으로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효과를 산출(output) 수준의 지표인 보험가입자 수, 실업급여 수급자 수에

55) 자세한 내용은 [부록 표 12]~[부록 표 15]에 기재하였다.

서 측정하기보다 경제적 위험에 대한 자구책인 겸업의 필요성을 낮추는데 기여했는지 또는 예술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과 같은 정책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술노동시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결과들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상진.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고길곤. (2018). *범주형 자료 분석*. 경기: 문우사.

국회예산정책처. (2020). *사회보장정책 분석Ⅲ(고용)*.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김민지, & 박용호. (2019). 잡 크래프팅에 관한 통합적 문헌 고찰: 국내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1), 234-246.

김수영, 하은솔, & 김영. (2020).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다차원적 고찰: 자발적 비정형 노동자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사회정책*, 27(1), 89-127.

김언수, & 김재욱. (1997). 다운사이징: 경영전략적 관점에서의 해석. *경영학연구*, 26(3), 723-750.

김유선. (2015). *한국의 노동 2016*. 서울: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정수. (2015. 2. 16). 이상한 나라의 뮤즈. 〈웹진 아르코〉. 「문화정책 이슈」, 279호. (Available at: http://webzine.arko.or.kr/load.asp?subPage=10.View&searchCate=10&pageType=List&page=1&idx=355)

김진. (2020). *한국 지방 공기업의 비대칭적 원가 행태에 관한 연구*. 서울: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남황우. (2013). 지방재정 압박의 원인과 대응방안;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세입 면에서의 대응방안. *지방재정*, 2013(6), 8-25.

박나리, & 김교성 (2021). 청년 불안정성의 궤적과 유형: 20대 청년의 고용, 소득, 부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3), 45-74

박제성, 김근주, 신수정, 오상호, &최석환. (2016).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외국법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서우석, & 이경원. (2019).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정책적 이해: 예술인 복지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3(1), 213-241.

서정희. (2015).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 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노동정책연구,* 15(1), 1-41.

손아람. (2017.3.4.). 문화예술계 나쁜 관행, 법의 구멍을 막아라, *경향신문.*(Available at: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3041441001#c2b)

신유호, & 최정우.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65-94.

양승엽. (2018). 프랑스의 고용보험 개정 내용: 보편주의로의 확대. *사회보장법학,* 7(2), 9-42.

양종민, 김서경, & 권현지. (2019). 어떤 대중음악가들이 지속적 예술활동을 전망하는가?: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사회자본의 효과. *노동정책연구,* 61-92.

양혜원, & 차민경. (2018).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 기초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양혜원 외. (2020).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오호영. (2015).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옥다애, & 정필주. (2017). 문화예술계 SOS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미술세계*, 55, 168-171.

윤정향. (2008). 서비스사회화와 서비스노동운동. *서비스 사회의 구조변동*. 한울

이강진. (2015). '직업 예술인'의 정체성-복수의 직업 정체성을 지닌 예술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영상학회논문집*, 13(3), 181-195.

이경희, & 민인식. (2018). 아동수당이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활용. *조사연구*, 19(2), 25-49.

이동연. (2015). 예술노동의 권리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예술행동. *문화과학*, 84, 62-104.

_____. (2018). *예술@사회,* 서울: 학고재.

이상규. (2018). *디지털 창의 노동자는 어떻게 불안정성에 대응하는가?.* 서울: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성균. (2004).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동*.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이슬기, & 금현섭. (2017). 예술인의 소득 지위와 격차. *예술경영연구*, 41, 5-36.

이슬기. (2020).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전문 공연예술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4*(3), 95-120.

이승윤, 백승호, & 김윤영. (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서울: 후마니타스.

이승윤, 이정아, &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이주예, 김종업, & 정철현. (2014). 문화예술단체의 조직역량과 자원획득에 관한 연구: 공연예술단체와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8(1), 9-32.

이화득, & 이재훈. (2001). 인력감축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연구,* 16, 187-210.

임용빈, & 최형재. (2017). 부업 참여 및 부업 근로시간의 결정요인: 기혼자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40(2), 31-68.

임성일. (2001). 지방재정의 압박현상과 대응방안. *지방재정*, 2001(1), 109-132.

장지연, & 양수경. (2007).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 7(1), 1-22.

정경운. (2019). 예술지원정책이 지역 예술생태계에 미친 영향 연구—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66), 1-36.

정성미. (2017). 부업을 하는 사람들의 현황과 특징. *노동리뷰*, 51-67.

정은미. (2018). 뮤지컬 제작 및 유통에서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8(1), 73-84.

정이환. (2003).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한국노동경제논집,*9(1), 71-105.

_____. (2004). 서비스산업화와 노동의 변화. *한국사회학,*38(4), 159-186.

정필주. (2016). 예술가를 예술가로 부르는 것부터. *미술세계*, 95-98.

차민경. (2020).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동길, 전병준, & 박찬희. (2011). 국내 공연산업의 수익구조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18, 5-34.

최보연, & 안채린. (2017). 창의노동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술경영연구,* 42, 65-102

최석환. (2019). 멀티잡 종사자의 노동법적 규제. *노동법연구,* 47, 213-248.

최웅선, & 최서연. (2018). 재정압박에 대한 지방정부의 세입반응 분석: 시·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2), 95-122.

최진이. (2005).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로지스틱 다층모형의 경험적 비교*. 서울: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최형재, & 임용빈. (2020).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부업참여를 촉진시켰는가.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Available at : https://www.kli.re.kr/klips/selectCnfrncWebView.do?key=155&cnfrncNo=34)

탁현우. (2015). *일자리사업의 복지의존에 관한 연구.* 서울: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허명순. (2011).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6(1), 177-210.

허식, & 사명철. (2011). 문화예술분야에서 고용형태 결정 및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제조업인력과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1*, 77-95.

허은영. (2020). *예술인고용보험제도 운영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홍철규. (2010). 산업수준 요소들이 판매비와관리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5(4), 133-162.

홍철규, & 정준희. (2014). 인건비 변화행태와 경영자의 통제수단; 흑자, 적자기업의 비교. *회계학연구,* 39(4), 39-75.

황덕순 외 (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황준욱. (2009). 프리랜서 노동 특성과 정책대응. *노동리뷰*, 54, 55-66.

Abbing, H. (2002). *Why are artists poor? The exceptional economy of the art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Abdukadir, G. (1992). Liquidity constraints as a cause of moonlighting. *Applied Economics*, 24(12), 1307-1310.

Alper, N. O., & Wassall, G. H. (2006). Artists' careers and their labor market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1, 813-864.

Alexander, V. D. (2003). *Sociology of the Arts: Exploring Fine and Popular Forms*. 최샛별, 한준, & 김은하 역. (2010). *예술사회학: 순수예술에서 대중예술까지*(최샛별 외, 역). 파주: ㈜살림출판사.

Anderson, M. C., Banker, R. D., & Janakiraman, S. N. (2003). Are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stick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1), 47-63.

Anderson, S. W., & Lanen, W. N. (2007). Understanding cost management: what can we learn from the evidence on 'sticky costs'?. Available at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975135

Appelbaum, E., & Batt, R. (2014). *Private equity at work: When wall street manages main street*. Russell Sage Foundation.

Atherton, A., Faria, J. R., Wheatley, D., Wu, D., & Wu, Z. (2016). The decision to moonlight: does second job holding by the self-employed and employed differ?. *Industrial Relations Journal*, 47(3), 279-299.

Atkinson, J. (1984). Manpower strategies for flexible organisations. *Personnel management,* 16(8), 28-31.

Atkinson, J., & Meager, N. (1986). Changing Working Patterns: How companies achieve flexibility to meet new needs. *Institute of Manpower Studies,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Office, London.*

Baccaro, L., & Howell, C. (2011). A common neoliberal trajectory: The transform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in advanced capitalism. *Politics & Society,* 39(4), 521-563.

Barbier, J. C. (2004). A comparative analysis of 'employment precariousness' in Europe. *Learning from employment and welfare policies in Europe, European Xnat Cross-national research papers,* Seventh series, 7-18.

Barbier, J. C. (2005).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a channel for activating social protection?.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in action,* 417-445.

Baumol, W. and Bowen, W. (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A Study of Problems Common to Theater, Opera, Music and Dance*, NY: The Twentieth Century Fund.

Baumol, W. and Baumol, H. (1985a) The future of the theatre and the cost disease of the Arts. *Baumol's Cost Disease: The Arts and other Victims(pp.195-212)*, UK: Edward Elgar.

_____. (1985b) On the cost disease and its tru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rts, *Baumol's Cost Disease:The Arts and other Victims(pp. 213-224)*, UK: Edward Elgar.

Becker, H. S. (1982). *Art Worlds.* Univ of California Press.

Bell, D., Hart, R. A., & Wright, R. E. (1997). Multiple job holding as a 'hedge' against unemployment.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Discussion Papers No. 1626.*

Benassi, C., & Kornelakis, A. (2020). How Do Employers Choose between Types of Contingent Work? Costs, Control, and Institutional Toying. *ILR Review*. (Available at: https://doi.org/10.1177/0019793920944910)

Benhamou, F. (2000). The opposition between two models of labour market adjustment: The case of audiovisual and performing arts activities in France and Great Britain over a ten year period.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4*(4), 301-319.

Benghalem, H. (2017). Strategic bunching at eligibility notches: Evidence from the arts workers' UI scheme in France. Working in progress. (Available at: http://conference.iza.org/conference_files/SUM_2017/benghalem_h24747.pdf)

Blair, H. (2001). 'You're only as good as your last job': The labour process and labour market in the British film industry.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5(1), 149-169.

BLS (2015, April) Multiple jobholding over the past two decades, *Mothly Labor Review.* (Available at: https://www.bls.gov/opub/mlr/2015/article/pdf/multiple-jobholding-over-the-past-two-decades.pdf)

Bille, T., & Jensen, S. (2018). Artistic education matters: survival in the arts occupation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42(1), 23-43.

Böeim, R., and M. P. Taylor. (2004). And in the Evening She's a Singer in the Band: Second Jobs, Plight or Pleasure?. *IZA Discussion Paper No. 1081.*

Bosch, G. (2004). Towards a new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n Western Europ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42*(4), 617-636.

Briskin, L. (2009). Cross-constituency organizing: A vehicle for union renewal. *Unions, equity, and the path to renewal*, 137-156.

Bronfenbrenner, K., & Luce, S. (2004). The changing nature of corporate global restructuring: The impact of production shifts on jobs in the US, China, and around the globe. (Available at: https://ecommons.cornell.edu/bitstream/handle/1813/73140/cornell_u_mass_report.pdf?sequence=1&isAllowed)

Bystryn, M. (1978). Art galleries as gatekeepers: the case of the abstract expressionists. *Social Research*, 390-408.

Campion, E. D. (2018). *Motivated to work several jobs: The enrichment and depletion of multiple jobholding*. Dissertation

Casacuberta, C., & Gandelman, N. (2012). Multiple job holding: the artist's labour supply approach. *Applied Economics,* 44(3), 323-337.

Cascio. W. F. (1993). Downsizing: What do We Know: What have we learned?.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7(1). 95-104

Caves, Richard E. (2000). *Creative Industries: Contracts Between Art and Commer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hen, C. X., Lu, H., & Sougiannis, T. (2012). The agency problem,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symmetrical behavior of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cos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9(1), 252-282.

Chen, V. T. (2015). *Cut loose: Jobless and hopeless in an unfair econom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ohen, N. S. (2015). Cultural work as a site of struggle: Freelancers and exploitation. *In Marx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Media* (pp. 36-64). Brill.

Collins, J. L. (2003). *Threads: Gender, labor, and power in the global apparel indust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nen, W. (2020). *Multiple jobholding in Europe: Structure and dynamics*(No. 20). WSI Study. (Available at: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225443/1/wsi-study-20.pdf)

Conway, K. S., & Kimmel, J. (1998). Male labor supply estimates and the decision to moonlight. *Labour Economics,* 5(2), 135-166.

Coontz, S. (2006). *Marriage, a history: How love conquered marriage*. Penguin.

Davis, G. F. (2016). *The vanishing American corporation: Navigating the hazards of a new economy* (Vol. 16). Berrett-Koehler Publishers.

Dickey, H. S., Watson, V., & Zangelidis, A. (2015). What Triggers Multiple Job-Holding?: A Stated Preference Investigation. Discussion Paper in Economics, No 15-4. (Available at: https://aura.abdn.ac.uk/bitstream/handle/2164/5749/DP_2015_4.pdf;jsessionid=1AF8AD01A5202AC2027EE6EAB197AD1F?sequence=1)

Dierynck, B., Landsman, W. R., & Renders, A. (2012). Do managerial incentives drive cost behavior? Evidence about the role of the zero earnings benchmark for labor cost behavior in private Belgian firms. *The Accounting Review*, 87(4), 1219-1246.

DiMaggio, P., & Hirsch, P. M. (1976). Production organizations in the art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9(6), 735.

Eichhorst, W. & Marx, P.(2012). Whatever works: dualiz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100-123.

European Commission. (2007). *Towards common principles of flexicurity: more and better jobs through flexibility and security.*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Faulkner, R. R., & Anderson, A. B. (1987). Short-term projects and emergent careers: Evidence from Hollywoo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4), 879-909.

Flecker, J., Haidinger, B., & Schönauer, A. (2013). Divide and serve: The labour process in service value chains and networks. *Competition & Change*, *17*(1), 6-23.

Fligstein, N., & Shin, T. (2007, December). Shareholder Valu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Economy, 1984–2000 1. In *Sociological forum* (Vol. 22, No. 4, pp. 399-424). Oxford, UK: Blackwell Publishing Ltd.

Frade, C., Darmon, I. & Laparra, M. (2004). *Precarious employment in Europe: A comparative study of labour market related risk in flexible economie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Freedman, A. (1996). Contingent work and the role of labor market intermediaries. *Of heart and mind: Social policy essays in honor of Sar A. Levitan*, 177-199.

Friedman, G. (2014). Workers without employers: shadow corporations and the rise of the gig economy.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2(2), 171-188.

Griswold, W. (1994). Cultures and Societies in a Changing World. London: Pine Forge Press.

Greenlee, J. S., & Trussel, J. M. (2000). Predicting the financial vulnerability of charitable organization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1(2), 199-210.

Guthrie, H. W. (1969). Teachers in the moonlight. *Monthly Labour Review*, 92, 28-31.

Hacker, J. S. (2006). *The great risk shift: The assault on American jobs, families, health care and retirement and how you can fight back*. oxford University press.

Hartley, J. (2005). Creative Industries. *Creative Industries(pp.*1-40). Malden, MA: Blackwell.

Hamel, H. R. (1967). Moonlighting-An Economic Phenomenon. *Monthly Lab. Review*, 90(10), 17-22.

Handy, C. (1984). *The Future of Work*, John Wiley & Sons.

_____. (1995). *The age of unreason: Thinking the unlikely and doing the unreasonable*. London, Arrow.

Haunschild, A. (2003). Managing employment relationships in flexible labour markets: The case of German repertory theatres. *Human Relations*, 56(8), 899-929.

Heck, R. H., Thomas, S. L., & Tabata, L. N. (2013). *Multilevel and longitudinal modeling with IBM SPSS*. Routledge.

Heery, E., & Salmon, J. (2002). The insecurity thesis. *Industrial Relations: Labour markets, labour process and trade unionism*, *2*, 148.

Henley, A. (2007). Entrepreneurial aspiration and transition into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British longitudinal data.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9(3), 253-280.

Hesmondhalgh, D. & Baker, S. (2010). 'A very complicated version of freedom': Conditions and experiences of creative labour in three cultural industries. *Poetics*, *38*(1), 4-20.

Hesmondhalgh, D., & Baker, S. (2011). *Creative labour : Media work in three cultural industries*. Routledge.

Hinrichs, K. (2010). A Social Insurance State Withers Away. Welfare State Reforms in Germany – Or: Attempts to Turn Around in a Cul-de-Sac. In Palier B. (Ed.), *A Long Goodbye to Bismarck?: The Politics of Welfare Reform in Continental Europe* (pp. 45-72).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Available at: http://www.jstor.org/stable/j.ctt46n02d.6)

Hirsch, B. T., & Winters, J. V. (2016). Rotation group bias in measures of multiple job holding. *Economics Letters*, 147, 160-163.

Hirsch, P. M. (1972). Processing fads and fashions: An organization-set analysis of cultural industry system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7(4), 639-659.

Ho, K. (2009a). *Liquidated: An ethnography of wall street.*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_____. (2009b). Disciplining investment bankers, disciplining the economy: Wall street's institutional culture of crisis and the downsizing of "Corporate America". *American Anthropologist*, 111(2), 177–89

Houseman, S. N. (2001). Why employers use flexible staffing arrangements: Evidence from an establishment survey.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5(1), 149-170.

Houseman, S. N., & Ōsawa, M. (Eds.). (2003). *Nonstandard work in developed economies: Causes and consequences*. WE Upjohn Institute. MI: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Hyman, R. (1994). Theory and industrial relation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32(2), 165-180.

Inness, M., Barling, J., & Turner, N. (2005). Understanding supervisor-targeted aggression: A within-person, between-jobs desig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4), 731-739.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03). The Scope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1st Session Report.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vailable at: https://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91/pdf/rep-v.pdf)

_____. (2011).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ILO Publications.

_____. (2012).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12.* ILO Publication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12). *Handbook on the extention of social security coverage to the self-employed*. (Available at: https://ww1.issa.int/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2_handbook-extension-selfemployed-26571.pdf)

Jamall, M. (1986). Moonlighting: Personal, social, and organizational consequences. *Human Relations*, 39(11), 977-990.

Jeffri, J., & Greenblatt, R. (1989). Between extremities: The artist described.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Law*, 19(1), 5-14.

Kadushin, C. (1976). Networks and Circles in the Production of Cultur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19(6), 769-784.

Kahancová, M., & Martišová, M. (2011). *Bargaining for social rights: Reducing precariousness and labour market segmentation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and social dialogue(BARSORI)*. (Available at: https://aias.s3-eu-central-1.amazonaws.com/website/uploads/1470909373258BARSORIreportSlovakia-1.pdf)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74(1), 1-22.

_____. (2011). *Good jobs, bad jobs: The rise of polarized and precarious employmen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1970s to 2000s.* NY: Russell Sage Foundation.

Kalleberg, A. L., & Marsden, P. V. (2005). Externalizing organizational activities: where and how US establishments use employment intermediaries. *Socio-Economic Review*, 3(3), 389-416.

Kalleberg, A. L., & Vallas, S. P. (2018). Probing precarious work: Theory, research, and politic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31(1), 1-30.

Kawashima, N. (1999). Distribution of the arts: British arts centres as 'gatekeepers' in intersecting cultural production systems. *Poetics*, 26(4), 263-283.

Keune, M. (2013). Trade union responses to precarious work in seven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ur Research,* 5(1), 59-78.

Krishnan, P. (1990). The economics of moonlighting: A double self-selection model.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2(2), 361-367.

Kroon, B., & Paauwe, J. (2014). Structu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in economically constrained firms: the case of Dutch agricul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4(1), 19-37.

Kum, H., & Masterson, T. N. (2010). Statistical matching using propensity scores: Theory and application to th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Journal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35(3-4), 177-196.

Lancaster, K. (1979). *Variety, equity, and efficiency*. Columbia University Press.

Lane, C. M. (2011). *A company of one: Insecurity, independence, and the new world of white-collar unemployment*. Cornell University Press.

Lang, G. E., & Lang, K. (1988). Recognition and renown: The survival of artistic reput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1), 79-109.

Laparra, M., Barbier, J. C., Darmon, I., Dül, N., Frade, C., Frey, L., Lindley R., & Vogler-Ludwig, K. (2004). Managing labour market related risks in Europe: Policy implications. *Final report ESOPE-project, Precarious Employment in Europe: A Comparative Study of Labour Market related Risks in Flexible Economies.* (Available at: https://economix.org/a55ets/publications/ECONOMIX-policy-report-ESOPE.pdf)

Leadbeater, C. & Kate O. (2005). Why Cultural Entrepreneurs Matter. *Creative Industries(pp. 299-311)*. MA: Blackwell.

Lee, S. Y. S. (2011). The evolution of welfare production regimes in 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Japan, and Taiwan.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26(1), 49-75*

Lim, S. (2018). Bad jobs for marriage: Job quality and the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Precarious Work: Cause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Volume 31, pp. 397–25))*. UK: Emerald.

Lindström, S. (2016). Artists and multiple job holding: breadwinning work as mediating between bohemian and entrepreneurial identities and behavior. *Nordic Journal of Working Life Studies*, 6(3), 43-58.

Lingo, E. L., & Tepper, S. J. (2013). Looking back, looking forward: Arts-based careers and creative work. *Work and occupations*, 40(4), 337-363.

Locke, R., & Thelen, K. (1995). Apples and oranges revisited: Contextualized comparisons and the study of comparative labor politics. *Politics and Society*, 23(3)(September), 337–367.

Mangset, P., Heian, M. T., Kleppe, B., & Løyland, K. (2018). Why are artists getting poorer? About the reproduction of low income among art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4*(4), 539-558. (Available at: https://doi.org/10.1177/0032329295023003004)

Mangum, G., Mayall, D., & Nelson, K. (1985). The temporary help industry: A response to the dual internal labor market.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38(4), 599-611.

Marshall A. (1947). *Principles of Economics.* New York: MacMillan. 8th ed.

Menger, P. M., & Gurgand, M. (1996). Work and Compensated Unemployment in the Performing Arts: Exogenous and Endogenous Uncertainty in the Artistic Labour Markets. CONTRIBUTIONS TO ECONOMIC ANALYSIS, 237, 347-381. (Available a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92433104_Work_and_compensated_unemployment_in_the_performing_arts_Exogenous_and_endogenous_uncertainty_in_artistic_labour_markets)

Menger, P. M. (2001). Artists as worker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Poetics*, 28(4), 241-254.

_____. (2006). Artistic labor markets: Contingent work, excess supply and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Vol. 1, pp. 765-11).* Amsterdam: Elsevier/North Holland.

_____. (2017). Contingent high-skilled work and flexible labor markets. Creative workers and independent contractors cycling betwee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Swiss Journal of Sociology*, 43(2), 253-284.

Munck, R. (2013). The Precariat: a view from the south. *Third World Quarterly,* 34(5), 747-762.

Murray, C., & Gollmitzer, M. (2012). Escaping the precarity trap: a call for creative labour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8(4), 419-438.

Nesheim, T. (2003). Using external work arrangements in core value-creation area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21(4), 528-537.

OECD. (2018a).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The OECD jobs Strategy.* Paris: OECD Publishing.

_____. (2018b). *The future of Social Protection: WHAT WORKS FOR NON-STANDARD WORKERS?.* Paris: OECD Publishing.

Opara, S. C., Stanton, P., & Wahed, W. (2019). For love or money: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performing arts. *Employee Rel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41(6), 1451-1466.

Osterman, P. (1975). An empirical study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ILR Review*, *28*(4), 508-523.

_____. (1999). *Securing Prosperity: How the American Labor Market Has Changed and What To Do about It.*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Panos, G. A., Pouliakas, K., & Zangelidis, A. (2014). Multiple job holding, skill diversification, and mobility.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53(2), 223-272.

Papandrea, F., & Albon, R. (2004). A model of employment in the arts. *Australian Economic Papers*, 43(3), 277-287.

Paxson, C. H., & Sicherman, N. (1994). The Dynamics of Dual-Job Holding and Job Mobility. *NBER Working Paper No.w4968*.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26567)

Peacock, A. (1996). The "manifest destiny" of the performing ar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0(3), 215-224.

Pech, C. (2017). Dealing with downsizing: New organizational careers in fnancial services after the great recession. *Emerging conceptions of management, work, and the labor market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Vol. 30, pp. 33-8))*. Bingley: Emerald.

Peterson, K. (1997). The distribution and dynamics of uncertainty in art galleries: A case study of new dealerships in the Parisian art market, 1985–1990. *Poetics,* 25(4), 241-263.

Piasna, A., Pedaci, M., & Czarzasty, J. (2020). Multiple jobholding in Europe: features and effects of primary job quality. *Transfer: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19. (Available ar: https://doi.org/10.1177/1024258920958836)

Pouliakas, K. (2017). Multiple job-holding: Career pathway or dire straits?. *IZA World of Labor*. (Available at : https://wol.iza.org/articles/multiple-job-holding-career-pathway-or-dire-straits/long)

Pugh, A. J. (2015). *The tumbleweed society: Working and caring in an age of insecurity*. NY: Oxford University Press.

Putnam, R.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Touchstone,

Rengers, M., & Plug, E. (2001). Private or public?.*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5(1), 1-20.

Rengers, M., & Madden, C. (2000). Living Art: Artists between Making Art and Making a Living. *Australian Bulletin of Labour,* 26(4), 325-354.

Robinson, M. D., & Montgomery, S. S. (2000). The time allocation and earnings of artists.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39(3), 525-534.

Rodgers, G., & J. Rodgers eds. (1989).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odgers, G. (1989). Precarious work in Europe: The state of the debate.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pp. 1-6)*.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osen, S. (1981). The economics of superstar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5), 845-858.

_____. (1992). Distinguished fellow: Mincering labor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6(2), 157-170.

Santos, F. P. (1976). Risk, uncertainty and the performing artist. *Mark Blaug (Hg.), The Economics of the Arts, London: Martin Robertson & Company,* 243-259.

Schor, J. B. (2017). Does the sharing economy increase inequality within the eighty percent?: findings from a qualitative study of platform providers. *Cambridge Journal of Regions, Economy and Society*, 10(2), 263-279.

Shishko, R., & Rostker, B. (1976). The economics of multiple job hold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6(3), 298-308.

Shorthose, J., & Strange, G. (2004). The new cultural economy, the artist and the social configuration of autonomy. *Capital & Class*, 28(3), 43-59.

Simms, M. (2011). Trade union responses to precarious work: UK report, *Bargaining for Social Rights(BARSORI) report*. (Available at: http://aias.s3.amazonaws.com/website/uploads/1470909409408BARSORIReportUK.pdf)

Standing, G. (1999). *Global labour flexibility: Seeking distributive justice*. Macmillan.

_____. (2009). *Work after globalization: building occupational citizenship*. UK: Edward Elgar Publishing.

_____.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Academic

Stone, K. V., & Arthurs, H. (2013). The transformation of employment regimes: A worldwide challenge. *Rethinking Workplace Regulation: Beyond the Standard Contract of Employment(pp. 1-20)*. NY: Russell Sage Foundation.

Stuth, S., & Jahn, K. (2020). Young, successful, precarious? Precariousness at the entry stage of employment careers in Germany.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702-725.

Throsby, D. (1986). *Occupational and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artists.* Policy and Planning Division, Australia Council.

_____. (1994). A work-preference model of artist behaviour. *Cultural economics and cultural policies*(pp. 69-80). Springer.

_____. (1996a). Economic circumstances of the performing artist: Baumol and Bowen thirty years 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0(3), 225-240.

_____. (1996b). "Disaggregated earnings functions for artists". *Economics of the Arts: Selected Essays*(pp. 331-346). Amsterdam ; New York : Elsevier

_____. (2006). An artistic production function: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Australian visual artist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0(1), 1-14.

Tomaskovic-Devey, D., & Lin, K. H. (2011). Income dynamics, economic rents, and the financialization of the US eco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4), 538-559.

Towse, R. (2006). Human capital and artists' labour markets.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Vol 1, pp. 865-894).*

_____. (2010). *A textbook of cultural economics*, Cambridge

UNESCO. (1980). *Draf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Paris: UNESCO.

_____. (2015). *Full Analytic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ESCO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Paris: UNESCO.

_____. (2019). *Culture & working conditions for artists.* Paris: UNESCO.

Vosko, L. F. (Ed.). (2006). *Precarious employment: Understanding labour market insecurity in Canada*. McGill-Queen's Press-MQUP.

Werck, K., Stultjes, M. G. P., & Heyndels, B. (2008). Budgetary constraints and programmatic choices by Flemish subsidized theatres. *Applied Economics,* 40(18), 2369-2379.

Western, B., & Rosenfeld, J. (2011). Unions, norms, and the rise in US wage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4), 513–37.

Wilensky, H. L. (1963). The moonlighter: A product of relative deprivation.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3(1), 105-124.

Wrzesniewski, A., & Dutton, J. E. (2001). Crafting a job: Revisioning employees as active crafters of their 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6(2), 179-201.

Withers, G. (1985). ARTISTS' SUBSIDY OF THE ARTS. *Australian Economic Papers*, 24(45), 290-295.

Woronkowicz, J., Noonan, D., & LeRoux, K. (2020). Entrepreneurship among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substituting between wage and flexible lab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0(3), 473-481.

Wu, Z., Bainbridge, M., & Zhu, Y. (2009). Multiple job holding in the United Kingdom: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Applied Economics*, 41(21), 2751-766.

Yoon, S., & Heo, S. (2019). Artists' labor supply behavior for multiple job holding: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24(2), 165-181.

부록

[부록 표 1]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연구 1)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겸업 행태	겸업 여부	전업	0.34	0.47	0	1	6,756
		겸업	0.66	0.47	0	1	6,756
	겸업 유형	동종 겸업	0.65	0.48	0	1	3,700
		이종 겸업	0.35	0.48	0	1	3,700
불안정 노동	종사상 지위	정규직	0.07	0.25	0	1	6,756
		사용주	0.04	0.21	0	1	6,756
		비정규직	0.37	0.48	0	1	6,756
		1인 자영업자	0.32	0.47	0	1	6,756
		기타	0.20	0.40	0	1	6,756
	계약건수		2.74	7.45	0	150	6,756
	계약기간		3.85	2.72	0	58.62	3,097
	계약금액		5.60	1.07	0	9.21	3,097
	경력단절 횟수		0.66	1.94	0	20	6,756
	예술소득	상대적 빈곤선 초과	0.33	0.47	0	1	6,756
		상대적 빈곤선 이하	0.67	0.47	0	1	6,756
예술 활동 특성	활동 분야	문학	0.06	0.24	0	1	6,756
		시각예술	0.34	0.47	0	1	6,756
		공연	0.32	0.47	0	1	6,756
		영상미디어	0.26	0.44	0	1	6,756
		기타	0.02	0.13	0	1	6,756
	직업	창작	0.52	0.50	0	1	6,756
		실연	0.36	0.48	0	1	6,756
		기술	0.02	0.15	0	1	6,756
		기획	0.06	0.23	0	1	6,756
		기타	0.04	0.19	0	1	6,756
	활동 지역	비수도권	0.35	0.48	0	1	6,756
		수도권	0.65	0.48	0	1	6,756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입문 연도	80년 이전	0.03	0.18	0	1	6,756
		80년대	0.12	0.32	0	1	6,756
		90년대	0.22	0.41	0	1	6,756
		2000년대	0.36	0.48	0	1	6,756
		2010년대	0.27	0.45	0	1	6,756
	작품활동 수준		7.79	11.14	0	100	6,756
	고등학교	예술계	0.70	0.46	0	1	6,756
		비예술계	0.30	0.46	0	1	6,756
	대학교	예술계	0.12	0.32	0	1	6,756
		비예술계	0.88	0.32	0	1	6,756
가구 특성	가구 소득		3.30	3.81	0	11.30	6,756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자	0.59	0.49	0	1	6,756
		여자	0.41	0.49	0	1	6,756
	연령대	20대	0.09	0.29	0	1	6,756
		30대	0.28	0.45	0	1	6,756
		40대	0.25	0.43	0	1	6,756
		50대	0.27	0.44	0	1	6,756
		60대	0.11	0.31	0	1	6,756
	혼인상태	기혼	0.57	0.50	0	1	6,756
		미혼	0.37	0.48	0	1	6,756
		기타	0.06	0.24	0	1	6,756
	국민연금 직장가입 여부	미가입	0.68	0.47	0	1	6,756
		가입	0.32	0.47	0	1	6,756

[부록 표 2] 연령대별 예술직업의 종사상 지위 분포(단위: %)

연령	정규직	사용주	비정규직	1인 자영업자	기타	Total
20대	3.42	1.99	*58.39*	16.69	19.52	100
30대	7.03	3.21	*45.63*	27.76	16.36	100
40대	7.46	4.99	*38.81*	29.48	19.26	100
50대	5.79	6.42	27.52	*39.73*	20.54	100
60대	5.67	8.23	21.78	*33.02*	31.3	100
Total	6.26	5.02	37.44	30.77	20.51	100

[부록 표 3] 입문연도별 예술직업의 종사상 지위 분포(단위: %)

입문연도	정규직	사용주	비정규직	1인 자영업자	기타	Total
80년대 이전	2.57	2.06	22.54	*44.99*	27.84	100
80년대	8.94	9.32	33.99	*33.47*	14.28	100
90년대	8.6	6.39	34.03	*35.67*	15.31	100
2000년대	6.29	4.23	*37.16*	32.23	20.09	100
2010년대	3.9	3.53	*42.97*	23.01	26.59	100
Total	6.27	5.03	37.31	30.83	20.56	100

[부록 표 4]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연구 2)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고용 조정	인력조정	축소	0.38	0.49	0	1	1,834
		유지	0.22	0.42	0	1	1,834
		증가	0.40	0.49	0	1	1,834
	비정규직 비중 조정	축소	0.36	0.48	0	1	1,834
		유지	0.27	0.45	0	1	1,834
		증가	0.37	0.48	0	1	1,834
임금 조정	임금 조정	삭감	0.40	0.49	0	1	1,785
		동결	0.03	0.16	0	1	1,785
		인상	0.57	0.50	0	1	1,785
수입압박	자체수입		37.61	29.80	0	100	1,834
	순수익		2.59	1.33	1	5	1,834
	지출 수요 대비 수입	미충족	0.50	0.50	0	1	1,834
		충족	0.50	0.50	0	1	1,834
지출압박	경상비		16.21	14.86	0	100	1,834
	부담 가능성	있음	0.26	0.44	0	1	1,834
		없음	0.74	0.44	0	1	1,834
	부담 수준		2.93	1.48	1	5	1,834
단체 특성	법적 형태	재단법인	0.21	0.40	0	1	1,834
		사단법인	0.31	0.46	0	1	1,834
		임의단체	0.48	0.50	0	1	1,834
	소재지	비수도권	0.61	0.49	0	1	1,834
		수도권	0.39	0.49	0	1	1,834
	활동 유형	공연단체	0.70	0.46	0	1	1,834
		공연장 운영단체	0.04	0.21	0	1	1,834
		전시기획 및 전시장	0.08	0.27	0	1	1,834
		지원기관등	0.18	0.38	0	1	1,834
	활동 실적		3.23	1.44	1	5	1,834
물적 자원	정부 지원금 비중		51.65	32.81	0	100	1,834
	수입규모		3.51	1.28	1	5	1,834
인적자원	인력규모		2.09	0.81	1	3	1,834

[부록 표 5]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고용 조정행태(인력 규모, odds ratio)

Y의 기준: 유지			모형 1-1				모형 1-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재정압박										
수입 압박	자체수입		1	**0.995***	1.003	0.997	1	**0.995***	1.004	0.998
			(0.00)	(0.00)	(0.00)	(0.01)	(0.00)	(0.00)	(0.01)	(0.01)
	순수익		0.936	**1.197***	1.148	**1.483****	0.916	**1.205***	1.146	**1.531****
			(0.09)	(0.13)	(0.19)	(0.25)	(0.09)	(0.13)	(0.20)	(0.26)
	수입의 기존 지출 수요 충족*	충족	**0.731***	0.997	0.771	0.798	0.762	0.979	0.815	0.776
			(0.12)	(0.17)	(0.17)	(0.18)	(0.13)	(0.16)	(0.19)	(0.18)
지출 압박	경상비		1	1	0.996	0.992	1.002	0.999	0.994	0.992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고용보험료	부담 가능성	**2.422*****	**0.643****	**2.539*****	**0.392*****				
			(0.42)	(0.12)	(0.71)	(0.11)				
		부담 수준					**1.671*****	**0.840*****	**1.650*****	**0.642*****
							(0.11)	(0.05)	(0.17)	(0.07)
통제	**단체 특성**									
	법적 특성 (ref. 임의단체)	재단법인	**2.159****	**2.077****			**2.101****	**2.022****		
			(0.70)	(0.66)			(0.69)	(0.64)		
		사단법인	0.951	0.906			0.991	0.886		
			(0.15)	(0.15)			(0.17)	(0.15)		
	소재지 (ref.비수도권)	수도권	0.921	0.903			0.886	0.929		
			(0.14)	(0.14)			(0.14)	(0.14)		
	활동 유형 (ref.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단체	0.543	0.754			0.497	0.757		
			(0.23)	(0.32)			(0.22)	(0.32)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0.531****	1.006			**0.539****	1.067		

Y의 기준: 유지			모형 1-1				모형 1-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0.14)	(0.26)			(0.14)	(0.27)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	**0.521*** **	0.854			**0.530*** **	0.911		
			(0.12)	(0.20)			(0.13)	(0.21)		
	활동실적	공연/전시횟수	1.032	0.94	1.068	1.005	1.035	0.937	1.053	1.011
			(0.05)	(0.05)	(0.11)	(0.10)	(0.06)	(0.05)	(0.11)	(0.10)
	물적 자원									
	정부 지원금 비중		0.998	0.924	1.153	0.891	1.023	0.922	1.134	0.93
			(0.10)	(0.10)	(0.21)	(0.17)	(0.11)	(0.10)	(0.21)	(0.18)
	수입 규모		0.999	1.002	0.995	1.005	0.998	1.002	0.995	1.004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인적 자원									
	인력규모		**1.290** **	**3.778*** **	**0.345*** **	**5.786*** **	0.874	**4.237*** **	**0.286*** **	**6.500*** **
			(0.15)	(0.57)	(0.10)	(1.66)	(0.11)	(0.57)	(0.09)	(1.96)
연도더미			Y		Y		Y		Y	
Constant			0.536 (0.33)		0.087*** (0.06)		0.464 (0.30)		0.081*** (0.05)	
Prob 〉 chi2			0		0		0		0	
ll			-1,704.1		-530.4		-1,632.3		-490.2	
N of obs			1,834		1,463		1,834		1,463	
N of groups			679		406		679		406	

*(ref. 미충족)

[부록 표 6]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고용 조정행태(비정규직 비중, odds ratio)

Y의 기준: 유지			모형 2-1				모형 2-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재정압박										
수입 압박	자체수입		0.997	**0.995****	0.996	0.996	0.996	**0.995***	0.996	0.998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순수익		1.137	1.168	1.318	**1.535****	1.175	**1.206***	**1.483****	**1.537****
			(0.12)	(0.12)	(0.24)	(0.27)	(0.13)	(0.13)	(0.29)	(0.28)
	수입의 기존 지출 수요 충족*	충족	**0.699****	0.957	0.773	0.74	0.822	0.979	0.798	0.721
			(0.12)	(0.15)	(0.19)	(0.17)	(0.15)	(0.17)	(0.21)	(0.17)
지출 압박	경상비		1.004	1.004	0.997	1	1.008	1.003	1.002	1.004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고용보험료	부담 가능성	6.01E+08	1.132	76286685	**0.449****				
			(5.96e+11)	(0.20)	(4.56e+10)	(0.14)				
		부담 수준					**4.239*****	0.905	**5.167*****	**0.671*****
							(0.44)	(0.07)	(0.91)	(0.08)
통제	**단체 특성**									
	법적 특성 (ref. 임의단체)	재단법인	1.348	1.329			1.583	1.407		
			(0.43)	(0.41)			(0.55)	(0.47)		
		사단법인	0.816	0.822			0.838	0.767		
			(0.14)	(0.14)			(0.16)	(0.14)		
	소재지 (ref.비수도권)	수도권	0.964	0.994			0.897	1.02		
			(0.15)	(0.15)			(0.16)	(0.17)		
	활동 유형 (ref.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단체	1.292	1.154			1.385	1.09		
			(0.56)	(0.50)			(0.66)	(0.50)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0.551****	1.044			**0.600***	1.169		
			(0.15)	(0.27)			(0.18)	(0.34)		

Y의 기준: 유지			모형 2-1				모형 2-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	0.825	0.905			0.904	0.934		
			(0.20)	(0.21)			(0.24)	(0.24)		
	활동실적	공연/전시횟수	1.107*	0.984	0.969	0.885	1.105*	0.986	0.914	0.919
			(0.06)	(0.05)	(0.11)	(0.09)	(0.07)	(0.06)	(0.11)	(0.10)
	물적 자원									
	정부 지원금 비중		1.107	0.878	1.16	0.945	1.154	0.865	1.135	0.992
			(0.12)	(0.09)	(0.23)	(0.17)	(0.14)	(0.09)	(0.23)	(0.18)
	수입 규모		0.999	1	1.001	1.004	0.999	1	1.005	1.004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인적 자원									
	인력규모		1.097	3.074***	0.313***	5.852***	0.361***	3.787***	0.156***	6.888***
			(0.12)	(0.35)	(0.10)	(1.74)	(0.06)	(0.55)	(0.06)	(2.20)
연도더미			Y		Y		Y		Y	
Constant			0 (0.00)		0.084*** (0.05)		0.022*** (0.02)		0.073*** (0.05)	
Prob 〉 chi2			0		0		0		0	
ll			-1573.3		-426.63		-1508.2		-378.03	
N of obs			1,834		1,405		1,834		1,405	
N of groups			679		387		679		387	

*(ref. 미충족)

[부록 표 7] 예술단체의 재정압박과 임금 조정행태(odds ratio)

Y의 기준: 임금 수준 동결			모형 3-1				모형 3-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재정제약										
수입 압박	자체수입		1	1.001	**1.051***	**1.052***	1	1.001	**1.053***	**1.054***
			(0.01)	(0.01)	(0.03)	(0.03)	(0.01)	(0.01)	(0.03)	(0.03)
	순수익		0.701	0.938	0.497	0.742	0.706	0.939	0.445	0.671
			(0.16)	(0.22)	(0.42)	(0.62)	(0.16)	(0.21)	(0.43)	(0.65)
	수입의 기존 지출 수요 충족*	충족	1.172	1.803	**15.032****	**25.963****	1.163	**1.909***	**14.890***	**26.945****
			(0.46)	(0.70)	(20.60)	(35.63)	(0.46)	(0.74)	(20.69)	(37.51)
지출 압박	경상비		0.991	0.996	0.97	0.977	0.991	0.996	0.967	0.973
			(0.01)	(0.01)	(0.03)	(0.03)	(0.01)	(0.01)	(0.03)	(0.03)
	고용보험료	부담 가능성	1.098	**2.030****	0.545	1.532				
			(0.38)	(0.69)	(0.61)	(1.72)				
		부담 수준					0.986	**1.392****	0.607	1.038
							(0.13)	(0.18)	(0.30)	(0.51)
통제	**단체 특성**									
	법적 특성 (ref. 임의단체)	재단법인	4.52	4.809		4.562	4.562	4.632		
			(5.16)	(5.48)		(5.21)	(5.21)	(5.28)		
		사단법인	0.864	0.813		0.863	0.863	0.835		
			(0.30)	(0.28)		(0.30)	(0.30)	(0.28)		
	소재지 (ref.비수도권)	수도권	0.925	0.855		0.954	0.954	0.849		
			(0.32)	(0.29)		(0.33)	(0.33)	(0.29)		
	활동 유형 (ref.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단체	0.731	0.948		0.705	0.705	0.916		
			(0.85)	(1.09)		(0.82)	(0.82)	(1.06)		
		전시기획 및 전시장 운영단체	1.429	0.831		1.468	1.468	0.864		

Y의 기준: 임금 수준 동결			모형 3-1				모형 3-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삭감	인상
			(0.74)	(0.43)		(0.76)	(0.76)	(0.44)		
		지원기관 및 기타단체	0.803	0.822		0.817	0.817	0.859		
			(0.40)	(0.41)		(0.41)	(0.41)	(0.42)		
	활동실적	공연·전시횟수	1.294**	1.363***	5.318**	5.591**	1.286**	1.360***	6.060**	6.308**
			(0.15)	(0.16)	(4.12)	(4.34)	(0.15)	(0.16)	(5.34)	(5.56)
	물적 자원									
	정부 지원금 비중		0.689	0.98	0.046**	0.060**	0.686	0.991	0.040**	0.052**
			(0.16)	(0.23)	(0.06)	(0.08)	(0.16)	(0.23)	(0.06)	(0.07)
	수입 규모		1.008	1.007	1.158***	1.161***	1.009	1.008	1.160***	1.164***
			(0.01)	(0.01)	(0.06)	(0.06)	(0.01)	(0.01)	(0.06)	(0.06)
	인적 자원									
	인력규모		2.484***	1.572*	2.568	0.727	2.520***	1.304	2.369	0.627
			(0.61)	(0.38)	(2.64)	(0.75)	(0.66)	(0.34)	(2.54)	(0.67)
연도더미			Y		Y		Y		Y	
Constant			3.501 (4.84)		0.838 (1.16)		3.695 (5.09)		0.726 (1.00)	
Prob 〉 chi2			0		0		0		0	
ll			-1,294.2		-466.23		-1,264		-443.68	
N of obs			1,785		1,390		1,785		1,390	
N of groups			659		376		659		376	

*(ref. 미충족)

[부록 표 8] 층(strata)별 예술인과 예술단체 할당

	할당된 예술인 수				할당된 단체 수			
	소	중	대	Total	소	중	대	Total
서울 공연	79	190	261	530	26	36	29	91
서울 전시	17	102	102	221	2	3	2	7
부산 공연	20	23	29	72	13	11	9	33
부산 전시	7	20	20	47	1	2	1	4
대구 공연	5	11	16	32	5	8	8	21
대구 전시	13	0	21	34	2	0	1	3
인천 공연	5	8	18	31	4	5	6	15
인천 전시	2	6	0	8	1	1	0	2
광주 공연	4	22	17	43	3	12	6	21
광주 전시	21	0	33	54	2	0	1	3
대전 공연	10	15	16	41	6	5	3	14
대전 전시	12	19	21	52	1	1	1	3
울산 공연	1	13	12	26	1	3	2	6
세종 공연	0	14	0	14	0	1	0	1
경기 공연	14	21	49	84	8	10	15	33
경기 전시	0	0	102	102	0	0	1	1
강원 공연	6	9	9	24	6	7	6	19
강원 전시	6	2	13	21	2	1	2	5
충북 공연	4	6	0	10	4	4	0	8
충북 전시	7	11	0	18	1	1	0	2
충남 공연	2	13	5	20	1	3	1	5
전북 공연	16	26	28	70	6	5	5	16
전북 전시	29	0	0	29	1	0	0	1
전남 공연	5	6	16	27	3	3	5	11
전남 전시	8	13	16	37	1	1	1	3
경북 공연	5	3	10	18	4	2	3	9
경남 공연	12	14	26	52	9	9	11	29
경남 전시	12	0	0	12	2	0	0	2
제주 공연	1	8	15	24	1	1	1	3
제주 전시	18	0	0	18	1	0	0	1
Total	341	575	855	1,771	117	135	120	372

[부록 표 9]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연구 3)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겸업 행태	겸업 여부	전업	0.36	0.48	0	1	1,771
		겸업	0.64	0.48	0	1	1,771
	겸업 유형	동종 겸업	0.66	0.47	0	1	877
		이종 겸업	0.34	0.47	0	1	877
예술단체 조정행태	예술단체 고용 축소 가능성	$EmpAdj_{r1}$	0.36	0.14	0.04	0.76	1,771
		$EmpAdj_{f1}$	0.05	0.10	0.00	0.53	1,220
		$EmpAdj_{r2}$	0.36	0.16	0.02	0.80	1,771
		$EmpAdj_{f2}$	0.06	0.10	0.00	0.67	1,220
불안정 노동	종사상 지위	정규직	0.10	0.30	0	1	1,771
		사용주	0.05	0.23	0	1	1,771
		비정규직	0.45	0.50	0	1	1,771
		1인 자영업자	0.24	0.43	0	1	1,771
		기타	0.16	0.37	0	1	1,771
	계약건수		3.01	8.11	0	150	1,771
	계약기간		3.86	2.78	0	58.62	1,771
	계약금액		5.66	1.12	0	9.21	1,771
	경력단절 횟수		0.58	1.87	0	20	1,771
	불안정 소득	상대적 빈곤선 초과	0.39	0.49	0	1	1,771
		상대적 빈곤선 이하	0.61	0.49	0	1	1,771
예술 활동 특성	활동분야	시각예술	0.32	0.47	0	1	1,771
		공연	0.39	0.49	0	1	1,771
		영상미디어	0.29	0.45	0	1	1,771
	직업	창작	0.47	0.50	0	1	1,771
		실연	0.42	0.49	0	1	1,771
		기술	0.03	0.18	0	1	1,771
		기획	0.05	0.21	0	1	1,771
		기타	0.03	0.18	0	1	1,771
	활동 지역	비수도권	0.45	0.50	0	1	1,771

변수명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치
			수도권	0.55	0.50	0	1	1,771
	입문 연도		80년대 이전	0.02	0.16	0	1	1,771
			80년대	0.09	0.29	0	1	1,771
			90년대	0.18	0.39	0	1	1,771
			2000년대	0.36	0.48	0	1	1,771
			2010년대	0.34	0.48	0	1	1,771
	활동 수준			8.20	11.82	0	50	1,771
	전공	고등학교	예술계	0.17	0.37	0	1	1,771
			비예술계	0.83	0.37	0	1	1,771
		대학교	예술계	0.75	0.44	0	1	1,771
			비예술계	0.25	0.44	0	1	1,771
가구 특성	가구소득			2.93	3.79	0	10.37	1,77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자	0.58	0.49	0	1	1,771
			여자	0.42	0.49	0	1	1,771
	연령대		20대	0.22	0.41	0	1	1,771
			30대	0.34	0.47	0	1	1,771
			40대	0.22	0.41	0	1	1,771
			50대	0.17	0.37	0	1	1,771
			60대	0.06	0.24	0	1	1,771
	혼인상태		기혼	0.48	0.50	0	1	1,771
			미혼	0.48	0.50	0	1	1,771
			기타	0.04	0.19	0	1	1,771
	국민연금 직장가입 여부		미가입	0.69	0.46	0	1	1,771
			가입	0.31	0.46	0	1	1,771

[부록 표 10]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겸업 가능성(odds ratio)

DV = 겸업 여부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EmpAdj_{r1}$	$EmpAdj_{f1}$	$EmpAdj_{r2}$	$EmpAdj_{f2}$
임의효과							
예술단체 수준 임의효과(τ)				**2.484*** **	**2.348** **	**2.486*** **	**2.354** **
				(0.72)	(0.80)	(0.72)	(0.80)
고정효과							
[2수준] : 예술단체							
단체 행태	고용 축소 (인력 감축)			2.993	**29.021** **	1.656	**17.862** **
				(2.46)	**(45.65)**	(0.97)	**(23.63)**
[1수준] : 예술인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종사상 지위 (ref. 1인 자영업자)	정규직	**0.184*** **	**0.161*** **	**0.185*** **	**0.163*** **
				(0.06)	(0.06)	(0.06)	(0.07)
			사용주	0.633	0.707	0.638	0.691
				(0.20)	(0.29)	(0.20)	(0.29)
			비정규직	**2.025*** **	**2.024*** **	**2.025*** **	**2.047*** **
				(0.36)	(0.44)	(0.36)	(0.45)
			기타	**1.520***	1.461	**1.528***	1.478
				(0.34)	(0.39)	(0.34)	(0.39)
		계약 특성	계약 건수	1.007	**1.032*** **	1.007	**1.031*** **
				(0.01)	(0.01)	(0.01)	(0.01)
			계약 기간	0.996	1.001	0.995	1.001
				(0.03)	(0.03)	(0.03)	(0.03)
			계약 금액	0.94	1.044	0.941	1.045
				(0.07)	(0.10)	(0.07)	(0.10)
		경력단절 횟수		**1.247*** **	**1.314*** **	**1.246*** **	**1.307*** **
				(0.08)	(0.11)	(0.08)	(0.11)
	소득 불안정 (ref. 상대적 빈곤선 초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14.861*** **	**15.339*** **	**15.028*** **	**15.309*** **
				(3.16)	(4.05)	(3.20)	(4.03)
예술 활동 특성							
활동 분야 (ref. 시각예술)			공연	0.979	1.244	1.02	1.185
				(0.28)	(0.43)	(0.29)	(0.41)
			영상미디어	0.696	0.685	0.72	0.66
				(0.18)	(0.23)	(0.19)	(0.22)
직업 (ref. 창작)			실연	**0.610** **	**0.531** **	**0.614** **	**0.528** **

DV = 겸업 여부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EmpAdj_{r1}$	$EmpAdj_{f1}$	$EmpAdj_{r2}$	$EmpAdj_{f2}$
			(0.13)	(0.14)	(0.13)	(0.14)
		기술	**0.234*** **	**0.346** **	**0.236*** **	**0.338** **
			(0.10)	(0.17)	(0.10)	(0.17)
		기획	0.792	0.818	0.801	0.82
			(0.28)	(0.34)	(0.29)	(0.34)
		기타	1.277	1.23	1.286	1.204
			(0.53)	(0.64)	(0.53)	(0.63)
활동 지역 (ref. 비수도권)		수도권	**0.716***	0.825	0.721	0.82
			(0.14)	(0.20)	(0.14)	(0.20)
입문 연도 (ref. 2010년대)		80년대 이전	1.174	1.496	1.175	1.479
			(0.60)	(0.97)	(0.60)	(0.96)
		80년대	0.755	**0.505***	0.754	**0.503***
			(0.25)	(0.20)	(0.25)	(0.20)
		90년대	0.833	0.84	0.833	0.828
			(0.21)	(0.27)	(0.21)	(0.26)
		2000년대	0.974	0.959	0.977	0.951
			(0.18)	(0.21)	(0.18)	(0.21)
예술 활동 수준			**1.019*** **	**1.013***	**1.019*** **	**1.013***
			(0.01)	(0.01)	(0.01)	(0.01)
전공 (ref. 예술계)	고등학교	비예술계	0.952	0.875	0.951	0.876
			(0.18)	(0.21)	(0.18)	(0.21)
	대학교	비예술계	1.109	1.275	1.105	1.268
			(0.19)	(0.27)	(0.19)	(0.27)
가구 특성						
가구소득			**0.852*** **	**0.842*** **	**0.852*** **	**0.841*** **
			(0.02)	(0.02)	(0.02)	(0.02)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ref. 남성)		여성	0.888	0.957	0.884	0.96
			(0.13)	(0.17)	(0.13)	(0.17)
연령 (ref. 20대)		30대	1.222	1.139	1.223	1.144
			(0.25)	(0.29)	(0.25)	(0.29)
		40대	1.506	1.52	1.504	1.524

DV = 겸업 여부		모형 1-1	모형 1-2	모형 2-1	모형 2-2
		$EmpAdj_{r1}$	$EmpAdj_{f1}$	$EmpAdj_{r2}$	$EmpAdj_{f2}$
		(0.43)	(0.53)	(0.43)	(0.53)
	50대	0.952	1.073	0.954	1.083
		(0.33)	(0.45)	(0.33)	(0.45)
	60대	1.555	1.234	1.551	1.229
		(0.66)	(0.62)	(0.66)	(0.62)
	미혼	0.739	0.772	0.739	0.762
혼인상태		(0.14)	(0.17)	(0.14)	(0.17)
(ref. 기혼)	기타	0.965	0.77	0.964	0.755
		(0.37)	(0.39)	(0.37)	(0.38)
국민연금 직장 가입여부	가입함	**5.261*** **	**5.523*** **	**5.266*** **	**5.499*** **
(ref. 미가입)		(1.13)	(1.45)	(1.13)	(1.44)
Constant		0.617	0.353	0.73	0.366
		(0.39)	(0.26)	(0.44)	(0.27)
N of obs		1,771	1,220	1,771	1,220
N of groups		372	265	372	265
ll(model)		-816.50	-551.30	-817.03	-551.07
ICC		0.22	0.21	0.22	0.21
LR test vs. logistic model:	chibar2(01)	31.47	15.68	31.01	16.19
	Prob >= chibar2	0.00	0.00	0.00	0.00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부록 표 11] 예술단체의 고용 축소와 예술인의 이종 겸업 가능성(odds ratio)

DV = 겸업 유형(base. 동종 겸업)				모형 3-1	모형 3-2	모형 4-1	모형 4-2
				$EmpAdj_{r1}$	$EmpAdj_{f1}$	$EmpAdj_{r2}$	$EmpAdj_{f2}$
임의효과							
예술단체 수준 임의효과(τ)				1.255 (0.20)	1.3 (0.27)	1.234 (0.20)	1.278 (0.27)
고정효과							
단체 수준							
단체 행태	고용 축소 (인력 감축)			0.865 (0.78)	**15.105** (20.60)	1.762 (1.10)	**5.904** (5.92)
개인 수준							
불안정 노동	고용 불안정	종사상 지위 (ref. 1인 자영업자)	정규직	0.624 (0.39)	0.376 (0.31)	0.627 (0.39)	0.38 (0.32)
			사용주	1.271 (0.65)	1.134 (0.72)	1.24 (0.64)	1.113 (0.71)
			비정규직	1.127 (0.29)	0.842 (0.26)	1.128 (0.29)	0.866 (0.27)
			기타	**1.894** (0.55)	1.486 (0.52)	**1.869** (0.54)	1.547 (0.53)
		계약 특성	계약 건수	**0.873** (0.03)	**0.855** (0.04)	**0.874** (0.03)	**0.853** (0.04)
			계약 기간	**0.832** (0.05)	**0.723** (0.06)	**0.834** (0.05)	**0.720** (0.06)
			계약 금액	0.959 (0.11)	1.099 (0.18)	0.956 (0.11)	1.093 (0.18)
		경력단절 횟수		1.007 (0.05)	1.011 (0.09)	1.006 (0.05)	1 (0.09)
	소득 불안정 (ref. 상대적 빈곤선 초과)		상대적 빈곤선 이하	**4.209** (1.29)	**3.141** (1.23)	**4.091** (1.24)	**3.200** (1.25)
예술 활동 특성							
활동 분야 (ref. 시각예술)			공연	0.795 (0.26)	0.634 (0.26)	0.746 (0.24)	0.596 (0.24)
			영상미디어	1.522 (0.50)	0.91 (0.37)	1.426 (0.46)	0.87 (0.35)
직업 (ref. 창작)			실연	1.231 (0.35)	1.412 (0.51)	1.224 (0.35)	1.417 (0.52)
			기술	0.79 (0.53)	0.581 (0.49)	0.768 (0.51)	0.567 (0.49)

DV = 겸업 유형(base. 동종 겸업)			모형 3-1	모형 3-2	모형 4-1	모형 4-2
			$EmpAdj_{r1}$	$EmpAdj_{f1}$	$EmpAdj_{r2}$	$EmpAdj_{f2}$
		기획	1.046	1.191	1.033	1.256
			(0.51)	(0.66)	(0.50)	(0.70)
		기타	0.438	0.423	0.425	0.426
			(0.25)	(0.28)	(0.24)	(0.29)
활동 지역 (ref. 비수도권)		수도권	1.075	0.928	1.053	0.928
			(0.24)	(0.27)	(0.23)	(0.27)
입문 연도 (ref. 2010년대)		80년대 이전	0.41	0.391	0.424	0.386
			(0.27)	(0.30)	(0.28)	(0.30)
		80년대	0.346**	0.309**	0.344**	0.310**
			(0.15)	(0.16)	(0.15)	(0.16)
		90년대	0.450**	0.335***	0.439**	0.327***
			(0.15)	(0.14)	(0.14)	(0.14)
		2000년대	0.414***	0.427***	0.407***	0.419***
			(0.10)	(0.13)	(0.10)	(0.12)
예술 활동 수준			0.957***	0.960***	0.957***	0.959***
			(0.01)	(0.01)	(0.01)	(0.01)
전공 (ref. 예술계)	고등학교	비예술계	1.343	1.175	1.349	1.182
			(0.37)	(0.37)	(0.37)	(0.37)
	대학교	비예술계	2.457***	2.961***	2.419***	2.944***
			(0.53)	(0.81)	(0.52)	(0.80)
가구 특성						
가구소득			0.961	0.957	0.960*	0.956
			(0.02)	(0.03)	(0.02)	(0.03)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ref. 남성)		여성	0.478***	0.496***	0.476***	0.498***
			(0.09)	(0.12)	(0.09)	(0.12)
연령 (ref. 20대)		30대	0.794	0.718	0.798	0.722
			(0.22)	(0.25)	(0.22)	(0.25)
		40대	0.996	1.002	1.017	1.014
			(0.38)	(0.47)	(0.39)	(0.47)
		50대	1.097	0.876	1.119	0.884
			(0.48)	(0.47)	(0.49)	(0.47)

DV = 겸업 유형(base. 동종 겸업)		모형 3-1	모형 3-2	모형 4-1	모형 4-2
		$EmpAdj_{r1}$	$EmpAdj_{f1}$	$EmpAdj_{r2}$	$EmpAdj_{f2}$
	60대	2.331	1.778	2.335	1.753
		(1.22)	(1.15)	(1.22)	(1.13)
혼인상태 (ref. 기혼)	미혼	1.015	1.086	1.008	1.068
		(0.26)	(0.35)	(0.25)	(0.34)
	기타	0.641	0.475	0.618	0.466
		(0.34)	(0.36)	(0.32)	(0.35)
국민연금 직장 가입여부 (ref. 미가입)	가입함	1.343	1.347	1.349	1.345
		(0.28)	(0.34)	(0.28)	(0.34)
Constant		0.701	1.069	0.605	1.185
		(0.61)	(1.24)	(0.52)	(1.37)
N of obs		877	604	877	604
N of groups		308	220	308	220
ll(model)		-424.34	-286.14	-423.94	-286.61
ICC		0.06	0.07	0.06	0.07
LR test vs. logistic model:	chibar2(01)	4.16	3.49	3.10	2.95
	Prob >= chibar2	0.02	0.03	0.04	0.04

* p<0.10, ** p<0.05, *** p<0.01, 괄호 안은 standard error

[부록 표 12]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ward the mean) 진단

측정방식 조정 전	조정 후
1. 인력 규모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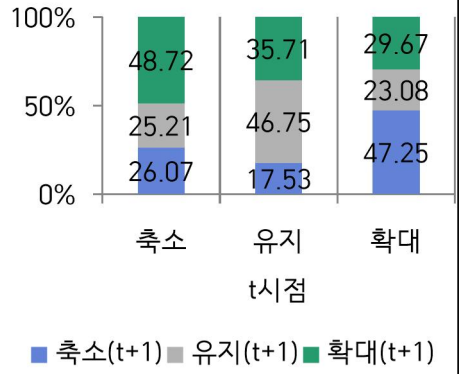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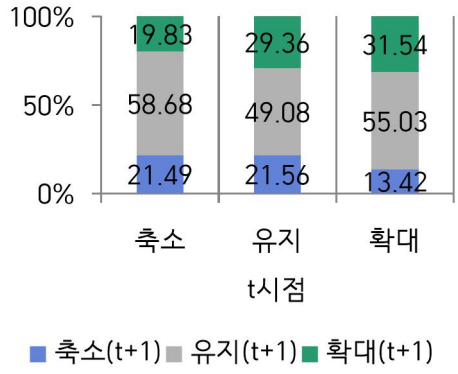
2. 비정규직 비중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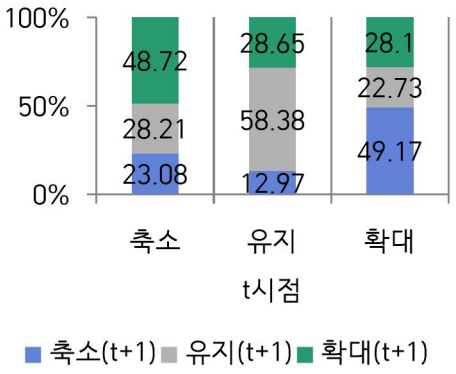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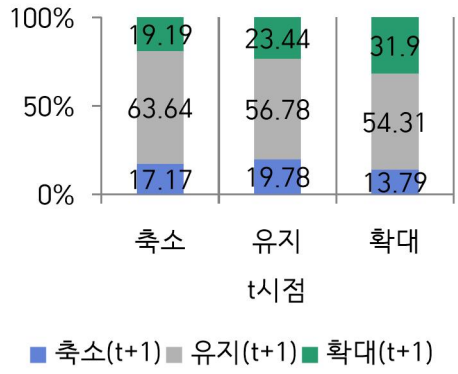
3. 임금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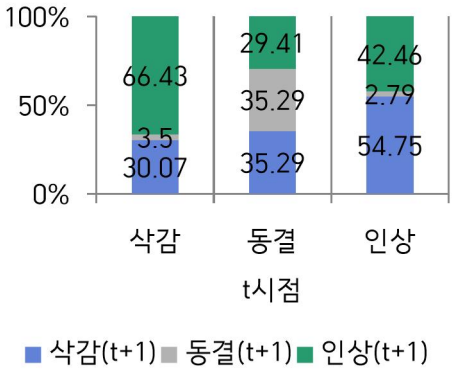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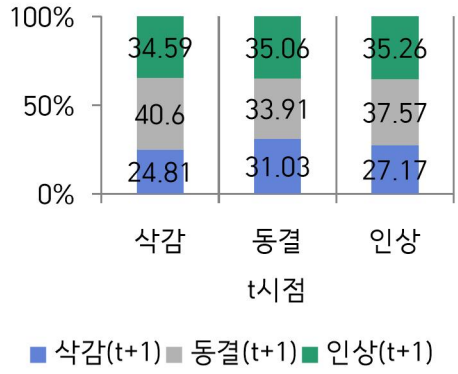

[부록 표 13] 측정방식 조정 후 : 지출압박과 인력규모 조정행태(odds ratio)

		모형 1-1				모형 1-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자체수입		1.002	**0.994***	1.002	0.996	1.002	**0.994***	1.003	0.998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순수익		**0.782***	0.999	0.937	1.059	**0.763****	1.004	0.925	1.072
		(0.10)	(0.12)	(0.21)	(0.22)	(0.10)	(0.12)	(0.21)	(0.23)
수입의 지출수요 충족		**0.724***	1.041	0.827	1.078	0.765	1.03	0.82	1.073
		(0.14)	(0.19)	(0.22)	(0.27)	(0.15)	(0.19)	(0.22)	(0.27)
경상비		0.994	1.006	0.994	0.996	0.995	1.006	0.994	0.996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고용 보험료	부담 가능성	1.38	0.83	1.641	**0.506****				
		(0.28)	(0.17)	(0.55)	(0.17)				
	부담 수준					**1.416*****	0.922	**1.400*****	**0.807****
						(0.10)	(0.06)	(0.15)	(0.08)
Constant		0.521		0.066***		0.373		0.063***	
		(0.40)		(0.05)		(0.29)		(0.05)	
ll		-1,025.39		-287.227		-1,006.1		-281.545	
N of obs		1,117		824		1,117		824	

[부록 표 14] 측정방식 조정 후 : 지출압박과 비정규직 비중 조정행태(odds ratio)

		모형 2-1				모형 2-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자체수입		0.999	0.994	1.007	0.999	0.999	0.995	1.007	1.001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순수익		0.978	1.024	1.034	1.155	1.021	1.052	1.098	1.183
		(0.13)	(0.13)	(0.25)	(0.27)	(0.14)	(0.14)	(0.26)	(0.28)
수입의 지출수요 충족		0.789	0.946	0.835	0.866	0.848	0.923	0.981	0.884
		(0.16)	(0.18)	(0.24)	(0.23)	(0.18)	(0.18)	(0.29)	(0.24)
경상비		1.002	1.007	1.001	0.994	1.004	1.006	1	0.994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고용 보험료	부담 가능성	40644507	1.07	41172189	**0.340*****				
		(2.32e+10)	(0.22)	(2.89e+10)	(0.13)				
	부담 수준					**2.287*****	0.96	**2.934*****	**0.682*****
						(0.19)	(0.07)	(0.54)	(0.08)
Constant		0		0.051***		0.020***		0.045***	
		(0.00)		(0.04)		(0.02)		(0.04)	
ll		-948.867		-242.216		-950.469		-241.477	
N of obs		1,117		775		1,117		775	

[부록 표 15] 측정방식 조정 후 : 지출압박과 임금 조정행태(odds ratio)

		모형 3-1				모형 3-2			
		random effect		fixed effect		random effect		fixed effect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삭감	인상
자체수입		1	1.002	1.001	1	1	1.002	1.001	1
		(0.00)	(0.00)	(0.01)	(0.01)	(0.00)	(0.00)	(0.01)	(0.01)
순수익		0.988	1.094	0.961	1.221	0.985	1.085	0.933	1.209
		(0.12)	(0.13)	(0.21)	(0.24)	(0.12)	(0.13)	(0.21)	(0.24)
수입의 지출수요 충족		**0.710***	1.31	0.697	**1.717****	**0.699***	**1.392***	0.689	**1.772****
		(0.14)	(0.24)	(0.18)	(0.42)	(0.14)	(0.25)	(0.18)	(0.44)
경상비		1	1.006	0.991	1.011	1	1.007	0.991	1.01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고용 보험료	부담 가능성	**0.715***	1.251	0.906	**2.068****				
		(0.14)	(0.23)	(0.25)	(0.63)				
	부담 수준					**0.903***	**1.280*****	0.991	**1.670*****
						(0.06)	(0.08)	(0.09)	(0.18)
Constant		0.555		0.277*		0.52		0.203**	
		(0.41)		(0.20)		(0.38)		(0.15)	
ll		-1,112.69		-333.087		-1,097.97		-320.439	
N of obs		1,082		848		1,082		848	

Abstract

A study on Artists' Multiple Job holding Behaviors in Artistic Labor Market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s organizations and the artist

Seulki Le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swer the old question of "Why do artists have multiple job holding?" from a new perspective. The previous literature has focused on market risks as the cause of the artist's multiple job holding, overlooking structural factors, and being limited to the individual artist's income level.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answer this ques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duction system surrounding artists beyond the discussion at the individual level of artists.

In the discussion on the art production system, art organizations are also the subject of artistic creation with artists,

but, at the same time, they can be gatekeepers in "selecting" artworks or artists. In other words, the selection means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employment and income of artists. Therefore, it suggests that examining how art organizations coordinate their 'selection,' that is, their decision-making on employment and wages, will help understand art organizations' behavior that affects artists. In particular,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what behavioral changes the main actors(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show in a situation where institutional stimuli are predicted in the art production system.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multiple job-holding are divided mainly in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To this end,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by dividing (1) the individual level of artists, (2) the organizational level of art organizations, and (3) the multi-level considering with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summarizing each research purpose and main results as follows.

The first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artists respond in the artistic labor market by systematizing the existing discussion on the vulnerable economic status of artists from the perspective of precarious work. Mainly, this study tried to explore whether the artists have multiple job holding or not and which types as their secondary job the artists have.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in Korea for 2015,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f the artistic job is a form of precarious work, it is likely that artists have multiple job holding

and find secondary jobs outside the artistic labor market. In order to measure precarious work, this study divided it into two-dimension: precarious employment and income.

In terms of employment, there are two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non-regular and non-standard artists are more likely to be multiple jobholders. Moreover, these types of employmen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finding secondary jobs which are non-related to the art among multiple jobholders.

Second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act by dividing it into the number, period, and amount of contracts, the higher the number of contracts within the artistic labor market, and in particular,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having multiple jobs.

On the other hand, the higher the payment is,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having multiple jobs is. Furthermore, among multiple jobholders, the longer the contract period concluded within the art world i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having jobs related to the art is.

Precarious income also affects pushing artists out of the art world. When art income is lower, the possibility of both having multiple jobs and having heterogeneous jobs as secondary jobs increases relatively.

The purpose of the second study is to theoretically review the adjustment behaviors that art organizations may see in the situation of financial stress to make concrete the art organizations' behaviors and analyze it empirically by dividing it

into employment and wage adjustment. In particular, this study indirectly examine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olicies to mitigate artists' social risks by showing that government policies may act as fiscal stress on the expenditure side rather than internal oper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annual Survey on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by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First, when there is fiscal stress on the expenditure side due to policies, art organizations are likely to reduce the size of employment in terms of quantity. In addition, as the level of expenditure pressure caused by policie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size of employment also increases.

Seco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stimation results varied depending on the measurement method of the effect of expenditure pressure by policy on the behavior of adjusting the size of non-regular workers. For example, if art organizations are under expenditure pressure by policy, the size of non-regular workers would likely be reduced only in the fixed effect estimation model.

On the other hand, the stronger the intensity of expected spending pressure is, the greater the likelihood that art organizations reduce non-regular workers' size in both the random and the fixed effect estimation models is.

Finally, policy-based fiscal stress on the expenditure side only affects the possibility of wage-push increases in the random effect model. It can be interpreted as reducing non-regular workers who

are relatively easy to adjust in reducing the size of existing workers under a limited income structure, leaving only a small number of regular workers, resulting in raising the average wage.

The third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employment coordination behaviors of art organizations on the individual artist's multiple job-holding behaviors. With the absence of actual data collected together with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characteristics, this study used synthetic data by combining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and 「the annual Survey on the Operation of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s」 and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considering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As a result, the greater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labor adjustment behavior of art organizations is,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artists' multiple job-holding behaviors is. Even considering individual precarious work conditions and human capital, the result is consistently maintained. It means that the adjustment behavior of art organizations due to financial stress affects artists, and in the end, the financial difficulties can transfer from art organizations to artists. On the other hand, it indicates that employment reduction also affects the possibility of having non-related to artistic jobs as a secondary job. However, the resul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model, including the employment reduction variable estimated by assuming a fixed effect at the stage of estimating the adjustment of art organizations.

The significance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sist of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imensions. As for the theoretical significance, this study has expanded the scope of discussion on multiple job-holding(dual-job) behavior. Existing discussions on multiple job-holding are still in the question of "Who works multiple jobs?" or "Why?" but this study expands to questions such as "Who is more likely to have another job in the non-artistic labor market than in the artistic labor market?" and enriches theoretical discussions on multiple holding jobs.

Second, this study conceptualized art organizations' budget constraints or financial difficulties as financial stress and divided it into revenue and expenditure stress. Existing discussions on the finances of art organizations have mainly focused on paying attention to fiscal stress in terms of revenue and exploring ways to mitigate revenue stress.

However, fiscal stress on the expenditure side is also critical for art organizations. In order to overcome their limitation, this research tries to consider the expenditure side. Furthermore, it examines two parts: (1) the way how art organizations allocate limited resources within expenditure stress and (2) what their behaviors affect the environment(artistic labor market).

Third, although existing studies have frequently dealt with artists' weak economic status, there has been an aspect that understands artists' multiple job-holding behaviors only as an occupational characteristic. However, this study examined structural factors based on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t production system rather than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behavior in the artistic labor market.

These approaches have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wo dimensions. First of all, as mentioned earlier, the existing discussion, which only tried to understand artists' multiple job-holding as one of the specificities of the artistic labor market or risk management methods at the individual level, was restructured into a middle-range discussion in terms of interaction among actors in the artistic labor market.

Next, this study borrowed the perspective of the art production system discussed in art sociology as a theoretical analysis framework to understand and model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Finally, it shows that the existing method of understanding precarious employment cannot explain the labor market where non-standard employment types are prevalent beyond non-regular. These limitations suggest that the inevitable expansion of the scope of existing discussions on precarious work or changes of perspectives is necessary. For example, this study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non-standard employment are dominant in the artistic labor market, and the continuity or sustainability of multiple contracts is more important than the permanence of a single contract. In this respect, this study suggests that when measuring precarious employment contract characteristics and career disconnection factors are considered.

At the methodological level, this study is meaningful. It integrated each data of different analysis units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to build new synthetic data and conducted multi-level analysis in consideration of the hierarchical characteristics of the data. This study differs from general data matching methods in synthetic data construction. If existing exact or statistical matching was mainly applied to combine similar(or the same) individuals based on common variables at the same analysis level, this study borrowed a stratified allocation method to construct hierarchical data. The construction of such synthetic data helps expand the scope of analysis and theoretical discussions by combining survey data conducted individually on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d the mechanism by which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affects the artist's multiple job-hold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t production system by conducting multi-level analysis using such hierarchical data.

Based on these analyses, in this study, we were able to find some policy implications, dividing them into cultural and labor policy.

As for cultural polic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erspective on policy target into a comprehensive and linked approach to the art production system (or art ecosystem) dimension, rather than separately dividing it into artists and art organizations.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dynamics between 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rt ecosystem, not individual

actors in the artistic labor market, it is preferentially necessary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art organizations serving as gatekeepers in the artistic labor market.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aning and role of art organizations in the cultural policy governance system at the policy level.

Next, it is required to keep in mind that the cultural policy has not just supported art activities itself but also overlaps various policy areas such as labor policy and social policy for recognition of workers' status and improvement of artist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consistent or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olic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discriminative effects of policies that may arise in this process. This problem is crucial because it will likely create a blind spot for policy. The policy effect of the artist's employment insurance system is also likely to be differentiated between the two groups.

Even if the artists'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erves as a social protection device for artists' repeated(or frequent) unemployment, it may be applied mainly to skilled artists who have relatively strong bargaining power or have already established reputations and careers in the art world.

To put it the other way, this means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art organizations will set targets at unskilled artists to reduce employment, and in the end, they may transfer the burden of their costs to low-skilled artists.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part of vocational training that

is missing from the current artist employment insurance system, unlike the general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pecifically, the policy needs to reduce opportunity costs such as a transition to non-artistic jobs and career breaks, which are more likely to be chosen by young and new artists to solve the pressure on education or living expenses even during unemployment.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hich focused on the precarious artistic work and the multiple job-holding behaviors of artists, and the mechanism of the artistic labor market surrounding it, are not limited to cultural policy.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ic labor have implic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abor type spectrum in the labor market. The traditional view of the labor market is that high-end workers take the form of waged-oriented full-time employment, regardless of the amount or quality of work, but low-end workers take the form of wage rates based on the amount of work given.

However, this existing formula has no longer been established because non-regular and non-standard employment and the wage system based on tasks have recently expanded regardless of skill level. Amid these changes, the mechanism of the art labor market, which initially has shown such labor characteristics for a long time, and the behavior of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could serve as references to designing policies for the changing labor market with emerging labor forms such as platform labor.

However, each study'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are as follows.

Concerning the limitation of Research 1 conducted in Chapter 4, first of all, the causal inference cannot be attained because of cross-sectional data.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e careful of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it cannot escape from the endogenous problem. However, there was no choice in getting more appropriate data in that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was the only one.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building longitudinal or panel data for artists' working environment and career formation.

Second, research 1 divided the attributes of secondary jobs into labor supply in the art market and non-art market, but it could not consider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in detail.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udy in-depth labor type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in secondary jobs in the future. It can be a crucial issue because if the second job is precarious work, there is room for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artistic work(careers) as a primary job.

Regarding the limitations of Research 2 conducted in Chapter 5, it might have a problem measuring expenditure stress from the policy. This research did not use observed values but hypothetical values for measuring the possibility and level of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Therefore, after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artists is settled,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is research model by establishing micro-data on insurance premiums paid by art organizations.

The limitation of Research 3 conducted in Chapter 6 is that the multi-level data of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were synthetic, not actual collected data. Since, in addition, this study did not use actual observed values, but estimated values as the arts organizations' adjustment behavior, the scope of interpretation is limited.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e careful about interpreting the behavior of art organizations stemming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artist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based on employment or contract. In order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this study suggests verify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odel by constructing and accumulating detailed data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organizations and artists in the future.

Keywords: multiple job-holding(dual job), artistic labor market, arts organizations, artist, precarious work, multi-level analysis

Student Number : 2016-30677